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KB자산운용(주) 는 이 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본 투자설명서는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펀드코드 : 54837)
 (KB Balhae Infrastructure Fund)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KB자산운용 주식회사
 (KB Asset Management Co., Ltd.)
3. 판매회사 : KB증권(주), 키움증권(주), 대신증권(주)
4. 작성기준일 : 2024년 11월 0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4년 11월 01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무액면 보통주 23,809,524주 (모집(매출)가액: 8,400원/주)
 [모집(매출) 총액 : 200,000,001,600원(예정)]
7. 모집(매출) 기간 (판매기간) : 기관투자자: 2024년 11월 18일 ~ 2024년 11월 19일
 일반청약자: 2024년 11월 18일 ~ 2024년 11월 19일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서면문서 :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0층, 41층 (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KB증권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키움증권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대신증권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지동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이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자께서는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이하 "회사")에 대한 투자 판단 시 본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투자위험등급(6등급 중 4등급에 해당하는 보통 수준)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 및 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투자위험등급 평가는 회사의 집합투자업자인 KB자산운용(주)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며, 외부 평가기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객관적인 등급평가는 아닌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및 (예비)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투자자가 주식과 관련한 위험 등을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책임 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과거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회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및 (예비)간이투자설명서 상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회사가 현재 투자 및 투자 약정(이하 총칭하여 "투자")한 총 5개의 사업(2024년 9월 30일 기준 기 투자한 5개의 사업)은 각 사업이 속한 환경,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팬데믹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회사의 수익성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6. 회사는 집합투자기구로서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투자원금을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

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투자금의 상환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7. 회사는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유동성 제공을 위해 공모주식이 상장되어 거래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환금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회사의 투자성과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인 KB증권(주), 키움증권(주), 대신증권(주)의 투자 실적과 무관하며, 투자매매·중개업자는 본 건 공모주식의 위탁판매 업무(모집 및 매출 업무)만 수행할 뿐 이 회사의 가치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9.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및 (예비)간이투자설명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하여 회사의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본 건 공모주식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요청 또는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본 문서에 기술된 재무수치들은 달리 기준일이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4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요 약 정 보

KB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_간이투자설명서_241101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54837

(주)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는 이하 "회사"라고 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회사	-
나. 운용자산별 종류	특별자산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아니한 투자회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회사)
마. 특수형태 표시	-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

* 자세한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및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단위: 주, 원)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비고
기명식보통주	23,809,524	무액면	8,400원	200,000,001,600	일반공모
합계	23,809,524	-	-	200,000,001,600	-

(주1) 이사회 결의일: 2024년 10월 07일

■ 모집(매출)가액(이하" 공모가액") 산정 내역

(1) 공모가액 산정 관련 근거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및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1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5, 자본시장법 제196조와 회사의 정관 제15조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투융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新株)를 발행하거나 투융자신탁이 그 설정 후에 추가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5(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법 제41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한다. **다만, 그 방법으로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할 수 있고,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공정한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투자회사의 주식)

- ① 투자회사의 주식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 ② 투자회사는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新株)의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 ③ **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④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방형투자회사"라 한다)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형투자회사는 제3호의 방법에 따라 확정된 매일의 발행가액을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정,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신주의 발행기간
2. 제1호의 발행기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수의 상한

3. 제1호의 발행기간 동안 매일의 발행가액 및 주금납입기일을 정하는 방법

⑤ **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 날에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 그 밖의 발행조건은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그 투자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⑥ 제194조제7항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인수인에게 준용한다.

⑦ 주식인수인은 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과 동시에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정관>

제15조 (신주발행)

① 회사가 본 정관의 효력발생일 이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발행하는 신주의 수

2. 발행가액 및 주금 납입기일을 정하는 방법

② **신주인수의 청약에 의한 주식배정의 수는 납입금액을 1주당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결정한다.**

③ 본 정관에서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로서 한국의 은행의 영업일을 말한다.

④ 주식의 청약 단위는 일주 단위로 한다.

⑤ 회사가 유무상증자 또는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단, 회사가 (가) 제55조 제2항에 따른 초과분배 및/또는 (나) 제55조 제4항에 따른 수시(중간)배당에 따른 각 기준일의 익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 내에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해당 기준일의 초과분배, 수시(중간)배당 부분은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시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가) 또는 (나)의 경우 신주 발행 이후 추가 초과분배나 결산 배당시 기존 주식 1주당 이익분배금과 신주 1주당 이익분배금은 동일하다.

참고로, 회사는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 및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로, 민간투자법 제44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206조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데 있어 아래의 법규 및 규정을 적용 받지 않으며, 상장 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일반적으로 따라야 하는 발행 및 배정방식을 적용 받지 않으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에 부여되는 집합투자증권추가발행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주의 신주인수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항부터 제4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및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20조(주식청약서),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및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상 공모 관련 일체 규정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전략)

-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 ④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① 법 제165조의16 및 영 제176조의17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절에서 "주주배정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증자방식을 말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증자방식을 말한다.
- ③ 이 절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증자방식을 말하며,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4항제3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 ④ 이 절에서 "거래일"이란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매매거래하는 날을 말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

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 7. 6., 구 제5-18조③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에서 주권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발행하거나 외자유치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출자관계에 있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국내에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2.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으로서 금산법 제1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절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3. 금산법 제12조 및 제23조의8, 「예금자보호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정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공동(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을 인가받은 자를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 회생계획 등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6.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3자배정증자방식(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가.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이고,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경우

나.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수요예측(대표주관 회사가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공모가격에 대해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매입희망 가격 및 물량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광고)

-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420조(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기재한 사항

2. 제302조제2항제7호·제9호 및 제10호에 제기한 사항
3.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제기한 사항
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삼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

제 420조의 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① 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제 420조의 3(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 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420조의 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20조의 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①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다. 이 경우에는 제30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공모가액 산정 방식

회사는 현재 비상장 상태이므로 민간투자법 제41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5의 단서 조항 후단에 따라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공정한 가치를 고려하여 회계법인 새길

이 2024년 8월 31일 기준으로 평가한 회사의 1주당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신주 발행가액을 8,4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해당 신주 발행가액은 자본시장법 제196조 제3항 및 회사 정관 제15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10월 07일 개최된 회사의 이사회결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공모주식의 최종공모가격은 회사와 인수단이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정한 절차에 따른 수요예측 후에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감안하여 합의하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피투자회사인 5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후순위채권 이자수익, 배당액 및 투자원본(후순위채권 및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투자목적 회사인 바, 해당 사업시행법인으로부터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자기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회사의 지분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투자 가치를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평가 방법으로서 프로젝트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재무적으로 분석하는데 효과적이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가치평가가 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DCF 방식을 적용한 지분가치 평가를 위하여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Free Cash Flow to Firm)에서 채권자 현금흐름을 차감하여 산출된 주주귀속현금흐름(FCFE: Free Cash Flow to Equity)을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따라 산정된 자기자본비용으로 현재화 할인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 가치를 평가하였고, 이를 총 발행주식수로 나눈 주당 지분가치 평가액을 기준으로 본건 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기업의 영업활동에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바, 향후 영업이익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시장참여자는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합니다. 위험프리미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본시장가격모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중 이론과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형이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입니다.

동 모형에서는 자기자본비용을 무위험수익률과 자기자본 위험프리미엄이라는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산출합니다. CAPM에 따르면 자기자본비용은 무위험수익률에 평가대상주식

의 위험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평가대상주식의 위험프리미엄은 시장위험프리미엄에 베타(Beta)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여기에서 베타(Beta)는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을 대비 평가대상주식의 가격변동율의 민감도를 의미합니다.

(3) 공정한 가치 산출 내역

[기업가치 평가금액]

(단위: 원)

회사명	평가금액	평가기준일	추정대상기간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8,684원	2024년 8월 31일	2024.9.1 ~ 2050.9.30

자료: 회계법인 새길_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지분가치 평가보고서(2024.10.15)

[주당 기업가치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주)

항목	내용	비고
주주귀속현금흐름(FCFE)	1,711,390	(주1)
자기자본비용(할인율)	7.00%	(주2), (주3)
자기자본가치(A)	987,874	(a) + (b)
FCFE의 현재가치(a)	978,740	(주4)
유보현금(b)	9,134	-
주식 수(B)	113,760,231	-
주당 기업가치	8,684원/주	(A) / (B)

(주1) 신고서 제출일 현재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으로부터 2024년 9월 1일부터 2050년 9월 30일까지 유입되는 주주귀속 현금흐름의 단순합산 금액입니다.

회사(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의 주주귀속현금흐름 추정의 기본 가정 및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주주귀속현금흐름(FCFE) 추정의 기본 가정]

(단위: 백만원, %)

구분	상세 근거
----	-------

일반사항	기간가정	- 현금흐름 추정기간: 2024.9.1 ~ 2050.9.30		
	기타	- 물가상승률: 2.5%/년 가정		
영업수익	후순위채권 이자수익	- 후순위 대출채권 잔액 및 채권금리(2024.08.31 기준)		
		구분	잔액	금리
		대구- 부산간고속도로(*1)	300,673 백만원	10.25~10.50%
		산성터널	60,800 백만원	11.0%
		수석- 호평간도로	51,625 백만원	20.0%
		용마터널	28,000 백만원	12.0~15.0%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24,000 백만원	13.0%
		(*1) 2024년 8월말 후순위채권 추가매입 포함된 금액이며, 세무상 취득가 기준금액임 - 이자수취시기: 매 분기말		
	배당수익	- 자본증권 투자액 및 지분율(2024.08.31 기준)		
		구분	투자액	지분율
		대구- 부산간고속도로(*1)	353,563 백만원	50.16%
		산성터널(*2)	23,400 백만원	65.0%
		수석- 호평간도로	47,500 백만원	100.0%
		용마터널	16,800 백만원	60.0%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20,000 백만원	50.0%
		(*1) 2024년 8월말 자본증권 추가매입 포함된 금액이며, 세무상 취득가 기준금액임 (*2) 2027년 이후 건설출자자 Put-Option 행사에 따라 잔여지분 35%를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가정		
영업비용	펀드보수	- 운용 수수료: 순자산가치(NAV)(*1)의 0.65% - 사무수탁 수수료: 순자산가치(NAV)의 0.02% - 자산보관 수수료: 순자산가치(NAV)의 0.02% (*1) 순자산가치(NAV) = 자산총계 - 부채총계		
차입금		- 기존차입금		
		구분	잔액	이자율
		사채	20,000	5.5%/년
		차입금	40,800	5.5%/년
		(*1) 2024.8.31 기준 기존차입금 금리는 4.5~5.3%임 - 신규차입금: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지분 및 후순위채권 일부 인수를 위한 재원은 신규 차입하여 조달하는 것으로 가정		
		차입액	금리	상환방식
		120,000	5.5%	원금불균등
				만기
				2050.12.31
		(*1) 2024.8.29에 차입한 신규차입금 금리는 3.77%임		
추가투자액		- 산성터널 건설출자자 지분 매입: 건설출자자들의 Put-option 행사에 따른 잔여지분(35%)를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가정함 * 행사시점(매입시점): 2027.03.31 * 매입대상 주식수: 2,520,000주(35.0%) * 주당가액: 1주당 1,500원 * 총 매입금액: 3,780백만원		
주주분배액		- 분배시점: 매 분기 말 - 분배가정: 매 분기 분배가능한 주주귀속현금흐름 전액이 주주에게 분배되는 것으로 가정		
		- 회사는 법인세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배당금 지급분에 대		

회계 및 세무	법인세	해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명목회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
------------	-----	----------------------------------------------------------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주주귀속현금흐름(FCFE) 추정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기초현금(A)		-	-	-	-	-	-	-	-
후순위대출 이자수익(*1)	1,082,154	46,627	95,553	89,741	86,261	80,697	75,291	70,960	65,779
배당수익	466,243	-	-	-	-	-	-	544	40,784
펀드보수	-84,612	-2,724	-5,400	-5,278	-5,126	-4,997	-4,836	-4,668	-4,490
영업현금흐름(B)	1,463,785	43,903	90,153	84,464	81,135	75,699	70,455	66,836	102,073
후순위대출 원금상환	413,511	7,209	17,757	21,931	22,496	23,294	24,379	25,897	28,006
정산배당	202,816	-	-	-	-	-	-	-	-
투자원본 회수액(C)	616,328	7,209	17,757	21,931	22,496	23,294	24,379	25,897	28,006
지분 추가취득(*2)	-3,780	-	-	-	-3,780	-	-	-	-
추가 투자액(D)	-3,780	-	-	-	-3,780	-	-	-	-
차입금 이자상환	-184,143	-3,872	-9,944	-9,944	-9,944	-9,944	-9,944	-9,944	-9,944
차입금 원금상환	-180,800	-	-	-	-	-	-	-	-6,870
차입금 원리금상환액(E)	-364,943	-3,872	-9,944	-9,944	-9,944	-9,944	-9,944	-9,944	-16,814
분배가능현금(F=A+B+C+D+E)	1,711,390	47,240	97,966	96,451	89,907	89,049	84,889	82,788	113,265
주주 분배액(G)	-1,711,390	-47,240	-97,966	-96,451	-89,907	-89,049	-84,889	-82,788	-113,265
기말현금(H=F+G)		-	-	-	-	-	-	-	-

(*1) 세무상 취득가 기준(자산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에 따라 KB자산운용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배당은 세무상 이익을 기준으로 분배 예정이므로 FCFE추정시 세무상 취득금액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2027년 산성터널 건설투자자(CI; Construction Investor) 지분 취득 예상금액을 포함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기초현금(A)	-	-	-	-	-	-	-	-	-	-
후순위대출 이자수익(*1)	59,127	51,709	41,673	31,092	32,221	40,008	35,256	31,339	37,861	29,191
배당수익	50,331	56,745	64,081	67,311	9,140	10,023	11,356	13,515	12,908	18,327
펀드보수	-4,296	-4,083	-3,841	-3,561	-3,401	-2,530	-2,457	-2,361	-2,337	-2,320
영업현금흐름(B)	105,162	104,371	101,912	94,843	37,960	47,501	44,155	42,493	48,432	45,198
후순위대출 원금상환(*1)	30,943	35,012	40,672	23,117	-	10,500	14,000	3,500	2,400	4,800
정산배당	-	-	-	-	126,253	-	-	-	-	-
투자원본회수액(C)	30,943	35,012	40,672	23,117	126,253	10,500	14,000	3,500	2,400	4,800
지분 추가취득(*2)	-	-	-	-	-	-	-	-	-	-

추가 투자액(D)	-	-	-	-	-	-	-	-	-	-
차입금 이자상환	-9,566	-9,188	-8,810	-8,433	-8,055	-7,677	-7,299	-6,842	-6,385	-5,928
차입금 원금상환	-6,870	-6,870	-6,870	-6,870	-6,870	-6,870	-8,310	-8,310	-8,310	-8,310
차입금 원리금상환액(E)	-16,437	-16,059	-15,681	-15,303	-14,925	-14,547	-15,609	-15,152	-14,695	-14,238
분배가능현금(F=A+B+C+D+E)	119,668	123,325	126,903	102,656	149,288	43,454	42,546	30,841	36,137	35,759
주주 분배액(G)	-119,668	-123,325	-126,903	-102,656	-149,288	-43,454	-42,546	-30,841	-36,137	-35,759
기말현금(H=F+G)	-	-	-	-	-	-	-	-	-	-

(*1) 세무상 취득가 기준(자산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에 따라 KB자산운용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배당은 세무상 이익을 기준으로 분배 예정이므로 FCFE추정시 세무상 취득금액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2027년 산성터널 건설투자자(CI; Construction Investor) 지분 취득 예상금액을 포함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기초현금(A)	-	-	-	-	-	-	-	-	-
후순위대출 이자수익(*1)	14,953	15,089	11,458	11,439	11,088	9,904	7,836	-	-
배당수익	17,137	13,005	18,421	9,485	9,599	10,371	11,650	12,181	9,329
펀드보수	-2,287	-2,254	-2,158	-1,807	-1,707	-1,623	-1,539	-1,518	-1,012
영업현금흐름(B)	29,803	25,840	27,722	19,117	18,980	18,653	17,947	10,663	8,317
후순위대출 원금상환(*1)	4,800	13,920	16,960	14,560	12,160	12,160	3,040	-	-
청산배당	-	-	33,866	-	-	-	-	-	42,697
투자원본회수액(C)	4,800	13,920	50,826	14,560	12,160	12,160	3,040	-	42,697
지분 추가취득(*2)	-	-	-	-	-	-	-	-	-
추가 투자액(D)	-	-	-	-	-	-	-	-	-
차입금 이자상환	-5,471	-5,014	-4,556	-4,099	-3,642	-3,185	-2,728	-2,271	-1,514
차입금 원금상환	-8,310	-8,310	-8,310	-8,310	-8,310	-8,310	-8,310	-	-41,293
차입금 원리금상환액(E)	-13,781	-13,324	-12,867	-12,410	-11,953	-11,496	-11,039	-2,271	-42,807
분배가능현금(F=A+B+C+D+E)	20,822	26,436	65,681	21,267	19,188	19,317	9,949	8,392	8,208
주주 분배액(G)	-20,822	-26,436	-65,681	-21,267	-19,188	-19,317	-9,949	-8,392	-8,208
기말현금(H=F+G)	-	-	-	-	-	-	-	-	-

(*1) 세무상 취득가 기준(자산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에 따라 KB자산운용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배당은 세무상 이익을 기준으로 분배 예정이므로 FCFE추정시 세무상 취득금액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2027년 산성터널 건설투자자(CI; Construction Investor) 지분 취득 예상금액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로, 후순위 대출채권의 세무상 취득가 기준 현금흐름과 회계처리기준상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현금흐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후순위 대출채권의 세무상/회계상 현금흐름 차이]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세무상 취득가 기준	후순위대출 이자	1,082,154	46,627	95,553	89,741	86,261	80,697	75,291	70,960	65,779
	후순위대출 원금	413,511	7,209	17,757	21,931	22,496	23,294	24,379	25,897	28,006
	합 계	1,495,666	53,836	113,310	111,672	108,757	103,991	99,670	96,857	93,785
발해 재무제표 기준	후순위대출 이자	858,274	37,139	69,109	63,359	60,357	55,486	51,064	48,132	44,927
	후순위대출 원금	637,392	16,697	44,201	48,313	48,400	48,505	48,605	48,725	48,858
	합 계	1,495,666	53,836	113,310	111,672	108,757	103,991	99,670	96,857	93,785

(단위: 백만원)

구 분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세무상 취득가 기준	후순위대출 이자	59,127	51,709	41,673	31,092	32,221	40,008	35,256	31,339	37,861
	후순위대출 원금	30,943	35,012	40,672	23,117	0	10,500	14,000	3,500	2,400
	합 계	90,070	86,721	82,344	54,209	32,221	50,508	49,256	34,839	40,261
발해 재무제표 기준	후순위대출 이자	41,058	37,550	32,990	29,459	32,221	40,008	35,256	31,339	37,861
	후순위대출 원금	49,012	49,171	49,354	24,749	0	10,500	14,000	3,500	2,400
	합 계	90,070	86,721	82,344	54,209	32,221	50,508	49,256	34,839	40,261

(단위: 백만원)

구 분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세무상 취득가 기준	후순위대출 이자	29,191	14,953	15,089	11,458	11,439	11,088	9,904	7,836	-
	후순위대출 원금	4,800	4,800	13,920	16,960	14,560	12,160	12,160	3,040	-
	합 계	33,991	19,753	29,009	28,418	25,999	23,248	22,064	10,876	-
발해 재무제표 기준	후순위대출 이자	29,191	14,953	15,089	11,458	11,439	11,088	9,904	7,836	-
	후순위대출 원금	4,800	4,800	13,920	16,960	14,560	12,160	12,160	3,040	-
	합 계	33,991	19,753	29,009	28,418	25,999	23,248	22,064	10,876	-

한편, 사업시행법인별 주주귀속현금흐름 추정의 기본 가정 및 추정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기본 가정]

(단위: 백만원, %)

구 분		상세 근거
일반사항	기간가정	- 현금흐름 추정기간: 2024.7.1 ~ 2036. 2. 11 - 최소운영수입보장 기간: ~ 2026.2.11
	물가상승율	- 2024년6월까지 실적 소비자물가지수(CPI) 반영, 이후 2.5% 가정
		-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구조 개선방안 검토연구(2019.10)' 교통수요 가

영업수익	통행량	정 - 2024년 50,263대/ 일 수준 - 운영종료시점까지 연평균 0.44% 증가 가정																												
	통행료 (vat 포함)	- 차종별 통행요금(2023년 기준) 1종: 5,000원/ 대 2종: 5,100원/ 대 3종: 5,200원/ 대 4종: 6,700원/ 대 5종: 7,700원/ 대 (*) 최장구간기준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보장받게 됨 - 보장기준통행료수입: 협약수입 x 72.51%(*) (*) 2023년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효과를 반영하여 기존 77%에서72.51%로 조정하여 분석함																												
영업비용(Opex) 주)		- 운영비용: 연평균 53,105백만원(회사제시)																												
자본적지출(Capex) 주)		- 유형자산대체구입비: 연평균 11,374백만원(회사제시)																												
차입금 등	선순위	- 대출금액 및 이자율 등(2024.06.30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잔액</th> <th>금리</th> <th>상환방법</th> </tr> </thead> <tbody> <tr> <td>선순위</td> <td>97,010백만원</td> <td>5.00% 가정</td> <td>원금균등</td> </tr> </tbody> </table> <p>(*) 이자율 : 기준금리(3개월 변동, 금융채AAA 3개월 민평5개사 채권사가평가기준수익률의 평균) + 0.88%, 신보수수료(연 0.12%) 포함 - 만기: 2025.06.30</p>	구 분	잔액	금리	상환방법	선순위	97,010백만원	5.00% 가정	원금균등																				
	구 분	잔액	금리	상환방법																										
선순위	97,010백만원	5.00% 가정	원금균등																											
후순위	<2024.08.30 기준 후순위차입금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대주</th> <th>잔액(백만원)</th> <th>금리</th> <th>상환방법</th> </tr> </thead> <tbody> <tr> <td>후순위 A</td> <td>발해인프라</td> <td>449,999</td> <td>10.25%</td> <td rowspan="5">원금불균등 분할상환</td> </tr> <tr> <td>후순위 B-1</td> <td>㈜하나은행(*1)</td> <td>193,334</td> <td>10.50%</td> </tr> <tr> <td rowspan="2">후순위 B-2</td> <td>발해인프라</td> <td>87,391</td> <td rowspan="2">10.50%</td> </tr> <tr> <td>중소기업은행(*2)</td> <td>91,176</td> </tr> <tr> <td>후순위 C</td> <td>㈜하나은행(*1)</td> <td>278,000</td> <td>8.00%</td> </tr> <tr> <td colspan="2">합계</td> <td>1,099,900</td> <td></td> <td></td> </tr> </tbody> </table> <p>(*1) KB 대구부산고속도로 일반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SOC)(전문)의 신탁업자 (*2) KB 대구부산고속도로 일반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2호(SOC)(전문)의 신탁업자</p>	구 분	대주	잔액(백만원)	금리	상환방법	후순위 A	발해인프라	449,999	10.25%	원금불균등 분할상환	후순위 B-1	㈜하나은행(*1)	193,334	10.50%	후순위 B-2	발해인프라	87,391	10.50%	중소기업은행(*2)	91,176	후순위 C	㈜하나은행(*1)	278,000	8.00%	합계		1,099,900		
구 분	대주	잔액(백만원)	금리	상환방법																										
후순위 A	발해인프라	449,999	10.25%	원금불균등 분할상환																										
후순위 B-1	㈜하나은행(*1)	193,334	10.50%																											
후순위 B-2	발해인프라	87,391	10.50%																											
	중소기업은행(*2)	91,176																												
후순위 C	㈜하나은행(*1)	278,000	8.00%																											
합계		1,099,900																												
회계 및 세무	감가상각비	- 관리운영권: 30년간 정액법 상각 - 유형자산 및 운영설비: 5년간 정액법 상각																												
	법인세	- 법인세율 과세표준 2 억원 이하: 9.9%(지방세 포함) 과세표준 2 억원 초과 200 억원 이하: 20.9%(지방세 포함)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3.1%(지방세 포함)																												
	배당금	- 배당제한조건 누적 부채상환비율(DSCR) 2년연속 1.2x 이상																												

주) 실시협약상 운영비의 128.59% 가정

[대구- 부산간고속도로 - 영업현금흐름 추정결과(2024.7.1~ 2036.2.11)]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교통량(대/일) 주)	50,263	51,554	51,677	51,835	52,027	52,255	52,520
영업현금흐름							

영업수익	166,691	339,706	281,406	257,790	265,751	274,203	283,163
영업비용	(22,556)	(40,982)	(41,208)	(43,792)	(44,414)	(54,145)	(48,946)
법인세지급	(6,951)	(23,116)	(26,679)	(18,980)	(18,752)	(21,407)	(24,921)
순운전자본증감	-	-	-	-	-	-	-
자본적지출	(1,729)	(4,595)	(7,247)	(7,428)	(7,613)	(7,804)	(7,999)
합 계	135,455	271,012	206,273	187,590	194,971	190,847	201,297

주) 가중평균 교통량

(단위: 백만원)

구 분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연평균 교통량(대/일) 주)	52,536	52,604	52,711	52,849	53,015	52,991	-
영업현금흐름							
영업수익	290,981	298,787	306,957	315,473	324,474	91,614	-
영업비용	(50,721)	(51,453)	(53,737)	(64,030)	(59,830)	(35,564)	-
법인세지급	(29,365)	(33,069)	(36,811)	(39,530)	(43,020)	(22,797)	-
순운전자본증감	-	-	-	-	-	(266)	-
자본적지출	(8,199)	(8,404)	(8,614)	(8,829)	(9,050)	(46,381)	-
합 계	202,696	205,861	207,795	203,084	212,573	(13,395)	-

주) 가중평균 교통량

[대구- 부산간고속도로 - 현금흐름 추정결과(2024.7.1~2036.2.11)]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초현금	73,573	64,380	115,698	132,509	140,548	165,881	197,001
연차배당	-	-	-	-	-	-	(1,084)
배당 후 잔액(A)	73,573	64,380	115,698	132,509	140,548	165,881	195,917
영업현금흐름(B)	135,455	271,012	206,273	187,590	194,971	190,847	201,297
DSRA 인출(C)	1,643	26,616	2,478	2,478	2,478	2,478	2,478
선순위원리금 상환재원(D=A+B+C)	210,672	362,008	324,449	322,577	337,997	359,206	399,692
선순위차입금 이자지급	(2,122)	(909)	-	-	-	-	-
선순위차입금 원금상환	(48,505)	(48,505)	-	-	-	-	-
선순위 원리금 상환 후 잔액	160,044	312,593	324,449	322,577	337,997	359,206	399,692
DSRA 적립	-	(3,617)	-	-	-	-	-
후순위차입금 이자지급	(53,189)	(100,054)	(90,445)	(80,534)	(70,622)	(60,710)	(50,798)
중 발해 지급분	(25,854)	(51,512)	(46,565)	(41,462)	(36,359)	(31,256)	(26,153)
후순위차입금 원금상환	(42,476)	(93,223)	(101,495)	(101,495)	(101,495)	(101,495)	(101,495)
중 발해 지급분	(20,753)	(45,547)	(49,588)	(49,588)	(49,588)	(49,588)	(49,588)
기말현금	64,380	115,698	132,509	140,548	165,881	197,001	247,399

(단위: 백만원)

구분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기초현금	247,399	235,544	225,270	214,182	196,239	265,097	-
연차배당	(74,648)	(86,143)	(98,803)	(110,860)	(117,722)	-	-
배당 후 잔액(A)	172,751	149,401	126,467	103,322	78,516	265,097	-
영업현금흐름(B)	202,696	205,861	207,795	203,084	212,573	(13,395)	-
DSRA 인출(C)	2,478	2,478	2,478	2,478	26,613	-	-
선순위원리금 상환재원(D=A+B+C)	377,925	357,740	336,740	308,884	317,702	251,701	-
선순위차입금 이자지급	-	-	-	-	-	-	-
선순위차입금 원금상환	-	-	-	-	-	-	-
선순위 원리금 상환 후 잔액	377,925	357,740	336,740	308,884	317,702	251,701	-
DSRA 적립	-	-	-	-	-	-	-
후순위차입금 이자지급	(40,886)	(30,974)	(21,063)	(11,151)	(1,858)	-	-
중 배해 지급분	(21,050)	(15,947)	(10,844)	(5,741)	(957)	0	-
후순위차입금 원금상환	(101,495)	(101,495)	(101,495)	(101,495)	(50,747)	-	-
중 배해 지급분	(49,588)	(49,588)	(49,588)	(49,588)	(24,794)	-	-
기말현금	235,544	225,270	214,182	196,239	265,097	251,701	-

(2) 산성터널

[산성터널- 기본 가정]

(단위: 백만원, %)

구분		상세 근거
일반사항	기간가정	- 현금흐름 추정기간: 2024.7.1 ~ 2048.9.30
	물가상승률	- 2024년6월까지 실적 소비자물가지수(CPI) 반영, 이후 2.5% 가정
영업수익	통행량	-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교통수요 재검증보고서(2021.09, (주)새별이앤씨)' 상 교통수요에 측치 반영 - 2024년 35,972대/일, 추정기간 연평균 35,239대/일 수준
	통행료 (vat 포함)	- 차종별 통행요금(2023년 기준) 소형: 1,500원/대 중형: 2,600원/대 대형: 3,400원/대
영업비용 (Opex)	- 회사제시 향후 사업계획 반영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추정치
	인건비	1,217
	유지관리비	1,720
	제경비	790
합계	3,727	
자본적지출	- 회사제시 향후 투자계획 반영 유형자산대체비: 연평균 54백만원	

(Capex)		운영설비대체비: 연평균 1,021백만원
차입금 등	선순위	- 차입금 잔액: 138,148백만원(2024.06.30 기준) - 적용 이자율: 3.02%/년 - 만기: 2043.3.31 - 상환: 원금불균등 분할상환 - 신용보증수수료: 차입금잔액의 0.2%/년
	후순위A	- 차입금 잔액: 60,800백만원(2024.06.30 기준) - 적용 이자율: 11.0%/년 - 만기: 2048.3.31 - 상환: 원금불균등 분할상환
	후순위B	- 한도: 9,000백만원 - 인출가능기간: 2028.3.31 - 차입금 잔액: 없음(2024.06.30 기준)
회계 및 세무	감가상각비	- 관리운영권: 30년간 정액법 상각 - 유형자산 및 운영설비: 5년간 정액법 상각
	법인세	- 법인세율 과세표준 2 억원 이하: 9.9%(지방세 포함) 과세표준 2 억원 초과 200 억원 이하: 20.9%(지방세 포함)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3.1%(지방세 포함)
	배당금	- 배당제한조건 부채상환적립요구액 전액 적립 선순위대출금의 원금상환 개시 후순위대출금의 이자 전액 지급(지급지연되어 가산중인 이자 포함)

[산성터널 - 영업현금흐름 추정결과(2024.7.1~2048.9.30)]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연평균교통량(대/일)	35,972	34,210	34,105	35,217	35,568	35,918	36,269	36,229	36,189	36,149	36,109	36,069	35,928
영업 현금흐름													
영업수익	9,838	19,027	19,431	20,565	21,289	22,036	22,808	23,353	23,910	24,481	25,065	25,663	26,201
영업비용	(1,876)	(3,891)	(4,011)	(4,077)	(4,281)	(4,785)	(4,714)	(4,879)	(4,996)	(5,361)	(5,609)	(5,368)	(5,561)
법인세지급	-	-	-	-	-	-	-	-	-	-	-	-	-
자본적지출	(97)	(487)	(270)	(1,266)	(1,724)	(1,019)	(2)	(189)	(909)	(1,367)	(1,085)	(55)	(1)
합계	7,865	14,648	15,149	15,222	15,284	16,232	18,092	18,284	18,005	17,752	18,370	20,241	20,640

(단위: 백만원)

구분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연평균교통량(대/일)	35,787	35,646	35,505	35,364	35,092	34,820	34,548	34,276	34,004	34,004	34,004	34,004
영업 현금흐름												
영업수익	26,752	27,312	27,884	28,468	28,955	29,449	29,949	30,457	30,970	31,745	32,538	24,963
영업비용	(5,656)	(9,017)	(15,678)	(6,235)	(6,346)	(6,492)	(6,992)	(7,452)	(7,131)	(7,369)	(7,385)	(5,658)
법인세지급	-	-	-	-	-	-	-	-	(61)	(279)	(418)	(339)
자본적지출	(1,251)	(4,136)	(918)	(8)	(15)	(52)	(42)	(59)	(266)	(819)	(2,641)	(8,089)

합 계	19,845	14,159	11,289	22,225	22,594	22,905	22,914	22,946	23,512	23,278	22,094	10,876
-----	--------	--------	--------	--------	--------	--------	--------	--------	--------	--------	--------	--------

[산성터널 - 현금흐름 추정결과(2024.7.1~2048.9.30)]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기초현금	170	-	-	-	-	-	-	-	-	-	-	-	-
연차배당	-	-	-	-	-	-	-	-	-	-	-	-	-
배당 후 잔액(A)	170	-	-	-	-	-	-	-	-	-	-	-	-
영업현금 흐름(B)	7,865	14,648	15,149	15,222	15,284	16,232	18,092	18,284	18,005	17,752	18,370	20,241	20,640
DSRA 인출(C)	705	205	39	29	49	49	37	220	40	44	47	68	68
선순위원리금 상환재원(D=A+B+C)	8,740	14,853	15,188	15,252	15,333	16,281	18,129	18,504	18,045	17,796	18,418	20,309	20,708
대리기관수수료 및 신용보증수수료	(167)	(294)	(282)	(272)	(261)	(248)	(235)	(221)	(206)	(192)	(176)	(158)	(140)
선순위차입금 이자지급	(2,070)	(3,980)	(3,812)	(3,656)	(3,486)	(3,291)	(3,096)	(2,887)	(2,660)	(2,439)	(2,198)	(1,938)	(1,665)
선순위차입금 원금상환	(4,191)	(5,803)	(5,158)	(5,158)	(6,448)	(6,448)	(6,448)	(7,738)	(7,093)	(7,738)	(8,382)	(9,027)	(9,027)
선순위 원리금 상환 후 현금(E)	2,312	4,777	5,935	6,165	5,138	6,294	8,350	7,658	8,086	7,428	7,662	9,186	9,876
후순위B 인출	-	-	-	-	-	-	-	-	-	-	-	-	-
DSRA 적립	-	-	-	(313)	-	-	(310)	-	(148)	(147)	(145)	-	-
후순위차입금 이자지급	(2,312)	(4,777)	(5,935)	(5,852)	(5,138)	(6,294)	(8,039)	(7,658)	(7,938)	(7,281)	(7,516)	(9,186)	(9,876)
후순위차입금 원금상환	-	-	-	-	-	-	-	-	-	-	-	-	-
기말현금	-	-	-	-	-	-	-	-	-	-	-	-	-

(단위: 백만원)

구 분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기초현금	-	-	-	-	-	-	-	-	-	-	-	-
연차배당	-	-	-	-	-	-	-	-	-	-	-	-
배당 후 잔액(A)	-	-	-	-	-	-	-	-	-	-	-	-
영업현금 흐름(B)	19,845	14,159	11,289	22,225	22,594	22,905	22,914	22,946	23,512	23,278	22,094	10,876
DSRA 인출(C)	1,035	200	26	51	73	73	2,436	-	-	-	-	-
선순위원												

리금 상환 재원(D=A +B+C)	20,881	14,359	11,314	22,276	22,667	22,978	25,351	22,946	23,512	23,278	22,094	10,876
대리기관수 수수료 및 신 용보증수수 료	(122)	(107)	(97)	(85)	(66)	(47)	(31)	(30)	(30)	(30)	(30)	-
선순위차입 금 이자지급	(1,392)	(1,164)	(1,015)	(828)	(548)	(256)	(18)	-	-	-	-	-
선순위차입 금 원금상환	(9,027)	(5,158)	(4,514)	(9,027)	(9,672)	(9,672)	(2,418)	-	-	-	-	-
선순위 원 리금 상환 후 현금(E)	10,339	7,930	5,688	12,336	12,381	13,003	22,883	22,916	23,482	23,248	22,064	10,876
후순위B 인 출	-	-	-	-	-	-	-	-	-	-	-	-
DSRA 적립	-	-	(1,120)	(144)	-	-	-	-	-	-	-	-
후순위차입 금 이자지급	(10,339)	(7,930)	(4,569)	(12,192)	(12,381)	(13,003)	(13,763)	(10,756)	(11,322)	(11,088)	(9,904)	(7,836)
후순위차입 금 원금상환	-	-	-	-	-	-	(9,120)	(12,160)	(12,160)	(12,160)	(12,160)	(3,040)
기말현금	-	-	-	-	-	-	-	-	-	-	-	-

(3) 수석-호평간도로

[수석-호평간도로 - 기본 가정]

(단위: 백만원, %)

구 분		상세 근거
일반사항	기간가정	- 현금흐름 추정기간: 2024.7.1 ~ 2041.8.31
	물가상승율	- 2024년6월까지 실적 소비자물가지수(CPI) 반영, 이후 2.5% 가정
영업수익	통행량	-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교통수요검토(2021.05, 한맥기술)' 상 교통수요예측치 반영 - 2024년 33,844대/일, 추정기간 연평균 38,727대/일 수준
	통행료 (vat 포함)	- 차종별 통행요금(2023년 기준) 소형: 1,600원/대 중형: 3,200원/대 대형: 4,000원/대
영업비용 (Opex)	- 회사제시 향후 사업계획 반영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추정치
	인건비	2,695
	유지관리비	1,239
	제경비	703
합 계	4,096	
자본적지출	- 회사제시 향후 투자계획 반영 운영설비비: 연평균 525백만원	

(Capex)		집기비품: 연평균 42백만원
차입금 등	선순위	- 차입금 잔액: 98,654백만원(2024.06.30 기준) - 적용 이자율: 2.77%/년 - 만기: 2036.12.31 - 상환: 원금불균등 분할상환 - 신용보증수수료: 차입금잔액의 0.2%/년
	후순위	- 차입금 잔액: 51,625백만원(2024.06.30 기준) - 적용 이자율: 20.0%/년 - 만기: 2040.12.31 - 상환: 원금불균등 분할상환
	후순위 미지급이자	- 부채잔액: 191,839백만원(2024.06.30 기준) - 적용 이자율: 20.0%/년 - 상환: 대출약정서에 따라 후순위이자 및 원금 상환보다 선순위 상환
회계 및 세무	감가상각비	- 관리운영권: 30년간 정액법 상각 - 운영설비 및 집기비품: 5년간 정액법 상각
	법인세	- 법인세율 과세표준 2 억원 이하: 9.9%(지방세 포함) 과세표준 2 억원 초과 200 억원 이하: 20.9%(지방세 포함)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3.1%(지방세 포함)
	배당금	- 배당제한조건 부채상환적립요구액 전액 적립 2년 연속 누적 부채상환비율(DSCR) 1.5x 이상 선순위대출금의 원금상환 개시 미지급된 대출금 원리금 및 제반 수수료가 없을 것

[수석-호평간도로 - 영업현금흐름 추정결과(2024.7.1~2041.8.31)]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연평균 교통량(대/일)	33,844	34,955	35,377	35,805	36,237	36,675	39,728	40,530	40,926
영업현금흐름									
영업수익	8,617	18,868	19,940	20,495	21,678	21,913	24,085	25,552	26,236
영업비용	(2,319)	(4,981)	(9,676)	(5,302)	(5,215)	(5,241)	(5,589)	(5,797)	(6,522)
법인세지급	-	-	-	-	-	-	-	-	-
자본적지출	(91)	(428)	(85)	(138)	(384)	(627)	(2,145)	(1,637)	(283)
합 계	6,207	13,459	10,179	15,055	16,079	16,045	16,351	18,118	19,430

(단위: 백만원)

구 분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연평균 교통량(대/일)	41,199	41,390	41,499	40,992	40,493	39,997	39,509	39,026	38,902
영업현금흐름									
영업수익	27,351	27,840	28,917	29,006	29,569	29,562	30,481	31,142	20,637
영업비용	(5,774)	(5,785)	(6,234)	(6,395)	(6,681)	(6,483)	(6,560)	(7,001)	(7,656)
법인세지급	-	-	-	-	-	-	-	-	-
자본적지출	-	(29)	(217)	(100)	(145)	(711)	(401)	(1,579)	(909)
합 계	21,577	22,025	22,466	22,510	22,743	22,368	23,519	22,562	12,072

[수석-호평간도로 - 현금흐름 추정결과(2024.7.1~2041.8.31)]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기초현금	2,176	2,164	2,164	2,164	2,164	2,164	2,164	2,164	2,164
연차배당	-	-	-	-	-	-	-	-	-
배당 후 잔액(A)	2,176	2,164	2,164	2,164	2,164	2,164	2,164	2,164	2,164
영업현금흐름(B)	6,207	13,459	10,179	15,055	16,079	16,045	16,351	18,118	19,430
DSRA 인출(C)	147	770	19	50	38	56	56	42	62
선순위원리금 상환재원(D=A+B+C)	8,531	16,393	12,361	17,270	18,281	18,265	18,571	20,324	21,656
대리기관수수료 및 신용보증수수료	(98)	(186)	(175)	(165)	(151)	(136)	(120)	(103)	(87)
선순위차입금 이자지급	(1,355)	(2,576)	(2,427)	(2,289)	(2,088)	(1,878)	(1,656)	(1,433)	(1,201)
선순위차입금 원금상환	(3,236)	(6,473)	(3,571)	(7,276)	(7,276)	(8,035)	(8,035)	(8,035)	(8,928)
선순위 원리금 등 상환 후 잔액(E)	3,842	7,159	6,188	7,539	8,767	8,216	8,760	10,752	11,440
DSRA 적립	-	-	(920)	-	(177)	-	-	(209)	-
후순위차입금 이자지급	(1,677)	(4,995)	(3,104)	(5,375)	(6,425)	(6,052)	(6,596)	(8,378)	(9,276)
후순위차입금 원금상환	-	-	-	-	-	-	-	-	-
기말현금	2,164	2,164	2,164	2,164	2,164	2,164	2,164	2,164	2,164

(단위: 백만원)

구분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기초현금	2,164	2,164	2,164	2,164	2,164	2,164	2,164	2,164	2,164
연차배당	-	-	-	-	-	-	-	-	-
배당 후 잔액(A)	2,164	2,164	2,164	2,164	2,164	2,164	2,164	2,164	2,164
영업현금흐름(B)	21,577	22,025	22,466	22,510	22,743	22,368	23,519	22,562	12,072
DSRA 인출(C)	62	46	51	2,804	-	-	-	-	-
선순위원리금 상환재원(D=A+B+C)	23,803	24,236	24,681	27,479	24,907	24,533	25,683	24,726	14,236
대리기관수수료 및 신용보증수수료	(69)	(51)	(32)	(12)	-	-	-	-	-
선순위차입금 이자지급	(954)	(707)	(450)	(166)	-	-	-	-	-
선순위차입금 원금상환	(8,928)	(8,928)	(9,821)	(10,111)	-	-	-	-	-
선순위 원리금 등 상환 후 잔액(E)	13,852	14,550	14,378	17,189	24,907	24,533	25,683	24,726	14,236
DSRA 적립	-	(208)	(262)	-	-	-	-	-	-
후순위차입금 이자지급	(11,688)	(12,178)	(11,952)	(15,025)	(22,743)	(22,368)	(23,519)	(22,562)	(14,236)
후순위차입금 원금상환	-	-	-	-	-	-	-	-	-
기말현금	2,164	2,164	2,164	2,164	2,164	2,164	2,164	2,164	-

(4) 용마터널

구 분		상세 근거															
일반사항	기간가정	- 현금흐름 추정기간: 2024.7.1 ~ 2044.11.20															
	물가상승율	- 2024년6월까지 실적 소비자물가지수(CPI) 반영, 이후 2.5% 가정															
영업수익	통행량	-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교통수요재검증가정(2019.11, 미래교통)' 상 교통수요예측치 반영 - 2024년 37,084대/일, 추정기간 연평균 37,807대/일 수준															
	통행료 (vat 포함)	- 차종별 통행요금(2023년 기준) 소형: 1,700원/대 중형: 2,600원/대(*) 대형: 3,300원/대(*) (* 소비자물가지수 적용기준 중형 2,900원/대, 대형 3,800원/대이며, 미인상분은 주무관청 재정지원금으로 수취)															
영업비용 (Opex)		- 회사제시 향후 사업계획 반영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2024년 추정치</th> <th>추정기간 연평균</th> </tr> </thead> <tbody> <tr> <td>인건비</td> <td>1,183</td> <td>1,534</td> </tr> <tr> <td>유지관리비</td> <td>1,209</td> <td>2,595</td> </tr> <tr> <td>제경비</td> <td>1,888</td> <td>2,208</td> </tr> <tr> <td>합 계</td> <td>4,280</td> <td>6,337</td> </tr> </tbody> </table>	구 분	2024년 추정치	추정기간 연평균	인건비	1,183	1,534	유지관리비	1,209	2,595	제경비	1,888	2,208	합 계	4,280	6,337
		구 분	2024년 추정치	추정기간 연평균													
		인건비	1,183	1,534													
		유지관리비	1,209	2,595													
제경비	1,888	2,208															
합 계	4,280	6,337															
자본적지출 (Capex)		- 회사제시 향후 투자계획 반영 운영설비 대체비: 연평균 492백만원 집기비품 취득: 연평균 54백만원															
차입금 등	선순위	- 대출금액 및 이자율 등(2024.06.30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잔액</th> <th>금리</th> <th>상환방법</th> </tr> </thead> <tbody> <tr> <td>선순위(고정)</td> <td>90,000백만원</td> <td>3.50%</td> <td rowspan="2">원금불균등분할상환</td> </tr> <tr> <td>선순위(변동)</td> <td>23,850백만원</td> <td>기준금리(*) + 1.00%</td> </tr> <tr> <td>합 계</td> <td>113,850백만원</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잔액	금리	상환방법	선순위(고정)	90,000백만원	3.50%	원금불균등분할상환	선순위(변동)	23,850백만원	기준금리(*) + 1.00%	합 계	113,850백만원		
		구 분	잔액	금리	상환방법												
선순위(고정)		90,000백만원	3.50%	원금불균등분할상환													
선순위(변동)	23,850백만원	기준금리(*) + 1.00%															
합 계	113,850백만원																
		(* 기준금리: 2024년6월말 기준3년만기 회사채(AA-)금리: [3.658%]															
		- 만기: 2037.12.31 - 대리은행수수료: 20백만원/년 - 신용보증수수료 선순위(고정): 0.20%/년 선순위(변동): 0.40%/년															
	후순위	- 차입금 잔액: 28,000백만원(2024.06.30 기준) - 적용이자율: 12.0%/년 (장기대출금 상환 이후: 15.0%/년) - 만기: 2039.3.31 - 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회계 및 세무	감가상각비	- 관리운영권: 30년, 정액법 - 운영설비 및 집기비품 등: 5년, 정액법															
	법인세	- 법인세율 과세표준 2 억원 이하: 9.9%(지방세 포함) 과세표준 2 억원 초과 200 억원 이하: 20.9%(지방세 포함)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3.1%(지방세 포함)															
	배당금	- 배당제한조건 단순/누적 부채상환비율(DSCR) 2년연속 1.0/ 1.5 이상 DSRA 전액적립, 신용공여대출금 전액상환															

		선순위원금상환 개시, 미지급 대출금 원리금 및 제반 수수료가 없을 것
--	--	----------------------------------------

[용마터널 - 영업현금흐름 추정결과(2024.7.1~2044.11.20)]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연평균 교통량 (대/일)	38,609	39,036	39,430	39,824	40,218	40,613	39,749	39,811	39,874	39,936	39,999
영업현금흐름											
영업수익	11,212	23,628	24,257	24,534	25,741	26,395	26,840	27,250	28,246	28,676	29,700
영업비용	(2,141)	(3,886)	(4,344)	(8,796)	(5,057)	(4,445)	(4,654)	(4,774)	(5,734)	(5,662)	(5,390)
법인세지급	-	(326)	(617)	(652)	(324)	(760)	(1,540)	(2,360)	(2,474)	(2,555)	(2,737)
자본적지출	-	-	-	-	-	(329)	-	(350)	-	-	(3,571)
합 계	9,071	19,415	19,296	15,086	20,360	20,861	20,646	19,766	20,038	20,458	18,002

(단위: 백만원)

구 분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연평균 교통량 (대/일)	40,061	40,054	40,047	40,040	40,033	40,026	39,735	39,443	39,152	38,860
영업현금흐름										
영업수익	30,143	31,131	32,444	32,849	33,824	34,223	34,961	36,009	36,149	34,193
영업비용	(5,666)	(6,014)	(5,932)	(6,967)	(6,306)	(6,560)	(6,575)	(16,477)	(7,694)	(6,130)
법인세지급	(2,943)	(3,062)	(3,281)	(3,699)	(3,934)	(4,527)	(4,574)	(4,720)	(2,816)	(8,582)
자본적지출	-	-	-	-	(421)	-	(448)	-	-	(4,571)
합 계	21,533	22,055	23,231	22,183	23,163	23,136	23,364	14,812	25,638	14,910

[용마터널 - 현금흐름 추정결과(2024.7.1~2044.11.20)]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기초현금	10,385	12,384	17,841	23,432	24,435	30,370	37,109	43,307	50,202	48,248	45,733
연차배당	-	-	-	-	-	-	-	(3,044)	(6,600)	(6,688)	(7,316)
배당 후 잔액(A)	10,385	12,384	17,841	23,432	24,435	30,370	37,109	40,262	43,602	41,560	38,416
영업현금흐름(B)	9,071	19,415	19,296	15,086	20,360	20,861	20,646	19,766	20,038	20,458	18,002
DSRA 인출(C)	-	118	118	59	142	142	71	5,709	-	-	-
선순위원리금 상환 재원(D=A+B+C)	19,456	31,917	37,256	38,577	44,936	51,373	57,827	65,737	63,640	62,018	56,419
대리기관수수료 및 신용보증수수료	(162)	(314)	(298)	(283)	(266)	(248)	(230)	(210)	(189)	(166)	(142)
선순위차입금 이자 지급	(2,119)	(4,077)	(3,841)	(3,604)	(3,350)	(3,066)	(2,781)	(2,480)	(2,148)	(1,799)	(1,420)
선순위차입금 원금 상환	(2,530)	(6,325)	(6,325)	(6,325)	(7,590)	(7,590)	(7,590)	(8,855)	(8,855)	(10,120)	(10,120)
선순위 원리금 등 상환 후 잔액(E)	14,646	21,201	26,792	28,365	33,730	40,469	47,225	54,192	52,448	49,933	44,737

영업수익	통행료 (vat 포함)	차종구분	본선	지선	
		1종	1,700	1,100	
		2종	1,700	1,100	
		3종	1,700	1,100	
		4종	1,900	1,200	
		5종	2,100	1,300	
영업비용 (Opex)	- 회사제시 향후 계획 반영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추정치	추정기간 연평균		
	인건비	1,423	2,220		
	유지관리비	1,957	3,154		
	제경비	1,478	2,063		
합 계		4,858	7,436		
자본적지출 (Capex)	- 회사제시 향후 투자계획 반영 운영설비대체비: 연평균 825백만원 차량운반구: 연평균 11백만원 집기비품: 연평균 50백만원				
	- 대출금액 및 이자율 등(2024.06.30 기준)				
차입금 등	선순위	구분	잔액	금리	상환방법
		선순위(고정)	104,436백만원	4.2%	원금불균등분할상환
		선순위(변동)	87,704백만원	기준금리(*) + 1.10%	
		합 계	192,140백만원		
(*) 기준금리: 2024년6월말 기준3년만기 회사채(AA-)금리 [3.658%]					
- 만기: 2040.6.30					
- 대리은행수수료: 50백만원/년					
- 신용보증수수료 선순위(고정): 0.20%/년 선순위(변동): 0.32%/년					
회계 및 세무	감가상각비	- 관리운영권: 30년, 정액법 - 건물: 30년, 정액법 - 기타유형자산: 5년, 정액법			
	법인세	- 법인세율 과세표준 2 억원 이하: 9.9%(지방세 포함) 과세표준 2 억원 초과 200 억원 이하: 20.9%(지방세 포함)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3.1%(지방세 포함)			
	배당금	- 배당제한조건 단순 부채상환비율(DSCR) 2년 연속 1.2x 이상 누적 부채상환비율(DSCR) 2년 연속 1.3x 이상 부채상환적립계정(DSRA) 전액 적립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 영업현금흐름 추정결과(2024.7.1~2050.9.20)]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연평균 교통량 (대/일)	49,869	50,462	51,055	51,382	51,708	52,034	52,360	52,687	52,387	52,088	51,788	51,489	51,189	51,080
영업현금흐름														
영업수익	13,427	27,645	28,668	29,585	30,529	31,502	32,504	33,538	34,180	34,834	35,499	36,176	36,864	37,704
영업비용	(2,429)	(4,803)	(5,242)	(5,066)	(5,480)	(5,182)	(5,526)	(5,403)	(6,331)	(5,759)	(8,847)	(6,782)	(6,304)	(6,597)
법인세 지급	-	-	-	-	-	(1,637)	(1,964)	(2,049)	(2,393)	(2,246)	(2,853)	(2,403)	(2,954)	(3,147)
자본적 지출	-	(143)	(243)	(3,167)	-	-	(671)	(275)	-	-	(3,765)	(3,002)	(311)	-
합계	10,998	22,700	23,183	21,351	25,049	24,684	24,343	25,810	25,456	26,829	20,034	23,989	27,295	27,960

(단위: 백만원)

구분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연평균 교통량 (대/일)	50,972	50,863	50,755	50,646	50,646	50,646	50,646	50,646	50,646	50,646	50,646	50,646	50,646
영업현금흐름													
영업수익	38,564	39,443	40,342	41,260	42,292	43,349	44,433	45,544	46,682	47,849	49,046	50,272	37,072
영업비용	(6,837)	(7,233)	(11,391)	(7,667)	(7,704)	(8,062)	(8,333)	(9,835)	(8,665)	(9,146)	(9,213)	(13,539)	(7,607)
법인세 지급	(3,330)	(4,181)	(4,365)	(3,857)	(5,116)	(4,487)	(5,630)	(6,090)	(5,805)	(6,546)	(6,493)	(6,067)	(6,485)
자본적 지출	-	-	(859)	(4,828)	-	-	-	(234)	(398)	-	(5,320)	-	(5,184)
합계	28,396	28,028	23,727	24,909	29,472	30,800	30,470	29,385	31,814	32,158	28,020	30,666	17,797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 현금흐름 추정결과(2024.7.1~2050.9.20)]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기초현금	12,953	15,566	21,312	22,820	22,972	27,297	31,733	36,304	39,791	40,103	42,243	32,902	29,427	28,628
연차배당	-	-	-	-	-	-	-	(3,028)	(6,324)	(6,345)	(8,168)	(6,893)	(8,158)	(9,023)
배당 후 잔액(A)	12,953	15,566	21,312	22,820	22,972	27,297	31,733	33,276	33,467	33,758	34,075	26,009	21,269	19,606
영업현금흐름(B)	10,998	22,700	23,183	21,351	25,049	24,684	24,343	25,810	25,456	26,829	20,034	23,989	27,295	27,960
DSRA 인출(C)	267	112	113	225	225	225	225	225	225	225	150	301	301	225
선순위원리금 상환재원(D=A+B+C)	24,218	38,378	44,607	44,397	48,246	52,206	56,301	59,312	59,148	60,812	54,259	50,299	48,864	47,792
대리기관수수료 및 신보수	(302)	(535)	(510)	(485)	(459)	(433)	(408)	(382)	(356)	(330)	(303)	(269)	(235)	(197)

수료														
선순위차입금 이자지급	(4,266)	(8,363)	(8,124)	(7,716)	(7,266)	(6,815)	(6,365)	(5,915)	(5,465)	(5,015)	(4,566)	(3,982)	(3,381)	(2,761)
선순위차입금 원금상환	(2,524)	(5,048)	(7,576)	(10,104)	(10,104)	(10,104)	(10,104)	(10,104)	(10,104)	(10,104)	(11,802)	(13,500)	(13,500)	(16,870)
선순위 원리 금 상환 후 잔 액(E)	17,126	24,432	28,398	26,092	30,417	34,853	39,424	42,911	43,223	45,363	37,598	32,547	31,748	27,963
부채상환적립 계정(DSRA) 적립	-	-	(2,458)	-	-	-	-	-	-	-	(1,576)	-	-	(3,201)
후순위차입금 이자지급	(1,56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3,120)
후순위차입금 원금상환	-	-	-	-	-	-	-	-	-	-	-	-	-	-
기말현금	15,566	21,312	22,820	22,972	27,297	31,733	36,304	39,791	40,103	42,243	32,902	29,427	28,628	21,642

(단위: 백만원)

구분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기초현금	21,642	15,336	7,436	18,167	17,629	25,189	35,384	43,302	51,200	63,815	75,231	79,951	86,256
연차배당	(9,731)	(11,918)	(7,436)	(18,023)	(15,112)	(14,429)	(17,001)	(18,970)	(19,199)	(20,743)	(23,299)	(24,361)	(18,658)
배당 후 잔액 (A)	11,911	3,418	0	144	2,517	10,760	18,384	24,331	32,001	43,072	51,932	55,590	67,598
영업현금흐름 (B)	28,396	28,028	23,727	24,909	29,472	30,800	30,470	29,385	31,814	32,158	28,020	30,666	17,797
부채상환적립 계정(DSRA) 인출(C)	451	459	10,281	-	-	-	-	-	-	-	-	-	-
선순위원리금 상환재원 (D=A+B+C)	40,758	31,905	34,007	25,053	31,989	41,560	48,854	53,717	63,815	75,231	79,951	86,256	85,395
대리기관수수 료 및 신보수 수수료	(147)	(95)	(53)	(50)	(50)	(50)	(50)	-	-	-	-	-	-
선순위차입금 이자지급	(1,916)	(1,014)	(169)	-	-	-	-	-	-	-	-	-	-
선순위차입금 원금상환	(20,240)	(20,240)	(10,112)	-	-	-	-	-	-	-	-	-	-
선순위 원리 금 상환 후 잔 액(E)	18,456	10,556	23,673	25,003	31,939	41,510	48,804	53,717	63,815	75,231	79,951	86,256	85,395
부채상환적립 계정(DSRA) 적립	-	-	-	-	-	-	-	-	-	-	-	-	-
후순위차입금 이자지급	(3,120)	(3,120)	(3,106)	(2,574)	(1,950)	(1,326)	(702)	(117)	-	-	-	-	-
후순위차입금 원금상환	-	-	(2,400)	(4,800)	(4,800)	(4,800)	(4,800)	(2,400)	-	-	-	-	-

기말현금	15,336	7,436	18,167	17,629	25,189	35,384	43,302	51,200	63,815	75,231	79,951	86,256	85,395
------	--------	-------	--------	--------	--------	--------	--------	--------	--------	--------	--------	--------	--------

(주2) 주주귀속현금흐름(FCFE)의 현재가치는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따라 산정된 자기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산출하였으며, 할인율인 자기자본비용은 무위험 수익률에 평가대상주식의 위험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무위험수익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과거 5개년 평균

- 위험프리미엄: 시장위험프리미엄 x 베타 평균값

또한, 위험프리미엄을 산출하기 위해 2023년말 기준 동종기업(국내 및 해외 인프라 펀드, 부동산투자집합기구)^(주3)의 베타 평균값과 시장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하였으며, 목표자본구조는 유사 상장 집합투자기구인 맥쿼리인프라의 자본구조값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산출된 자기자본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자본비용 산출 결과]

구분	내용	비고
가. 무위험수익률	2.45%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의 과거 5년평균('23.12.31, Bloomberg)
나. 위험프리미엄	4.55%	(1) x (2)
(1) 시장위험프리미엄	11.94%	과거 5년 평균 시장위험프리미엄('23.12.31, Bloomberg)
(2) 부채베타	38.06%	$(A) \times \{1 + (1 - (C)) \times (B)\}$
(A) 무부채베타	35.41%	(주3) 대응기업 평균 ('23년 12월말 기준 5년 베타 사용)
(B) 부채비율	7.48%	'23년 12월말 기준 맥쿼리인프라 자본구조(부채비율) 준용
(C) 법인세율	0.00%	한계법인세율(*)
다. 자기자본비용	7.00%	가 + 나

(*)현재 소득 기준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1원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

(주3) 자기자본비용(할인율) 산출을 위한 베타값 도출을 위해 국내 및 해외의 상장 인프라펀드 및 부동산투자회사 중 당사와 유사한 영업 및 재무 위험을 보유한 8개사를 대응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인프라펀드는 맥쿼리인프라가 유일하므로 해외 인프라펀드 가운데 회사와 같이 통행량 등 수요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산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해외 인프라펀드를 비교기업으로 포함하였으며, 대체투자 관련하여 국내 증시에 상장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8개 대응기업을 선정하여 베타 값을 산출하는 데 활용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용기업 현황]

(단위: 억원)

회사명	총자산	순자산	부채	시가총액	기업가치	사업영역
맥쿼리인프라	33,391	29,119	4,056	54,211	58,267	유료도로, 교량, 터널, 도시가스과 같은 인프라 자산의 지분 및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여 배당 및 이자수익 창출
신한알파리츠	19,972	5,922	13,356	5,638	18,994	판교, 도심, 강남 주요권역에 위치한 오피스 포트폴리오를 기초자산으로 임대수익 창출
롯데리츠	23,137	10,555	11,355	7,666	19,021	롯데쇼핑,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장기 100% 책임임대차계약을 통해 수익 창출
코람코라이프 인프라리츠	12,602	4,562	6,996	4,568	11,564	현대오일뱅크 163개 주유소 및 물류센터, 오피스를 기초자산으로 임대수익 창출
이리츠코크랩	6,903	2,351	4,295	3,075	7,370	뉴코아 아울렛 3개매장을 기초자산으로 책임임대차계약을 통한 임대수익 창출
Atlas Arteria (호주)	70,800	54,878	15,922	73,802	89,723	호주, 유럽 및 북미 도로 인프라 투자 및 운영회사로서 실시협약이 체결된 도로자산의 통행료를 바탕으로 수익 창출
Brookfield Infrastructure LP (미국)	1,299,509	438,602	860,907	189,825	1,050,731	전세계 인프라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회사로서 운송, 에너지, 통신, 항만 등 다각화된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Transurban (호주)	319,407	109,896	209,512	373,099	506,138	호주 및 북미 도로 인프라 투자 및 운영회사로서 실시협약이 체결된 도로자산의 통행료를 바탕으로 수익 창출
평균	223,215	81,986	140,800	88,986	220,226	-

(*) 2023년말 기준 재무수치이며, 해외 인프라펀드의 경우 2023.12.31 하나은행 최종고시 매매기준율로 원화환산한 금액입니다.

[대용기업의 무부채베타 산출 내역]

(단위: 억원)

구분	Levered Beta(*1)	Debt(*2)	Market Cap(*3)	자본구조 (D/E)(*4)	Unlevered Beta
맥쿼리인프라	0.49	405,577	5,421,120	7.5%	0.45
이리츠코크랩	0.51	429,503	307,523	139.7%	0.21
신한알파리츠	0.39	1,335,567	563,841	236.9%	0.12
롯데리츠	0.52	1,135,518	766,567	148.1%	0.21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0.46	699,596	456,838	153.1%	0.18
Atlas Arteria (호주)	0.97	1,809	8,386	21.6%	0.82
Brookfield Infrastructure LP (미국)	1.01	66,768	18,890	353.5%	0.22
Transurban (호주)	0.91	23,806	42,341	56.2%	0.62
평균	0.66			139.6%	0.35

(*1) 2023년12월말 기준 5yr Monthly Beta

(*2) 2023년12월말 기준 이자발생부채금액 (단,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는 2023년11월말 기준)

(*3) 2023년12월말 기준 시가총액

(*4) Debt to Equity(이자발생부채 ÷ Market Cap)

(출처: Bloomberg, SG Analysis)

(주4)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에 귀속되는 주주현금흐름(FCFE)과 이를 할인한 FCFE의 현재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현금흐름(FCFE)의 현재가치]

(단위: 백만원)

구분	주주귀속현금흐름 (FCFE)	현재가치 할인계수 (*)	FCFE의 현재가치
2024년	47,240	0.978	46,186
2025년	97,966	0.929	91,042
2026년	96,451	0.869	83,770
2027년	89,907	0.812	72,978
2028년	89,049	0.759	67,553
2029년	84,889	0.709	60,184
2030년	82,788	0.663	54,855
2031년	113,265	0.619	70,139
2032년	119,668	0.579	69,256
2033년	123,325	0.541	66,703
2034년	126,903	0.505	64,148
2035년	102,656	0.472	48,497
2036년	149,288	0.442	65,913
2037년	43,454	0.413	17,931
2038년	42,546	0.386	16,407
2039년	30,841	0.360	11,115
2040년	36,137	0.337	12,172
2041년	35,759	0.315	11,257
2042년	20,822	0.294	6,126
2043년	26,436	0.275	7,269
2044년	65,681	0.257	16,878
2045년	21,267	0.240	5,107
2046년	19,188	0.224	4,307
2047년	19,317	0.210	4,052
2048년	9,949	0.196	1,950
2049년	8,392	0.183	1,537
2050년	8,208	0.171	1,405
합 계	1,711,390		978,740

주) 주주귀속현금흐름(FCFE)의 현재가치는 FCFE를 자기자본비용(7.00%)으로 할인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현재가치 할인계수: 미래 현금흐름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수로,
 $1 / \{ (1 + \text{할인율})^{\text{년수}} \}$ 로 계산됩니다.

자료: 회계법인 새길_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지분가치 평가보고서(2024.10.15)

(4) 주당 공모가액 산출 내역

[주당 공모가액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주, 원)

구분	금액	비고
케이비발해인프라 기업가치 평가액	987,874	(A)
÷ 발행주식총수(공모 전)	113,760,231	(B)
주당 기업가치 (원)	8,684	(C) = (A) / (B)
발행가액 조정(주1)	(284)	(D)
주당 발행가액	8,400	(E) = (C) + (D)

(주1) 회사의 예상 실적에 따른 배당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주당 기업가치 금액을 조정한 8,400원을 회사의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상기 예정금액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5 단서조항 후단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상기 금액은 절대적 평가금액 또는 상장 후 주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상장 후 주가는 공모가를 하회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모집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조달되는 자금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분	금액
모집 및 매출총액 (1)	200,000,001,600
매출대금 (2)	86,203,345,200
발행제비용 (3)	1,802,157,994
순조달금액 [(1)-(2)-(3)]	111,994,498,406

(주) 금번 공모에 소요되는 발행제비용은 금번 공모로 조달하는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금번 공모에 앞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자산(주식, 후순위대출)을 단기 차입금으로 조달하여 양수('24.8.30)한 바 있습니다. 회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자산 투자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단, 본 사용계획은 신규 투자스케줄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자금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다. 공모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계산근거
인수수수료	1,137,966,564	신주 공모금액의 1.0%
사무주관수수료	600,000,000	총 공모금액의 0.3%(10원 미만 절사)
발행분담금	5,689,830	신주 공모금액의 0.005%(10원 미만 절사)
신규상장수수료	16,066,600	상장할 금액이 5,000억원 초과 2조원 이하인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825만원 + 5,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3.5만원) / 3 10억원당 수수료를 산정시 10억원 미만의 금액은 올림(100원 미만 절사)
발행등록수수료	500,000	발행주식수 1,000주당 300원 (상한: 50만원/ 하한: 4천원)
등록면허세	112,500	증자자본금의 0.4%(10원 미만 절사)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
지방교육세	22,500	등록면허세의 20%(10원 미만 절사)
기타비용	41,800,000	본건 공모 관련 홍보비 등 제비용 (예상)
합 계	1,802,157,994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본건 공모금액인 8,4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만을 기재하였습니다.
- (주2) 인수수수료 및 사무주관수수료의 산정과 관련하여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 구성원에게 상장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발행회사의 독자적인 재량으로 본건 신주 공모금액의 0.8%에 해당하는 범위(약 9.1억원) 내에서 공모주식 모집에 관한 성과수수료를 각 인수단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에게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3)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1에 의거하여 증자 자본금의 0.4%가 부과되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등 법령에 따라 자본금을 등기하지 않는 법인 등으로서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이 부과됩니다.
- (주3) 상기 발행제비용은 해당되는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금번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3,547,221주(공모주식의 56.9%), 구주매출 10,262,303주(공모주식의 43.1%)의 일반공모 방

식에 의합니다.

가. 모집(매출)의 내용

(1) 모집(매출)의 방법: 일반공모

모집(매출)대상	주식수(비율)	주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일반공모	23,809,524주(100%)	8,400원	200,000,001,600원
주주배정	-	-	-
우리사주배정	-	-	-
기타	-	-	-
합계	23,809,524주(100%)	8,400원	200,000,001,600원

- (주1) 회사는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회사 및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로서 임직원이 없는 서류상 회사이므로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으며, 금번 유상증자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이 없습니다.
- (주2) 금번 일반공모는 KB증권(주)가 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주), 대신증권(주)가 공동주관회사로서 총액인수 방식으로 참여하며, 각 사 모두 청약사무업무를 진행합니다.
- (주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2) 모집(매출)의 조건

금번 회사의 상장공모와 관련한 모집(매출)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모집(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23,809,524주	
주당 모집(매출)가액 (주3)		8,400원	
모집(매출)총액		200,000,001,600원	
청약단위		(주4)	
청약기일 (주1,2)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개시일	2024년 11월 18일
		종료일	2024년 11월 19일
		개시일	2024년 11월 18일

항 목		내 용
	일반청약자 종료일	2024년 11월 19일
청약증거금 (주5)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
	일반청약자	50%
납입기일		2024년 11월 21일
배당기산일(주7)		매년 01월 01일

(주1) 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KB증권(주)** 청약일: 2024년 11월 18일 ~ 19일 (10:00 ~ 16:00)

키움증권(주) 청약일: 2024년 11월 18일 ~ 19일 (10:00 ~ 16:00)

대신증권(주) 청약일: 2024년 11월 18일 ~ 19일 (10:00 ~ 16:00)

(주3) 주당 모집(매출)가액은 2024년 10월 7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8,4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주당 모집(매출)가액 결정과는 별개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 실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4) 청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KB증권(주)**, **키움증권(주)**, **대신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바.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 (2)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인수단 구성원 각 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주5) 청약증거금 :

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4년 11월 21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4년 11월 21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4년 11월 21일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6) 청약취급처 :

① **KB증권(주)**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 **KB증권(주)** 본 · 지점

② 일반청약자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의 본 · 지점
- 공동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의 본 · 지점
-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의 본 · 지점

③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 중의 한 곳의 청약취급처를 이용하여야 하며, 중복청약 및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01월 01일 ~ 12월 31일, 배당 기산일은 매년 01월 01일입니다. 단, 2024년 상반기말 기준 주당분배금(300원)이 기 지급되었는 바, 본건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의 경우 2024 사업연도 사업성과 중 기지급 배당금을 제외하고 수취하게 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분산요건 미 충족 시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1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기의 사유로 재공모 또는 신규 상장 취소가 결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청약자에게 반환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매출)의 세부 내용

1)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

배정 대상	주식수	배정 비율
기관투자자	9,523,810주	40.0%
일반청약자	14,285,714주	60.0%
합계	23,809,524주	100.0%

(주1) 상기의 비율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2)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2) 배정 주식에 대한 인수

인수회사	주식수	인수 비율	배정대상
KB증권(주)	14,285,714주	60.0%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키움증권(주)	5,952,382주	25.0%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대신증권(주)	3,571,428주	15.0%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합 계	23,809,524주	100.00%	-

(주) 각 사별 최종 인수주식수 및 비율은 수요예측 결과 및 청약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취급처별 일반청약자 배정주식수

회사명	주식수	비율
KB증권(주)	8,571,428주	60.0%
키움증권(주)	3,571,429주	25.0%
대신증권(주)	2,142,857주	15.0%
합 계	14,285,714주	100.0%

- (주1) 어느 청약취급처 구성원이 일반청약자 청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약증거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인수단 구성원은 동 금액을 해당 인수단 구성원이 별도로 정하는 은행 또는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발행회사의 청약증거금 명목으로 별도 예치하기로 합니다.
- (주2)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인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주3) 일반청약자는 어느 한 청약취급처에 동일인의 명의로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동시에 이용한 이중청약을 할 수 없고, 일반청약자가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주4) 일반청약자는 복수의 청약취급처에 동일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동시에 이용한 중복청약을 할 수 없고, 일반청약자의 청약 중 중복청약으로 판단되는 청약이 있는 경우 청약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되, 동일한 시간에 중복청약이 이루어지거나, 전산 등의 문제로 청약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i)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순서, ii) 청약건수가 적은 회사, iii) 증권신고서 상 인수인 순으로 가장 우선한 청약순으로 순차 적용합니다.
- (주5) 청약자에게 제공될 청약서식과 당해 청약서식을 제출하는 방법 또는 다른 청약방법은 적용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관례에 따라 인수단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하기로 합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비고
일반공모	13,547,221주	100.00%	-
우리사주조합	-	-	-
합계	13,547,221주	100.00%	-

【참고】 모집세부내역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공모총액	비고
기관투자자	5,418,888주	40.00%	8,400원	45,518,659,200원	-
일반청약자	8,128,333주	60.00%		68,277,997,200원	-
합계	13,547,221주	100.00%		113,796,656,400원	-

- (주1)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와 공동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 대신증권(주)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주2)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8,400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주당 모집가액은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요예측 실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주3)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주4)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 (주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1) 매출의 방법

【매출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비고
일반공모	10,262,303주	100.00%	-
우리사주조합	-	-	-
합계	10,262,303주	100.00%	-

【참고】 매출세부내역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공모총액	비고
기관투자자	4,104,921주	40.00%	8,400원	34,481,336,400원	-
일반청약자	6,157,382주	60.00%		51,722,008,800원	-
합계	10,262,303주	100.00%		86,203,345,200원	-

- (주1) 금번 매출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매출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과 공동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 대신증권(주)을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주2) 주당 매출가액 및 매출총액은 2024년 10월 07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한 8,400원 기준으로, 주당 매출가액 결정과는 별개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주3) 금번 매출에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주4)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주식수(비율)은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 (주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2) 매출의 위탁(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	위탁의 내용 및 조건	매출잔량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케이비발해인프라 투융자회사	매출주주의 보유주식 중 일부(10,262,303주)를 수요예측 후 결정된 공모가액으로 매출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함

(3) 매출인에 관한 사항

(단위: 주)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증권의 종류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주1)	매출후 보유증권수
국민연금공단	타인	기명식보통주	10,190,655	1,586,953	8,603,702
공무원연금공단	타인	기명식보통주	6,793,771	1,057,967	5,735,804
한화생명보험(주)	타인	기명식보통주	6,793,771	1,057,967	5,735,804
DB손해보험(주)	타인	기명식보통주	6,793,771	1,057,967	5,735,80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타인	기명식보통주	6,793,771	1,057,967	5,735,804
삼성생명보험(주)	타인	기명식보통주	6,793,771	1,057,967	5,735,804
에이비엘생명보험(주)	타인	기명식보통주	6,793,771	1,057,967	5,735,804
농협은행(주)	타인	기명식보통주	3,396,895	528,986	2,867,909
흥국생명보험(주)	타인	기명식보통주	3,396,895	528,986	2,867,909
DB생명보험(주)	타인	기명식보통주	2,717,521	423,190	2,294,331
푸본현대생명보험(주)	타인	기명식보통주	2,038,145	317,393	1,720,752
(주)경남은행	타인	기명식보통주	1,358,769	211,597	1,147,172
(주)부산은행	타인	기명식보통주	1,358,769	211,597	1,147,172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타인	기명식보통주	679,392	105,799	573,593
합 계			65,899,667	10,262,303	55,637,364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 상기 매출주주는 금번 상장 이후 55,637,364주의 보통주(공모 후 43.7%)를 보유하게 되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상의 무보유 대상자는 아니지만 상장 후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구주 매출 후 잔여물량 전량에 대하여 신규상장일로부터 6개월 자발적 의무보유 협약에 동의하였습니다.

라. 모집(매출)가액 결정방법

(1) 모집(매출)가액 결정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1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5에 의거하여 2024년 10월 07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모집(매출)을 위한 공모가액을 8,4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발행가액 산정의 상세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3. 모집예정금액 - ■ 모집(매출)가액(이하 "공모가액") 산정 내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현재 비상장 상태이므로 민간투자법 제41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5의 단서 조항 후단에 따라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공정한 가치를 고려하여 신주 발행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새길회계법인의 지분가치 평가보고서(2024.10.15) 상 주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본건 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투융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新株)를 발행하거나 투융자신탁이 그 설정 후에 추가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5(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조건)

법 제41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한다. 다만, 그 방법으로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의 발행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 결회사를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할 수 있고,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공정한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투자회사의 주식)

- ① 투자회사의 주식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 ② 투자회사는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新株)의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 ③ **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④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방형투자회사"라 한다)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형투자회사는 제3호의 방법에 따라 확정된 매일의 발행가액을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정,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1. 신주의 발행기간
 - 2. 제1호의 발행기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수의 상한
 - 3. 제1호의 발행기간 동안 매일의 발행가액 및 주금납입기일을 정하는 방법
- ⑤ **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 날에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 그 밖의 발행조건은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그 투자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⑥ 제194조제7항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인수인에게 준용한다.
- ⑦ 주식인수인은 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과 동시에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정관>

제15조 (신주발행)

- ① 회사가 본 정관의 효력발생일 이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 한다.

1. 발행하는 신주의 수
2. 발행가액 및 주금 납입기일을 정하는 방법
 - ② 신주인수의 청약에 의한 주식배정의 수는 납입금액을 1주당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결정한다.
 - ③ 본 정관에서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로서 한국의 은행의 영업일을 말한다.
 - ④ 주식의 청약 단위는 일주 단위로 한다.
 - ⑤ 회사가 유무상증자 또는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단, 회사가 (가) 제55조 제2항에 따른 초과분배 및/또는 (나) 제55조 제4항에 따른 수시(중간)배당에 따른 각 기준일의 익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 내에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해당 기준일의 초과분배, 수시(중간)배당 부분은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시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가) 또는 (나)의 경우 신주 발행 이후 추가 초과분배나 결산 배당시 기존 주식 1주당 이익분배금과 신주 1주당 이익분배금은 동일하다.

회사는 모집가액의 결정과는 별개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요예측 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번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다목에 의거, 동 규정에 의한 공모에 해당하지 않고 동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공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는 원칙적으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모 및 인수, 배정 등의 제반 사항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요예측 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동 규정에서 정한 바를 대체로 참고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공모에는 일반적인 주권비상장법인의 기업공개시 적용되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들과 상이한 점(수요예측 참가자격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금번 공모에 참여할 예정인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을 면밀히 참고하시고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전략)

2. “ 공모”란 법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에서 정하는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증권(법 제4조제2항제6호의 증권으로서 법 제9조제16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로 하여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외국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공모는 이 규정에 의한 공모로 보지 아니한다.**

가.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라.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및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나.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자로 협회가 정하는 자

3. “기업공개”란 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이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 및 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중 해당 법인이 상장되지 않은 다른 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를 말한다.

7. “수요예측”이란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공모함에 있어 공모가격(무보증사채의 경우 공모금리를 말한다)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공모예정기업의 공모희망가격(무보증사채의 경우 공모희망금리를 말한다)을 제시하고, 매입희망 가격, 금리 및 물량 등의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수요예측등"이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분	내용		비고
공고 일시	2024년 11월 08일(금)		주1)
기업 IR	2024년 11월 01일(금) ~ 2024년 11월 07일(목)		주2)
수요예측 일시	기관투자자 (한국시간 기준)	2024년 11월 08일(금) ~ 2024년 11월 12일(화)	주3)
문의처	KB증권(주) (☎ 02-6114-1827, 1689)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4년 11월 08일(금)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3)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2024년 11월 08일(금) ~ 2024년 11월 12일(화)에 수요예측이 진행되며, 마감시간은 한국시간 기준 2024년 11월 12일(화) 오후 5시입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8.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항의 "창업투자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나 투자일임회사, 부동산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마목, 사목 및 아목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증권신탁(이하 이 조에서 “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 (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일임회사 등]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

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한다)일 것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 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집합투자회사"로, "투자일임업"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집합투자재산"으로 본다.
- ⑦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2조제18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나 투자일임회사, 부동산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마목, 사목, 아목에 따른 투자자임을 약하는 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기 ②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기타 본 건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②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3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④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⑤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동 규정 동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p>「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p> <p>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자산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 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 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중략)

③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4. 해당 사유
5. 해당 사유의 발생일
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2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집합투자회사에게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는 금번 공모를 통해 발생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를 KB증권(주)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 해당 사유
- 해당 사유의 발생일
-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제재사항]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미청약, 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 적용)

적용 대상	위반금액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정의	규모	

미청약·미납입	미청약·미납입 주식수 X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상한: 24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	의무보유확약 위반 주식수(주1) X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작성·제출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자본시장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상한: 12개월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상한: 6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금지 위반			12개월 X 환매비용 (주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6개월 이내 금지

(주1)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용 : 환매금액 누계 / (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주3) 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미납입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4) 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습니다.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인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text{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text{배정받은 주식수} \times \text{확약기간 일수})) \times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이 70%이상인 경우 위원회는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주5) 가중·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상기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감경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 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주6)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7)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6)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주8) 제재금 산정기준

1) 제재금 : $\text{Max}[\text{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times 500\text{만원, 경제적 이익}]$

* 100만원 이하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습니다.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미청약·미납입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증가** 기준 평가손익 X(-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X(-1)
의무보유 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증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증가** 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제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증가** 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증가** 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위원회 의결일 전 5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증가로 적용하여 산정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	주식수	비율	비고
기관투자자	9,523,810주	40.00%	-

- (주1)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3,809,524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14,285,714주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분	최고한도	최저한도
기관 투자자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X 신청가격) 또는 9,523,810주(기관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1,000주

-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수요예측 참여자는 수요예측 참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

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금번 수요예측 시 참가 수량단위는 1,000주입니다.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 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하므로,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참여 방법을 인정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금번 수요예측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에서 수행하오니 아래의 수요예측 참여 방법 등을 참고하시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습니다. 다만, KB증권(주)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서면,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인터넷 접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KB증권(주) 인터넷 접수방법]

- ① 홈페이지 접속: <https://www.kbsec.com> ⇒ 최하단의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가

- 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KB증권(주)**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 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 (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 ④ 기관투자자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가하고자 하나, 금융위원회 사이트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기관투자자는 반드시 기관투자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KB증권(주) ECM본부 E-mail(ipo@kbsec.com)**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없이 확인이 되지 않는 기관투자자는 물량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접수처	① 인터넷 접수 : KB증권(주) 홈페이지(www.kbsec.com) ② 서면 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1층 ECM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1층 ECM부
TEL	02-6114-1827,1689
E-mail	ipo@kbsec.com
FAX	02-6114-5676

[해외 기관투자자]

접수처	① 인터넷 접수 : KB증권(주) 홈페이지(www.kbsec.com) ② 서면 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6층 국제영업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타워 16층 국제영업부
전화번호	02-6114-1543
E-mail	orders@kbsec.com
Fax	02-6114-5678

※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①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전까지 **KB증권(주)**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는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하며, 그 외 기관투자자는 고유재산, 투자일임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②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KB증권(주)**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③ 수요예측참여 내역은 수요예측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 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④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구분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후 물량배정시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 ⑤ 또한, 집합투자회사 참여분 중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를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시 **Excel** 파일로 첨부하여야합니다.
-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시 당해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기관투자자가 마련한 기준 및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해 배정합니다.
- ⑦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해당하는 고위험투자신탁임을 확인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확인서")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⑧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인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⑨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와 제5조의2의 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혹은 투자일임회사

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⑩ 신탁회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여부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⑪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확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집합투자회사등이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⑫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금번 공모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청약수수료는 없습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구분	접수처	문의처	접수일시
KB증권(주)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KB증권(주)	☎ 02-6114-1827,1689	2024년 11월 08일(금) 09:00 ~ 2024년 11월 12일(화) 17:00

주1)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2) 수요예측 마감시간은 한국 시간 기준이며,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모든 수요예측 참가자는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 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제재금 또는 금전의 납부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고유재산에 한하여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약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

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이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 또는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⑪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⑫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의무보유확약 기간 동안 동 주식의 거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 이후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펀드만기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오니 기관투자자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⑬ 의무보유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⑭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 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하므로,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참여 방법을 인정합니다.

10) 수량배정 방법

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해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가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단, 금번 수요예측 후 배정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주식의 배정에 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배정결과 통보

수요예측 참여기관은 개별적으로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접속한 후 기관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의 업무관련 홈페이지(<https://work.kofia.or.kr>)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기관투자자에 배정된 수량에 대한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청약물량이 있는 경우 기관투자자에게 다시 배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요예측 참여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참여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 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모집(매출)의 절차

(1) 모집(매출)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매 체
수요예측 안내 공고	2024년 11월 08일(금)	인터넷 공고 (주1)
모집(매출)가액 확정 공고	2024년 11월 14일(목)	인터넷 공고(주2)
청약 공고	2024년 11월 18일(월)	인터넷 공고
배정 공고	2024년 11월 21일(목)	인터넷 공고 (주3)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4년 11월 08일(금)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의 홈페이지

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4년 11월 14일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bif.co.kr>)에 공고합니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합니다.
- (주3)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4년 11월 21일(목)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공동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의 홈페이지(<https://www1.kiwoom.com>) 및 대신증권(주)의 홈페이지(<https://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4)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4년 11월 21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주5)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 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 내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동시에 청약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공모부터는 복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도 금지

됨에 따라 본건 공모에서 일반청약자는 중복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중복청약 시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중복청약자 판별을 위한 일반청약자 종류별 식별정보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식별번호 외의 번호(여권번호 등)로 개설된 계좌의 경우 중복청약 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청약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중복여부 확인기준 식별정보
개인(내국인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
	투자등록번호 * 비거주자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일반청약자가 중복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되, 동일한 시간에 중복청약이 이루어지거나, 전산 등의 문제로 청약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i) 일반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순서, ii) 청약건수가 적은 회사 순서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 청약사무 취급처: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및 공동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 대신증권(주)의 본·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은 일반청약사무 취급처인 KB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대신증권(주) 본·지점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에 따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각 청약사무 취급처의 청약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 청약자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각 청약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주)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분	청약자격									
청약자격	KB증권 영업점 개설 계좌	청약개시일(초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 계좌 보유 고객								
	제휴은행 영업점 개설 계좌									
	KB증권 비대면 개설 계좌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 (별도 제한 없음)								
	제휴은행 비대면 개설 계좌									
최고 청약한도	■ 일반고객(100%): 청약한도의 100%									
	■ 우대고객(12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120%									
	■ 우대고객(15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150%									
	■ 우대고객(2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00%									
	■ 우대고객(25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50%									
	■ 우대고객(3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300%									
청약방법	■ HTS/MTS/홈페이지 청약									
	■ 지점 내방 청약									
	■ 유선청약(지점/고객센터)									
	■ ARS 청약									
	※ 일반고객의 경우 온라인 청약만 가능 (영업점(유선포함)/고객센터 청약 불가)									
	※ 단, 만 65세 이상 고객은 영업점(유선포함)/고객센터 청약 가능									
청약한도 우대기준	일반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청약한도의 100%, 우대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120%, 150%, 200%, 250% 또는 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일반</td> <td>100% 우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td> </tr> <tr> <td rowspan="3">우대</td> <td>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①, ②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프라이빗클럽 가입 및 유지 ② 공모주청약 전일까지 마이데이터 타사계좌 연동 및 유지 </td> </tr> <tr> <td>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①, ②, ③, ④, ⑤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상품 월 30만원 이상(정기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 포함(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정립식) (단, 발행어음 및 주식/ETF/브라질채권 등 적립식서비스 제외) - 정기대체 납입완료일 기준/직전 2개월(전월말기준) ② 전월말까지 증개형 ISA 계좌에 1백만원 이상 순납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③ 직전월말까지 KB국민은행 'KB증권 공모주 청약우대 1.5배 정기예금'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 able Plus 계좌 보유 동시 만족 ④ 직전월 3개월 주식약정 3천만원 이상 ⑤ 직전월 자산 평잔 3천만원 이상 </td> </tr> <tr> <td>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 ② 직전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③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상품 월 1백만원 이상 정기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 포함(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정립식) (단, 발행어음 및 주식/ETF/브라질채권 등 적립식서비스 제외) - 정기대체 납입완료일 기준/직전2개월(전월말기준) ④ 공모주청약 전일까지 증개형 ISA 계좌에 1천만원 이상 순납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일반	100% 우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우대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①, ②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프라이빗클럽 가입 및 유지 ② 공모주청약 전일까지 마이데이터 타사계좌 연동 및 유지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①, ②, ③, ④, ⑤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상품 월 30만원 이상(정기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 포함(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정립식) (단, 발행어음 및 주식/ETF/브라질채권 등 적립식서비스 제외) - 정기대체 납입완료일 기준/직전 2개월(전월말기준) ② 전월말까지 증개형 ISA 계좌에 1백만원 이상 순납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③ 직전월말까지 KB국민은행 'KB증권 공모주 청약우대 1.5배 정기예금'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 able Plus 계좌 보유 동시 만족 ④ 직전월 3개월 주식약정 3천만원 이상 ⑤ 직전월 자산 평잔 3천만원 이상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 ② 직전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③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상품 월 1백만원 이상 정기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 포함(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정립식) (단, 발행어음 및 주식/ETF/브라질채권 등 적립식서비스 제외) - 정기대체 납입완료일 기준/직전2개월(전월말기준) ④ 공모주청약 전일까지 증개형 ISA 계좌에 1천만원 이상 순납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구분	세부내용								
	일반	100% 우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우대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①, ②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프라이빗클럽 가입 및 유지 ② 공모주청약 전일까지 마이데이터 타사계좌 연동 및 유지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①, ②, ③, ④, ⑤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상품 월 30만원 이상(정기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 포함(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정립식) (단, 발행어음 및 주식/ETF/브라질채권 등 적립식서비스 제외) - 정기대체 납입완료일 기준/직전 2개월(전월말기준) ② 전월말까지 증개형 ISA 계좌에 1백만원 이상 순납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③ 직전월말까지 KB국민은행 'KB증권 공모주 청약우대 1.5배 정기예금'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 able Plus 계좌 보유 동시 만족 ④ 직전월 3개월 주식약정 3천만원 이상 ⑤ 직전월 자산 평잔 3천만원 이상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직전 3개월 주식약정 1억원 이상 ② 직전월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③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상품 월 1백만원 이상 정기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대체 및 은행이체 포함(임의식, 자유적립식, 정액정립식) (단, 발행어음 및 주식/ETF/브라질채권 등 적립식서비스 제외) - 정기대체 납입완료일 기준/직전2개월(전월말기준) ④ 공모주청약 전일까지 증개형 ISA 계좌에 1천만원 이상 순납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구분	청약자격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⑤ 직전월말까지 개인형 IRP 계좌에 1천만원 이상 순납입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⑥ 퇴직연금 가입법인(소속직원)		
	250%	KB스타클럽(MP/그랜드 등급) 고객			※ '12년 12월 3일 이전 가입법인 계약에 한함
		- 개인: 매월 10일 변경 등급 반영 / 법인: 매월 1일 변경 등급 반영			
		아래 ①, ②, ③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 공모주 청약 전일까지 증개형 ISA 계좌에 2천만원 이상 순납입			
		- 타 금융사 및 당사 기존 ISA계좌에서 이전한 금액 포함			
300%	※ 순납입 = 납입금액 - 출금금액				
	② 직전월 자산 평잔 3억원 이상 & 전월말 자산 3억원 이상 동시 만족(동시 만족)				
	- 자산: 국내/해외주식, CMA,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등 총자산(단, 신용공여 자산 제외)				
	③ KB스타클럽 (MP 등급) 고객				
	- Able Premier Members 고객은 매월 10일 KB스타클럽 그룹 등급 산정시 전월말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체크하여 WP 등급으로 특별 선정함(WP 등급 청약 우대기간: 당월 10일 ~ 익월 9일)				
주1) 개인/법인 고객 우대요건 동일 적용					
유통시장별 구분	유통시장별 구분없이 청약				
배정기준	■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 ■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는 5사6입 등 방법으로 잔여주식이 최소화하도록 배정하며, 필요시 추첨 또는 KB증권(주)가 인수할 수 있음				
청약수수료	구분	WP/MP/그랜드	베스트	패밀리, 법인(모든 등급)	
	오프라인 (지점/고객센터)	무료	4,000원		
	온라인 (HTS/MTS/홈페이지/ARS)		무료	1,500원	
	기타사항	- 경로자(만65세) 수수료 면제			
		- 기존 자문형 랩 '공모주서비스' 등록 계좌 수수료 면제			
- 개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는 able포인트로 납부 가능					
- 법인우수고객 수수료 면제					
청약증거금	청약증거금을 50%(모든 고객에 동일 적용)				

- 주1)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4년 11월 21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주2) 상기 청약한도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에 따른 투융자제한투자기부전용계좌(이하 "투융자전용계좌")를 통하여 본인 공모주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융자전용계좌 납입한도(1억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약증거금을 납입하실 수 있으며, 추가 납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투융자전용계좌 납입한도(1억원) 내에서만 추가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투융자전용계좌 내 본인 외의 다른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한도가 계산되며, 투융자전용계좌를 통하여 청약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를 통한 이중청약은 불가함)

[키움증권(주)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분	내용
청약자격	청약일까지 키움증권(주)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자 (단, 청약 2일차에 키움증권(주) 영업부에서 위탁계좌를 개설한 경우 청약이 제한됨)
청약한도	키움증권 금융상품 평가금액에 따라 우대 청약고객은 일반 청약고객 청약한도의 15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청약한도의 150% · 아래 3개 항목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충족하는 고객

청약 우대 여부	우대고객	① 청약신청 시작일 직전 1개월 기준 금융상품 평잔금액 2천만원 이상 (펀드/MMF, ELS, 랩, 일일형ISA(중개형 제외), RP, 채권(단, 외화 RP 제외)) ② 예탁자산잔고 - 청약신청 시작일 전일 직전 1개월 기준 예탁자산 평잔금액 1억원 이상 (예수금, 국내/해외 주식, 채권, CD, CP, 펀드, 국내/해외파생, FX마진, 신탁, CFD, ELS, RP) ③ 거래 약정 - 월 기준 주식 60억 이상(키워드림 가입고객은 10억 이상), 선물 400억 이상, 옵션 20억 이상, 주식선물 350억 이상 약정하여 청약신청 시작일 전일 기준 약정우대고객으로 선정된 고객	
	일반고객	· 일반청약한도의 100% · 청약 신청 시작일 직전 1개월 기준 금융상품(MMF,펀드,ELS,랩,ISA,RP,채권) 평가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고객 * 일부 상품의 경우 조기소진 시 당일 판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 외화RP 제외	
청약 수수료 징수	구분	공모주 청약 이용매체에 따라 청약 건당 아래의 표와 같이 청약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온라인(홈페이지,HTS,MTS,ARS 등)를 통한 청약	키움금융센터 및 영업부를 통한 청약
	우대고객	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
	일반고객	청약건당 2,000원	청약건당 5,000원
· 청약수수료는 배정여부와 관계없이 환불금 입금 시 징수됩니다.(미배정시에는 환불)			

주) 상기 청약한도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전용계좌(이하 "투융자전용계좌")를 통하여 본인 공모주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융자전용계좌 납입한도(1억원, 현금입금만 가능) 내에서만 추가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투융자전용계좌 내 본건 외의 다른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한도가 계산되며, 투융자전용계좌를 통하여 청약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를 통한 이중청약은 불가함, 의무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며 분리과세 세율은 15.4%)

【대신증권(주)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분	내용	
청약자격	오프라인 청약	- 청약기간 내 정상 계좌 보유중인 고객 중 프라임(정기등급) 이상 (프라임 등급(정기등급) :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천만원 이상) * 오프라인 청약 : 영업점 내방 및 유선청약
	온라인 청약	- 청약개시일 현재 계좌 보유중인 모든 고객 * 온라인 청약 : 홈페이지, HTS, MTS, ARS
청약한도 우대기준	청약 한도	자격 요건
	우대 (200%)	① 고객등급 HNW등급 이상 개인고객 (HNW 등급(정기등급) : 직전 분기 자산 평잔 1억원 이상 개인고객) ② 연금 저축(펀드) 계좌 직전 월 말잔 4백만원(CIF기준)이상(예수금 제외) ③ 펀드 평가금액 직전 월 말잔 기준 5천만원(CIF기준) 이상 (단, 로보펀드의 경우 1천만원 이상) ④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직전월 말잔 4백만원(CIF기준)이상 (예수금 제외) ⑤ 타사대체 순입고 1천만원 이상 (직전월 포함 3개월 합산) ⑥ 국내 및 해외주식 거래 1천만원 이상 (직전월 포함 3개월 평균) ⑦ 중개형 ISA계좌 순납입 1천만원 이상 고객 (순납입 = 총입금 - 총출금)
※ 우대고객 중 오프라인 청약 고객은 연금보유고객이라도 기본 청약자격(프라임등급)이상 충족 할 것		
유의사항 (온/오프라인 동일)	청약기간 내 정상 계좌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 한하여 청약 가능	

청약수수료	(지점/고객센터)	면제	3,000원
	온라인 (HTS/MTS/홈페이지/ARS)		2,000원
	기타사항	- 공모주 미배정 고객 청약수수료 면제 - 법인고객 청약수수료 면제	

- 주1) 고객 정기등급 산출 방법(연4회)
 - 3월, 6월, 9월, 12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다음달 첫 영업일부터 적용
- 주2) 연금보유고객 (CIF 기준)
 - 연금저축계좌(직전월 말잔 기준 펀드잔고 4백만원 이상)
 - 연금저축펀드(직전월 말잔 기준 4백만원 이상)
 - 연금저축계좌와 연금저축펀드 동시 보유고객은 연금저축계좌 펀드잔고와 연금저축펀드 합산 400만원 이상
- 주3) 펀드보유고객 (CIF 기준)
 - 로보펀드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펀드 중 당사가 지정한 펀드
 - 펀드 평가금액 산정 시 예수금 및 연금펀드 제외
 - 로보펀드 또는 펀드 평가금액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우대 적용
- 주4) 개인형 퇴직 연금(IRP) 보유 고객 (CIF기준)
 - 개인형퇴직연금(IRP) 보유 고객(직전월 말잔 기준 4백만원 이상)
- 주5) 중개형 ISA 계좌 보유고객
청약일 직전월 말잔(정상계좌에 한함)
- 주6)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추가납입"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주7) 금번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에 있어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 공동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 및 대신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KB증권(주), 키움증권(주), 대신증권(주)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KB증권(주), 키움증권(주), 대신증권(주)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KB증권(주)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을]

구 분	일반투자자(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 증거금률
KB증권(주)	8,571,428주	주1)	50%

주1) KB증권(주) 일반청약자의 최고청약한도는 KB증권(주)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00% 우대고객은 2,800,000주의 청약한도, 120% 우대고객은 3,360,000주의 청약한도, 150% 우대고객은 4,200,000주의 청약한도, 200% 우대고객은 5,600,000주의 청약한도, 250% 우대고객은 7,000,000주의 청약한도, 300% 우대고객은 8,400,000주의 청약한도가 적용됩니다.

구 분		청약한도
일반	100%	2,800,000주
우대	120%	3,360,000주
	150%	4,200,000주
	200%	5,600,000주
	250%	7,000,000주
	300%	8,400,000주

[KB증권(주)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1,000주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2,000주
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5,000주
100,000주 초과 ~ 500,000주 이하	10,000주
500,000주 초과시	20,000주

공동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

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키움증권(주)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을】

구 분	일반투자자(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 증거금을
키움증권(주)	3,571,429주	주1)	50%

주1) 키움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2,000,000주이나 키움증권(주)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3,000,000주(15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키움증권(주)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1,000주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5,000주
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10,000주
100,000주 초과 ~ 500,000주 이하	50,000주
500,000주 초과 ~ 1,000,000주 이하	100,000주
1,000,000주 초과시	500,000주

공동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을】

구 분	일반투자자(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 증거금을
대신증권(주)	2,142,857주	주1)	50%

주1) 대신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2,000,000주(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000,000주(100%)

주2) 대신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률은 50%입니다.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마. 모집(매출)의 절차 - (2) 청약방법 -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증권(주)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1,000주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2,000주
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5,000주
100,000주 초과 ~ 500,000주 이하	10,000주
500,000주 초과 ~ 1,000,000주 이하	20,000주
1,000,000주 초과시	50,000주

5)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4년 11월 18일(월) ~ 2024년 11월 19일(화) 10:00~16: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하단 기업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종목청약 > 로그인 후 청약)에서 접수 받으며, KB증권(주)의 본·지점 및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4년 11월 21일(목) 08:00~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의 본·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또는 추가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금번 공모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청약수수료는 없습니다.

6)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2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 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약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기타 본 건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②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3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④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⑤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7)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행할 수 있으니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약결과 배정방법

청약 결과 모집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모집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와 공동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 대신증권(주) 및 발행회사인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용자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1) 공모주식 배정비율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용자회사 주식총액인수계약서】

제 5 조 (배정)

- (1) 기관투자자에게 총 공모주식의 40%(9,523,810주)를 배정한다.
- (2) 일반청약자에게 총 공모주식의 60%(14,285,714주)를 배정한다.
- (3)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다.
- (4) 기관투자자의 청약주식 수가 본조에 따른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정주식 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미청약물량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고, 일반청약자 배정 이후에도 잔여 미청약물량이 있는 경우 기관투자자에게 다시 배정할 수 있으며 이후의 잔여 기관투자자 미청약물량은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각 인수단

구성원이 개별채무로 인수한다.

(5)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제4조 제7항에 기재된 청약취급처별 일반청약 취급주식수에 대하여 각 청약취급처가 각자 실시한다.

(6) 청약취급처를 통하여 접수된 각 청약취급처별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제4조 제7항에 정한 각 청약사무취급처별 일반청약자 배정주식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각 청약취급처별 일반청약자의 청약취급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각 청약취급처별로 일반청약자의 청약분의 배정 결과 발생하는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5사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배정한다.

(7) 각 청약취급처를 통하여 접수된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제2항 일반청약자 배정수량 또는 제4조 제7항에서 정하는 각 청약취급처의 일반청약 취급주식수에 미달되는 경우 해당 인수단 구성원은 해당 미청약물량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청약취급처 중 어느 하나가 접수한 일반청약 주식수가 해당 인수단 구성원의 제4조 제7항에 따른 일반청약 취급주식수 대비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미달 금액이 발생한 인수단 구성원이 개별채무로 인수한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 금번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에 있어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 결과 발생하는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 계약서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④ 본 건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으며,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에게 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24년 11월 21일(목) 일반청약사무처인 KB증권(주)의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키움증권(주) 홈페이지(<https://www1.kiwoom.com>), 대신증권(주) 홈페이지(<https://www.daishi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4)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와 공동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 및 대신증권(주)는 청약자가 실명자임을 확인한 후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투자설명서 교부 사실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인 전문투자자, 수령거부 의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한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 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기타 전문가 등은 제외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와 공동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 및 대신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p> <p>제 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p> <p>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 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p>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 의무 등)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서(제안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 및 법 제249조의4제2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와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 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①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②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한 방법으로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KB증권(주)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청약방법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지점 내방 청약	책자 형태로 투자설명서 교부받은 후 내점 청약
HTS/MTS/ 홈페이지 청약	HTS/MTS/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청약화면에서 투자설명서 교부받은 후 청약
지점/고객센터 유선청약 ARS 청약	본·지점 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 교부받은 후 청약 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투자설명서 교부받은 후 청약 E-mail로 투자설명서 교부 받은 후 청약

(주1) 지점 내방 청약

금번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KB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시는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청약에 하셔야 합니다.

주2) HTS/MTS/홈페이지 청약

KB증권(주)의 HTS, MT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3) 지점/고객센터 유선청약 및 ARS

KB증권(주)에서 ARS나 유선 청약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만 청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청약 이전에 **KB증권(주)** 홈페이지(<https://www.kbsec.com> : 인터넷뱅킹 →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에서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거나 **KB증권** 본·지점에 내방하여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으며, **KB증권(주)**에 등록되어 있는 E-mail을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으며, 지점에 내방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E-mail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투자자는 유선으로 반드시 투자설명서 교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와같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투자자는 **KB증권(주)** 지점/고객센터로 유선청약 또는 ARS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주)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 분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기관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일반청약자	<p>① 교부장소 : 키움증권(주) 영업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96 TP Tower 4층)</p> <p>② 교부일시 : 청약기간내 (2024년 11월 18일 ~ 11월 19일)</p> <p>③ 교부방법 : 본 주식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를 교부하는 방법, 또는 공동주관회사 홈페이지와 HTS(Home Trading System), MTS(Mobile Trading System)를 통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p> <p>(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p> <p>1) 공동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문서에 의한 사전 교부</p> <p>공동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은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이후 최종 공모가격이 확정된 정정신고서가 공시된 이후 투자설명서를 홈페이지(www.kiwoom.com)에 게시할 예정이며 투자자들은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방식으로 사전에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약시에는 아래 기재된 '2) 청약 채널별 청약시 투자설명서 교부'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p> <p>금번 공모주 청약시 일반청약자들은 상기와 같은 방식을 통해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p> <p>2) 청약 채널별 청약시 투자설명서 교부</p> <p>① HTS(Home Trading System)와 MTS(Mobile Trading System) 및 홈페이지 청약</p> <p>공동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의 HTS인 영웅문 또는 MTS인 영웅문S#,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p>

구 분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p>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의 HTS인 영웅문에서는 온라인업무 → 청약(공모주/공모채권/실권주) → 청약입력/취소, MTS 영웅문S#에서는 국내업무 → 공모주 → 청약신청, 홈페이지(www.kiwoom.com)에서는 전체메뉴 → banking/업무 → 권리/청약 → 공모주청약에서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셔야만 청약이 진행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p> <p>② 키움금융센터 및 ARS 청약</p> <p>공동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의 키움금융센터(1544-9000) 및 ARS(1544-9900)를 통해 청약 할 경우에는 키움증권(주)의 HTS인 영웅문 또는 MTS인 영웅문S#,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신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키움금융센터(1544-9000) 또는 ARS(1544-9900)를 통해 투자설명서 거부를 하신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p> <p>③ 본사 영업부 내방 청약</p> <p>본 공모의 청약취급처인 키움증권(주) 영업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96 TP Tower 4층)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교부시는 투자설명서 교부 희망 또는 거부 여부를 확인하고 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p> <p>(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 영업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96 TP Tower 4층)에 내방하시어, 청약신청서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p>

[대신증권(주)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 분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기관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구분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일반청약자	<p>1), 2)와 3)을 병행</p> <p>1) 본 공모의 청약취급처인 대신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점 내방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의 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신증권(주)본·지점에 내방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p> <p>2) 대신증권(주)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① CYBOS5 이용시 4727 청약약정 승인신청을 한 후 온라인서비스 >공모주청약>4778 공모주 청약으로 청약을 진행하며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지정한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확인해야만 투자설명서가 교부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홈페이지 이용시 청약약정승인신청을 한후 인터넷뱅킹>청약>공모주청약신청의 절차로 진행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고, 지정한 전자매체에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해야만 투자설명서가 교부되며 청약이 가능합니다.</p> <p>3) 대신증권(주) 본지점에서 이메일로 교부(유선청약시)유선청약은 대신증권(주) 본지점에 내방하여 유선청약 약정을 하신 고객에게 가능합니다. 유선으로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나타내야 하며 수령시 대신증권(주) 이메일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발송하여 수신확인 후 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령거부의 경우에는 대신증권(주) 직원에게 수령거부의사를통해 직원이 수령거부에 표시하고 위험고지를 한 후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p>

(5)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4년 11월 21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 구성원이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4년 11월 21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4년 11월 21일 08:00~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4년 11월 21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 구성원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2024년 11월 21일)에 발행회사가 지정한 주금납입처(농협은행 본점영업부)에 납입합니다.

(6)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부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회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7) 기타의 사항

① 신주의 배당기산일

금번 공모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4년 01월 01일입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증자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③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은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인수인의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주)와 공동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 및 대신증권(주)는 총액인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⑥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1조에 의하여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단위 : 주, 원, %)

인수인		인수주식의 수량	인수금액 (원)	비율	인수조건
명칭	주소				
KB증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14,285,714주	119,999,997,600원	60.00%	총액인수
키움증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5,952,382주	50,000,008,800원	25.00%	총액인수
대신증권(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3,571,428주	29,999,995,200원	15.00%	총액인수
합계		23,809,524주	200,000,001,600원	100.00%	-

(주1) 인수금액은 공모금액인 8,4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2)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 공모에는 별도의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및 별도의 인수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원, %)

구분	인수인	인수주식수	인수금액	인수비율	인수수수료
인수수수료 (총 공모금액의 1.0%)	KB증권 주식회사	14,285,714주	119,999,997,600원	60.00%	1,199,999,976원
	키움증권 주식회사	5,952,382주	50,000,008,800원	25.00%	500,000,088원
	대신증권 주식회사	3,571,428주	29,999,995,200원	15.00%	299,999,952원
	합 계	23,809,524주	200,000,001,600원	100.00%	2,000,000,016원
구분	대표주관회사	총공모금액		사무주관수수료	
사무주관수수료 (총 공모금액의 0.3%)	KB증권 주식회사	200,000,001,600원		600,000,000원	
	합 계	200,000,001,600원		600,000,000원	

(주1) 인수수수료: 인수계약에 의거한 기본 인수대가는 총 공모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행회사와 매출주주가 각 인수단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인수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사무주관수수료: 발행회사는 사무주관수수료로서 총 공모금액의 0.3%(10원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지급합니다.

(주3) 성과수수료: 발행회사는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 전부 또는 일부에게 총 신규 공모금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주식총액인수계약서】

제 9 조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1)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 구성원에게 본 계약서의 체결일, 청약기간 및 주금납입기일 각 일자에 다음 각 호의1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1. 발행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공모서류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재산을 소유, 운영하고 사업을 영위하며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 및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2. 발행회사의 이사회는 2024년 10월 7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 주식의 공모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이후 본 주식의 공모조건 변경, 공모의 취소 또는 공모와 관련하여 추가로 어떠한 내용의 결의를 하지 않았다. 또한 본 주식의 공모와 관련하여 소송, 경영권 다툼 등 어떠한 법률적 분쟁이 없음을 확인한다.

3. 발행회사가 현재까지 발행한 보통주식 113,760,231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행되었다.

4. 발행회사가 인수단 구성원에게 제공한 발행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포함)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위 재무제표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황을 사실대로 기술하였다.

5. 증권신고서는 청약 기간 이전에 효력이 발생하였고, 효력이 발생한 이후 금융위에서 증권신고서에 대한 어떠한 정정지시 또는 그러한 지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

6.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투자자들이 본 주식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발행회사, 관계인 및 본 주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기재되거나 누락되지 않았다. 발행회사가 본 주식의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단 구성원에게 제공한 자료와 정보에도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기재되거나 누락되지 않았다.

7. 발행회사가 본 주식의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의 자료는 관련 법령, 규정, 준칙, 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

8. 발행회사가 인수단 구성원에게 이미 공개한 내용 외에는 발행회사의 최근 재무제표 기준일인 2024년 6월 30일 이후 발행회사의 수익, 운영결과, 자금, 재무 등의 경영상태 및 예상과 관련하여 중대하면서 불리한 어떠한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9. 발행회사의 이사회는 본 계약의 체결과 이행 및 본 주식의 공모를 승인하였고, 발행회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이 발행회사의 정관이나 발행회사가 일방 당사자인 다른 계약 및 협약 등의 어느 조항과도 상충되지 않으며 본 계약에 언급된 조항 외 추가로 정부와 공공기관, 유관기관의 승인 기타 제3자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다.

(2) 발행회사는 본조 제1항의 보장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를 위반하여 인수단과 그 임직원에게 발생한 손해(실제로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함)를 배상한다.

(3) 증권신고서 기타 발행회사가 그 진실성을 보장한 서류(이하“ 제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되었음을 인수단이 알게된 때에는 인수단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제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수정, 추가, 삭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인수단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3영업일내 납득할만한 추가설명이나 자료제출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인수단은 발행회사가 제반 서류의 보완을 완료할 때까지 본 주식 인수 의무의 이행을 연기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기 제출기간은 요청 받은 자료의 성격이나 요청시점의 업무진행 상황 등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 10 조 (발행회사의 확약)

- (1) 발행회사는 인수단의 사전동의 없이 증권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정정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고, 본 주식의 공모가 완료될 때까지 증권신고서의 수정을 필요로 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발행회사는 본 계약일로부터 본 주식이 상장된 이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 의한 본 주식을 인수단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는다.
- (3) 발행회사는 본조 제2항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대표주관회사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발행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한다.
- (4) 발행회사는 인수단이 본 주식의 공모를 위한 청약을 권유하는데 필요하여 요청하는 물량의 투자설명서 및 증권신고서를 인수단에게 제공한다.
- (5) 발행회사는 본 주식을 발행한 이후 2년 동안 금융위 또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발행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또는 투자보고서를 위 제출 후 3일 내에 대표주관회사에도 제출한다. 단, 금융위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는 경우에는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 (6) 발행회사는 본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때까지 상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외에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예정 상장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다.
- (7) 발행회사는 제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증권의 발행 및 계좌입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 (8) 발행회사는 발행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대표주관회사에게 통보한다.
- (9) 발행회사는 본조의 확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여 인수단 및 그 임직원에게 발생한 손해(실제로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 포함)를 배상한다.

제 11 조 (인수단 구성원의 보장 및 확약)

- (1) 각 인수단 구성원은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내용 중 해당 인수단 구성원이 제공한 본 계약에 의한 인수업무에 관한 정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음을 보장한다.
- (2) 각 인수단 구성원은 본 주식을 투자자에게 모집하는 과정에 발행회사가 작성한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여 청약을 권유한다.
- (3) 각 인수단 구성원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단, (a) 일반에 널리 공개된 자료 및 정보, (b) 해당 인수단 구성원이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취득한 자료 및 정보, (c) 해당 인수단 구성원의 피고용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개발한 자료 및 정보는 제외)을 제3자(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위 내용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해당 인수단 구성원이 사용하거나

선임한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전문가 집단은 제외)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로 이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법령, 법원의 제출명령 및 감독기관의 제출 요청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인수단 구성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간 내에 지체 없이 이를 발행회사에게 통지해야 하고, 자료의 비밀 유지 또는 보안을 위해 발행회사가 요청하거나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그 공개의 범위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최소한이 되도록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 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 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7호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마목에 따라 금지되는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인수행위로서,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7호는 주관회사의 업무 수행 금지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바,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는 "기업공개"를 "주권비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로 정의하고, 그 "공모"에 관한 정의 조항인 같은 조 제2호 단서 다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행하는 공모"를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7호에 따른 주관회사의 업무 수행 금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인 회사의 금번 기업공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초과배정옵션

회사는 금번 공모에서는 "초과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의 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 환매청구권” 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 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7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7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5)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회사는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6) 의무보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사모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주식을 발행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에 사모로 발행한 주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 주주는 존재하지 않으나, 공모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전체 주주가 다음과 같이 의무보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주주현황 및 상장 후 의무보유 예정안]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단위: 주, %)

구분	보유주식 수	지분율	상장 후 의무보유기간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삼성SOC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 자산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은행의 지 위에서)	19,512,195	17.15%	6개월
주식회사 국민은행	14,339,503	12.61%	6개월
국민연금공단	10,190,655	8.96%	6개월
공무원연금공단	6,793,771	5.97%	6개월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6,793,771	5.97%	6개월
DB손해보험 주식회사	6,793,771	5.97%	6개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6,793,771	5.97%	6개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6,793,771	5.97%	6개월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	6,793,771	5.97%	6개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4,779,847	4.20%	3개월
중소기업은행 ("KB인프라성장추구일반사모특별자 산투자신탁"의 신탁은행의 지위에서)	3,658,533	3.22%	6개월
농협은행 주식회사	3,396,895	2.99%	6개월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3,396,895	2.99%	6개월

DB생명보험 주식회사	2,717,521	2.39%	6개월
키움증권 주식회사	2,439,021	2.14%	6개월
푸본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	2,038,145	1.79%	6개월
대한소방공제회	1,911,953	1.68%	3개월
주식회사 경남은행	1,358,769	1.19%	6개월
주식회사 부산은행	1,358,769	1.19%	6개월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	1,219,512	1.07%	6개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679,392	0.60%	6개월
합계	113,760,231	100.00%	-

주) 금번 공모 시 구주매출에 참여하는 주주는 매출 후 잔여수량에 대하여 전량 자발적 의무보유 예정이며, 구주매출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는 보유수량 전량에 대하여 자발적 의무보유 예정입니다.

(출처: 회사 제시)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금번 일반공모를 통하여 모집(매출)될 회사의 주식은 2024년 11월 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신청 후 신규 상장되어 영속적으로 거래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주는 상장 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상승하거나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도로 교통량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하거나, 시장참여자의 부족으로 인해 상장 후 시장에서의 거래가 예상보다 활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당 주식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8(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에 따르면,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금번 공모 이후 유가증권시장의 신규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 지체 없이 상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1조 제3항 (투자회사주권의 신규상장요건)]

상장요건 (신규상장신청일 기준)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충족여부
1. 금융위원회 등록 - 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 제 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을 것	2009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 등록	충족
2. 기업규모 - 상장신청일 현재 투자회사의 자본금이 50 억원 이상일 것	자본금: 2024년 상반기말 기준 약 7,531억원	충족
3. 주식분산요건 - 투자회사가 모집·매출한 주식이 상장신 청일 현재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5(「사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 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상이고, 주주 수가 50명 이상일 것	공모예정주식수: 23,809,524주 상장예정주식수: 127,307,452주	미충족 (공모 후 충족 가능) (주2)
4. 소송 등 투자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을 것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 없음	충족
5. 주식양도제한 -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법령 · 정관 등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 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 관련 조항: 해당사항 없음	충족

주1)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회사는 상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중 주식분산 요건을 제외하고 다
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주2) 회사는 금번 일반공모를 통해 주식의 분산 요건(주주수 50명 이상,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수가 발행주
식총수의 10% 이상)을 충족하고자 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54837

주)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는 이하 "회사"라고 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에 따라 2006년 1월 설립된 투자회사로,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법인의 주식 및 대출채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회사의 주요 연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회사의 연혁

연 월	주요내용
2006. 01	발해인프라투자회사 설립
2006. 0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감독원에 투자회사로 등록
2006. 07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 금융약정 체결(후순위대출 1,562억원, 보통주 755억원)
2006. 07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주식매매계약 체결(5,704억원)
2006. 10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금융약정 체결(후순위대출 306억원, 보통주 203억원)
2007. 11	수석-호평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금융약정 체결(후순위대출 516억원, 보통주 475억원)
2007. 11	군장항 잠화부두(2선석) 민간투자사업 금융약정 체결(후순위대출 89억원, 보통주 55억원)
2007. 12	누적설정액 5,000억원 달성
2008. 11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사업 자금재조달 금융약정 체결(후순위대출 2,444억원)
2009. 0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을 제182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2009. 11	용마터널 건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금융약정 체결(후순위대출 280억원), 주식매매계약 체결(280억원)
2011. 09	수석-호평간 도로 사업 운영개시
2011. 12	수석-호평간 도로 사업 출자자 지분 변경(발해인프라투자회사 100%)
2012. 04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Exit
2012. 06	누적 설정액 1조원 달성
2012. 12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금융약정 체결(후순위대출 608억원, 보통주 234억원)
2013. 01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금융약정 체결(후순위대출 240억원, 보통주 200억원)

2014. 11	용마터널 사업 운영 개시
2017. 03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 Exit
2018. 03	군장항 잠화부두(2선석) 민간투자사업 Exit
2018. 10	산성터널 사업 운영개시
2020. 09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사업 운영개시
2020. 12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사업재구조화(통행료 인하 및 요금 차액 보전)
2021. 06	수석-호평간도로 선순위 자금재조달(선순위 금리 연 2.77% 고정 외)
2021. 12	산성터널 사업 자금재조달(선순위 금리 연 3.02% 고정 외)
2022. 07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사명 변경
2024. 07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IPO 가이드라인 주주총회 승인
2024. 08	정관 일부 개정
2024. 08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사업 자금재조달 및 자산거래계약 체결(후순위대출 874억원, 보통주 276억원)

나.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본점소재지	변경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0층, 41층 (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2018. 10 ~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25층 (여의도동, 굿모닝증권타워)	설립 ~ 2018. 10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일로부터 회사 정관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따른 해산일까지입니다.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정관 상 존립기간 및 해산 사유]

구분	내용
제57조(해산)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주총회의 의결 2.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금융위원회로부터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6. 회사의 모든 투자자산의 매각, 회수 또는 처분

구분	내용
	7. 기타 관계법령에서 이 회사의 해산사유로 정한 사유 ② 제1항의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다만,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는 경우 동 개정규정에 따른다)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2조(존립기간)	이 회사의 존립기간은 이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시까지로 한다.

자료: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정관(2024. 08. 14 개정)

라. 주주 및 지분현황

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주, %)

주주명	주식의 종류	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 후 예상 (주2)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삼성SOC코어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은행의 지위에서)	보통주	19,512,195	17.15%	19,512,195	15.33%
주식회사 국민은행	보통주	14,339,503	12.61%	14,339,503	11.26%
국민연금공단	보통주	10,190,655	8.96%	8,603,702	6.76%
공무원연금공단	보통주	6,793,771	5.97%	5,735,804	4.51%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	6,793,771	5.97%	5,735,804	4.51%
DB손해보험 주식회사	보통주	6,793,771	5.97%	5,735,804	4.5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보통주	6,793,771	5.97%	5,735,804	4.5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	6,793,771	5.97%	5,735,804	4.51%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	6,793,771	5.97%	5,735,804	4.5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	4,779,847	4.20%	4,779,847	3.75%
중소기업은행 ("KB인프라성장추구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의 신탁은행의 지위에서)	보통주	3,658,533	3.22%	3,658,533	2.87%
농협은행 주식회사	보통주	3,396,895	2.99%	2,867,909	2.25%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	3,396,895	2.99%	2,867,909	2.25%
DB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	2,717,521	2.39%	2,294,331	1.80%
키움증권 주식회사	보통주	2,439,021	2.14%	2,439,021	1.92%
푸본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	2,038,145	1.79%	1,720,752	1.35%
대한소방공제회	보통주	1,911,953	1.68%	1,911,953	1.50%
주식회사 경남은행	보통주	1,358,769	1.19%	1,147,172	0.90%
주식회사 부산은행	보통주	1,358,769	1.19%	1,147,172	0.90%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	보통주	1,219,512	1.07%	1,219,512	0.96%

주주명	주식의 종류	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 후 예상 (주2)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보통주	679,392	0.60%	573,593	0.45%
[IPO] 기관투자자 (주1)	보통주	-	-	9,523,810	7.48%
[IPO] 일반투자자 (주1)	보통주	-	-	14,285,714	11.22%
합계	보통주	113,760,231	100.00%	127,307,452	100.00%

(주1) 회사는 금번 공모를 통하여 보통주 23,809,524주를 공모할 계획이나 수요예측 및 청약 결과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기존 주주들의 공모 후 예상 주식 수 및 지분율은 금번 공모 시 구주매출에 참여하는 주주의 경우 해당 수량이 차감된 잔량 기준입니다.

마. 상호의 변경

회사의 설립일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 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호	변경 사항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2022. 07 ~ 현재
발해인프라투자회사	설립 ~ 2022. 07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보고일	제목	내용
2018-02-27	집합투자기구 등록(변경등록)신청서	-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선임
2021-01-24	투자회사 정관 변경 등록 신고	- 제62조(존립기간) 일부 개정 - 제48조(업무의 위탁 및 보수지급) 일부 개정
2021-02-08	투자회사의 임원 선임에 따른 변경사항 보고	-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중임
2021-07-30	투자회사 정관 변경 등록 신고	- 제48조(여유자금의 운용) 일부 개정 - 제49조(자금의 차입 등) 일부 개정
2021-11-22	투자회사 정관 변경 등록 신고	- 제49조의2(사채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신설
2022-03-15	투자회사 정관 변경 등록 신고	- 제13조(주식의 상당 등) 일부 개정
2022-04-12	투자회사의 임원 선임에 따른 변경사항 보고	- 감독이사 변경
2022-05-30	투자회사 운용역 변경 등 보고	- 투자회사 운용역 변경 보고
2022-08-08	투자회사 사명, 정관 변경 등록 및 임원 선임에 따른 변경사항 보고	- 사명변경 - 정관 제 1조(상호 및 종류), 제2조(목적), 제5조(공고방법) 등 일부 개정 -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감독이사 신규선임
2024-02-08	투자회사 임원 중임 등 보고	- 감독이사 중임
2024-09-05	투자회사 정관 변경 등록	- 제18조(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 등), 제20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일부 개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 회사의 존립기간 :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일로부터 회사 정관에서 규정하는 아래 경우에 따른 해산일까지입니다.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주주총회의 의결
2.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금융위원회로부터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6. 회사의 모든 투자자산의 매각· 회수 또는 처분
7. 기타 관계법령에서 이 회사의 해산사유로 정한 사유

위의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다만,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는 경우 동 개정규정에 따른다)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사의 존립기간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저축만기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KB자산운용(주)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회사의 적법한 집합투자업자로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회사명	KB자산운용 주식회사
영문명	KB Asset Management Co., Ltd.
대표자	김영성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116- 81- 33085
본사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18,40,41층 (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본사 전화번호	02- 2167- 8200
본사 팩스번호	02- 3671- 4172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www.kbam.co.kr
결산월	12 월
업종명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회사설립일	1988년 04월 28일
임직원수	380명 (2024년 1월 1일 기준)
	1) 1988년 04월 28일 국민투자자문 설립(모회사 국민투자신탁 지분 100%) 2) 1992년 12월 08일 국민투자신탁에서 주택은행으로 대주주 변경 3) 1992년 12월 09일 주은투자자문주식회사 회사명 변경 4) 1997년 08월 28일 투자신탁운용업개시, 주은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상호변경 5) 2000년 01월 11일 ING Insurance International의 지분참여 6) 2002년 06월 10일 국민투자신탁운용(주) 회사명 변경

구분	내용
회사연혁	7) 2004년 04월 29일 KB자산운용(주) 회사명 변경 8) 2008년 09월 29일 국민은행, ING에서 KB금융지주로 대주주 변경 9) 2012년 03월 국내주식형펀드 5조원 돌파 10) 2013년 01월 총 수탁고 30조원 돌파 11) 2013년 04월 국내주식형펀드 7조원 돌파 12) 2014년 06월 인프라펀드 투자약정고 5조 돌파 13) 2015년 01월 공모형 퇴직연금펀드 수탁고 1위 14) 2015년 04월 총 수탁고 40조원 돌파 15) 2015년 10월 공모형 퇴직연금펀드 수탁고 2조원 돌파 16) 2016년 02월 총 수탁고 50조원 돌파 17) 2017년 09월 29일 싱가포르 법인 설립 18) 2018년 06월 대체투자부문 운용자산 10조원 돌파 19) 2018년 08월 21일 상해법인 설립 20) 2019년 09월 14일 베트남 사무소 설립 21) 2020년 0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체투자 주간운용사 선정 22) 2020년 06월 운용자산 80조 돌파 23) 2020년 07월 ESG관련 인프라펀드 2조원 돌파 24) 2021년 02월 운용자산 100조 돌파 25) 2022년 06월 대체투자부문 운용자산 20조원 돌파 26) 2022년 10월 KB스타리츠 상장 27) 2024년 05월 운용자산 140조 돌파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KB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특별자산집합투자업(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운용업무에 국한하지 아니함) 인가를 받았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한 허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을 2인 이상 상근 임직원으로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회사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 명단입니다.

[운용전문인력 및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특별자산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성훈	1973	상무보	17개	60,370억원	-	-	-	-	17년 10개월
이주현	1979	선임부장	17개	60,370억원	-	-	-	-	8년 3개월

주1) 운용전문인력이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순자산 기준) 및 경력사항은 2024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회사 성과 포함)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운용전문인력의 이력]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김성훈	- 2006년 ~ 현재 KB자산운용 인프라운용본부 - 1998년 ~ 2006년 롯데건설 SOC사업팀
이주현	- 2016년 ~ 현재 KB자산운용 인프라운용본부 - 2007년 ~ 2016년 포스코건설 에너지사업본부 - 2004년 ~ 2007년 삼안

[최근 3개년 운용인력 변동현황]

구분	운용인력	
	책임	부책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김성훈 상무보	이주현 선임부장
2023년	김성훈 상무보	이주현 선임부장
2022년	김형윤 전무	김성훈 상무보
2021년	김형윤 전무	김성훈 상무보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투자회사, 폐쇄형(환매금지형), 추가설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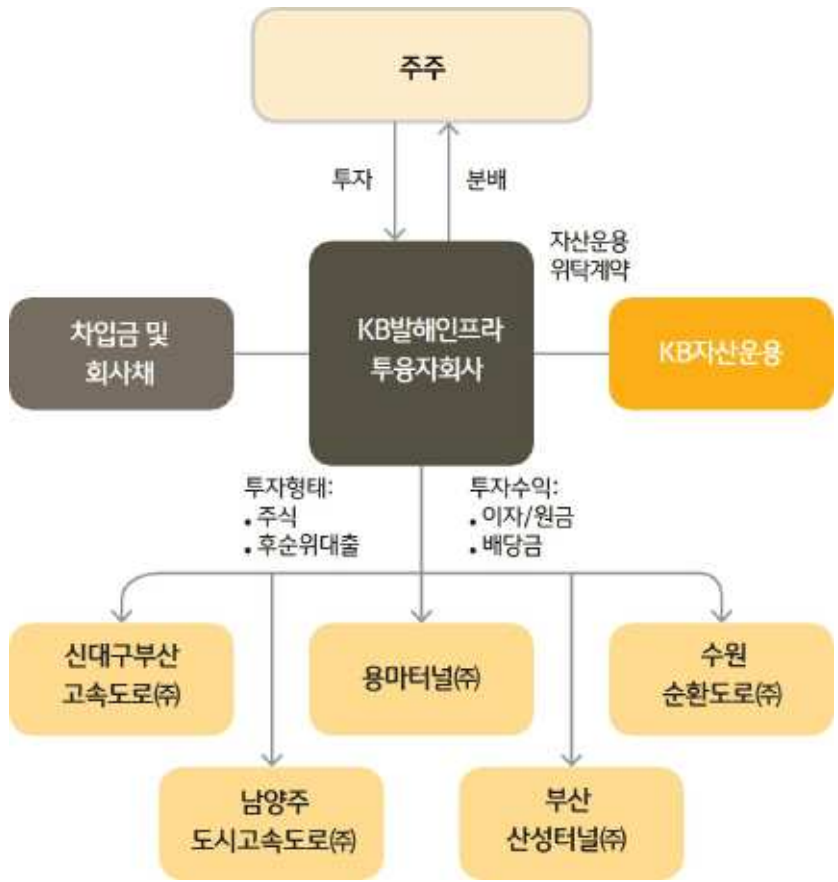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자 동법 제9조 제18항 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며, 민간투자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입니다.

회사는 2006년 1월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동법 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보유자산)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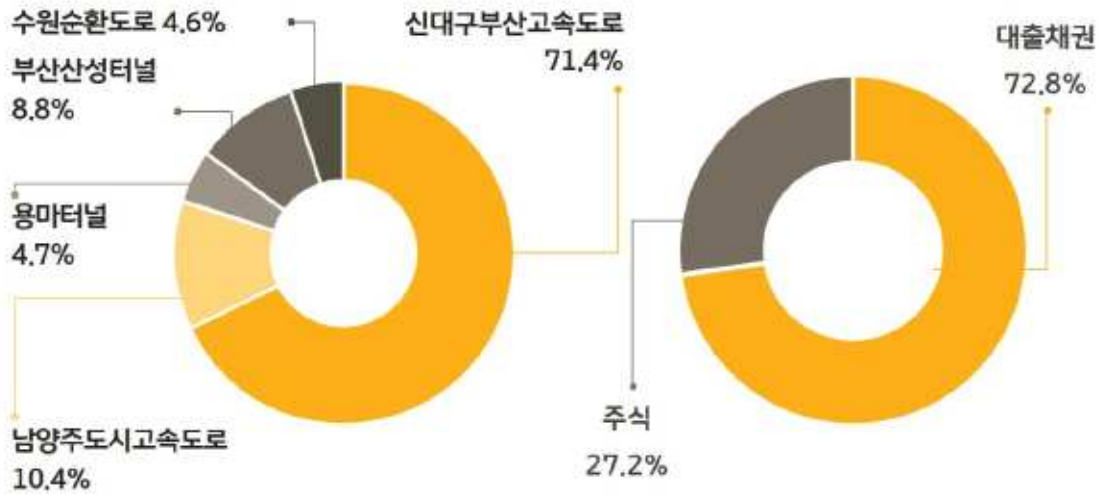
회사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인 회사의 주식 외에 별도의 종류(Class)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의 회원인 국내 증권사에서 유가증권 매매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로 인하여 증권사가 부과하는 매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따라 도입된 전자증권제도의 적용을 받아 실물증권의 발행없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증권을 등록·발행하여야 하고, 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 증권에 관한 모든 사무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회사는 2024년 8월 14일 회사 정관을 전자증권법의 규정 내용이 반영되도록 개정하였고, 동법이 요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 회사의 주주들에게 전자증권제도의 도입과 그로 인한 영향을 통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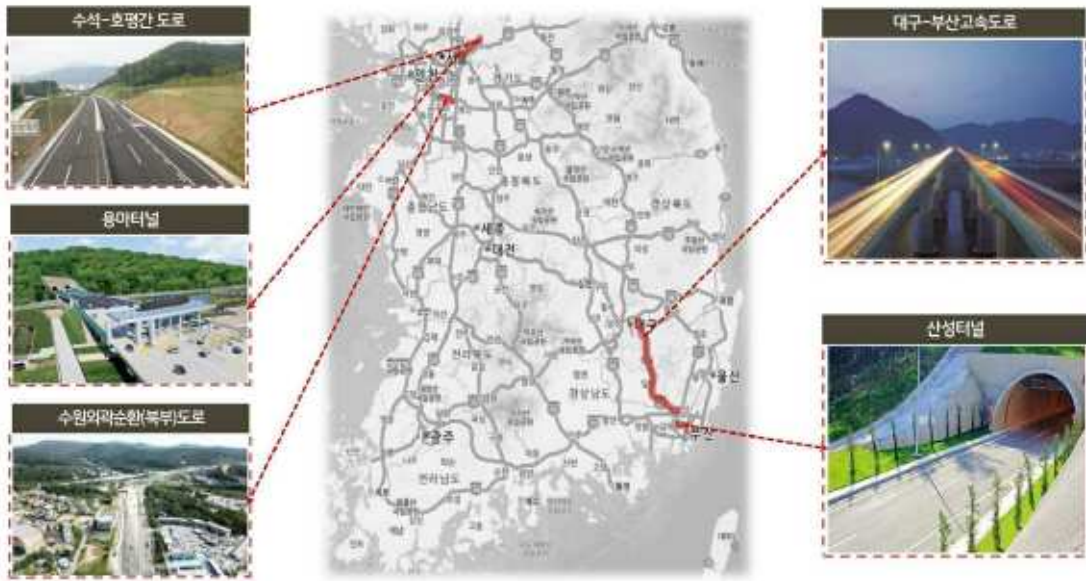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_투자구조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_투자자산 현황('24.8월말기준)
주) 총 투자자산의 장부가액 대비 비중입니다.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_투자사업 개요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정관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정관 상 목적]

구 분	내 용
제2조(목적)	<p>이 회사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보유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민간투자법 제2조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주식, 옵션, 조합 및 합작투자 지분의 취득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않음) 2.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무증서(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기타 유사한 형태의 채무증서를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않음)의 인수 3.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용자 4. 민간투자법 및 자본시장법(및 그 개정법률)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

구 분	내 용
	용되는 기타 운영, 활동 및 사업 5. 본 정관에서 "투자"라 함은 회사가 수시로 하는 모든 투자로서 본 정관에 언급된 유형의 투자를 의미한다.

자료: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정관(2024. 08. 14 개정)

한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인프라펀드")의 경우 그 수익이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하나 회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회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회사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로서 투자대상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이하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사업시행법인")의 주식, 지분, 채권 및 대출채권 등입니다(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43조 제1항). 회사는 정관상 아래 항목을 자산운용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투자를 통해 배당수익 및 이자수익 등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회사의 투자자에게 분배하고자 합니다.

[정관 제45조 (자산운용의 범위)]

-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취득
-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채권의 취득
- 민간투자법상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위 두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회사 제외)에 대한 위 두 방식에 의한 투자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투자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투자

- 회사는 위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때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제공할 수 있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시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외교정보통신망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의한 투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13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유형]

1.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5.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7.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8.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9.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10.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1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1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13.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14.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15. 「집단에너지사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9.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20.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 및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중 「궤도운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삭도
2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2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2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2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3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3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3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33.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3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3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36.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국방· 군사 시설 중 교육· 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 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7.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38.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39.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4조 및 제38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 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4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41.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4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43.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4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4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4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 재생 에너지 설비
4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4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 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5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5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
5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주)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은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기 유형에 국한되지 않음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현황

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운영중인 5개의 민자도로에서 투자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투자자산 중 약 71%를 차지하는 대구-부산간고속도로의 경우 실시협약 상 2026년 2월까지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을 두고 있어 정부로부터 일정 수입이 보장됨에 따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투자 현황 (2024년 8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주식		대출채권 주1)		합계
	금액	지분율	금액 주2)	이자율	
대구- 부산간고속도로 주3)	1,514	50.16%	5,280	10.25~ 10.50%	6,794
수석- 호평간도로	475	100.0%	516	20.0%	991
용마터널	168	60.0%	280	12.0%	448
산성터널	234	65.0%	608	11.0%	842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200	50.0%	240	13.0%	440
합계	2,591	-	6,924	-	9,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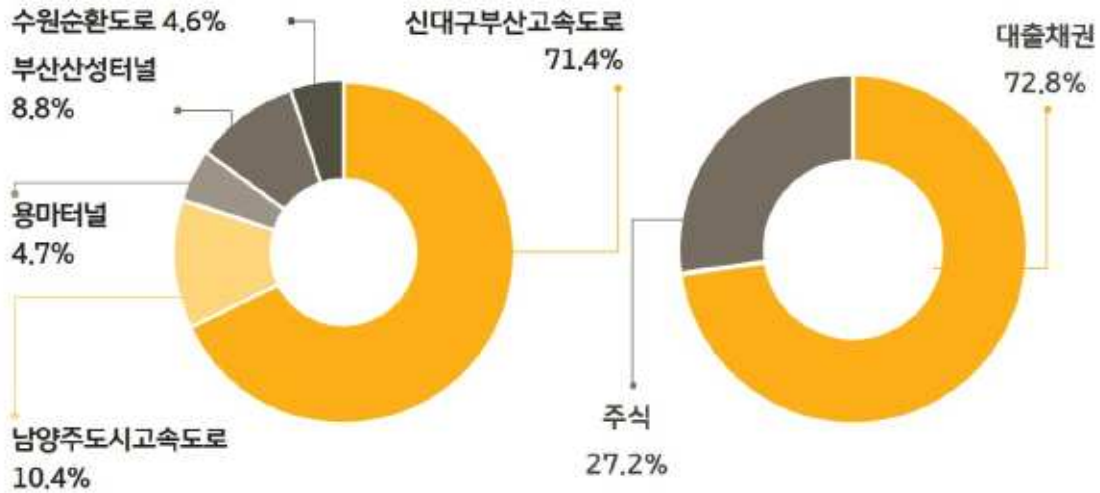
주1) 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은 전부 후순위대출채권입니다.

주2)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지분 및 후순위대출은 공정가격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자산은 취득가 기준 표기하였습니다.

2023.12.26. 이전 회사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대해 지분증권의 경우 취득 원가로 후순위대출의 경우 장부가로 회계상 기록하였으나, '23년 12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지분증권 및 후순위대출 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또한 해당 거래가격을 공정가격으로 반영하고, 후순위대출은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재평가하여 공정가격으로 반영하는 것을 자산운용사 자산평가절차(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 따라 의결하였습니다. 회사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로부터 수취하는 원리금은 위 자산 평가와 무관하나, 위 평가 이후 회사는 후순위대출 이자로 인식하던 현금흐름 일부를 후순위대출 원금상환분으로 변경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손익계산서상 이익금액이 감소 예정이나, 주주 배당은 후순위대출 원금으로 변경처리된 부분(평가 전 이익으로 인식했던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주주 귀속 현금흐름은 유사하게 발생할 예정입니다.

주3) 2024.8.30. 회사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주식 및 후순위대출을 추가 인수하였으며, 위 투자현황의 주식 및 대출채권은 내부 평가절차에 따른 공정가격을 반영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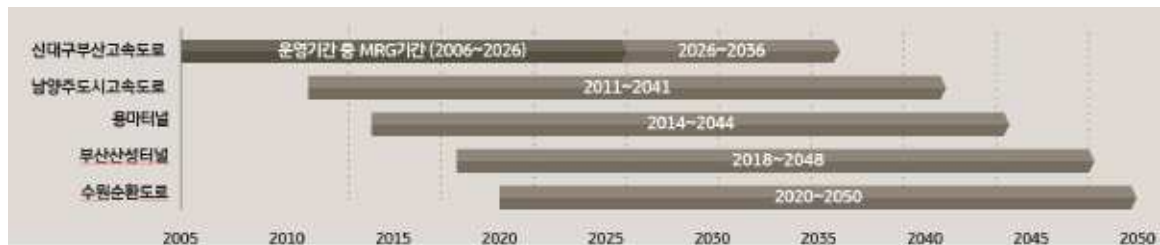
[투자자산 현황 (2024년 8월말 기준)]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_투자자산 현황('24.8월말 기준)

주) 총 투자자산의 장부가액 대비 비중입니다.

[투자자산 운영기간]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_투자자산 운영기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5개의 사회기반시설사업시행법인 개요 및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대구-부산간고속도로는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추진된 총 연장 82.05km의 BTO 방식 민자도로로서 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이며, 본 사업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구- 부산간고속도로 개요]

구분	내용
사업시행법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사업형태	BTO(Build- Transfer- Operate)
사업규모	총 연장 82.05km 유출입시설: 영업소 9개소(IC 7개소, 본선 영업소 2개소) 터널 14개소, 장대교 53개소, 휴게소 2개소, 졸음쉼터 6개소
주무관청	국토교통부
실시협약 체결일	2000년 12월 14일(최초) 2020년 12월 22일(최종)
공사기간	2001년 2월 12일 ~ 2006년 2월 11일
운영기간	2006년 2월 12일 ~ 2036년 2월 11일(30년)
불변가격기준시점	1999년 10월 1일
총사업비(실시협약 기준)	19,511억원(불변가격 기준)
총투자비(실시협약 기준)	24,821억원
총민간투자비(실시협약 기준)	17,960억원

자료: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대구- 부산간고속도로_노선도]

회사는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사업시행법인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지분 및 후순위대출의 방식으로 투자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맺은 실시협약을 기반으로 KR산업, 미성애프로, 이도 등에 관리운영위탁계약을 맺어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맡기고 있습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_사업구조도

대구-부산간고속도로의 사업시행법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2000년 12월 14일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2006년 11월 1일 1차 변경 실시협약(최초통행료 결정 및 사업비정산), 2008년 5월 16일 2차 변경실시협약(출자자변경 및 자금제조달)을 체결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2020년 12월 22일에는 사업조건 변경을 위한 3차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실시협약(최종) 주요 사항]

구분	내용
당사자	사업시행자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주무관청 :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의 권리 (제3조)	1.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도로 및 그 유지, 보수, 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과 부속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제1호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본 사업부지의 무상사용 3. 제1호에 따라 건설된 본 도로 및 부속시설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무상사용 4. 제1호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및 징수 5. 본 사업 구간내의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 6. 부대사업
무상사용기간 (제4조)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2006년 2월 12일 ~ 2036년 2월 11일)
총사업비 (제11조)	총사업비: 19,511억원('99년 10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공사비 (제16조)	도로공사비: 17,370억원('99년 10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부속시설공사비 : 894억원('99년 10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구분	내용
운영개시일 (제33조)	2006년 2월 12일
운영비용 (제38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089억원/년('99년 10월 불변가격 기준, 법인세 제외) 2. 매 사업년도의 운영비용은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경영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문별 운영비용을 상호 전용하거나 통합 사용할 수 있음 3.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 정부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사항 이행 등으로 운영기간 중 운영비용이 증가한 경우 기존협약통행료의 인상, 무상사용기간의 연장 또는 정부 보조금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음 4. 정부는 민간투자법령 및 본 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운영비용 절감을 이유로 사용료의 인하, 무상사용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음
본협약통행료의 징수 (제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종료일까지 통행료를 징수 - 주무관청은 한국도로공사의 유료도로 통행료 인상, 정부정책 등을 고려하여 누적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범위 내에서 통행료 조정 가능
기존협약통행료의 조정 (제43조 및 제4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협약통행료는 운영기간 중 연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에 대한 연도별 기존협약통행료를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범위 내에서 고속도로 요금수준, 대체도로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함 - 위 통행료 조정 외에,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손실 또는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직전년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된 경우,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협약통행료를 조정할 수 있음
통행료수입차액의 산정 및 차액보전금의 청구 (제44-1조 내지 제44-5조, 부록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분기의 실제 통행료수입과 추정통행료간 차액에 미오인식 손실보전금액 및 수납불일치 손실보전금액을 더한 값을 통행료수입차액으로 하여, 그에 따른 차액보전금을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에 청구함 - 주무관청이 지정한 자는 매 분기별 차액보전금을 당해 분기 종료 직후 월의 말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며, 주무관청이 지정한 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이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 - 지급기일 이내에 차액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적용함 - 밀양JCT 유출입 수입 중 전환교통량에 대한 수입을 제외한 교통량 수입은 2026년까지 차액보전금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통행료수입에 포함하여 처리함. 단,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함양울산고속도로가 전 구간 개통되기 전까지 2026년 이후 밀양JCT 유출입 수입 중 전환교통량에 대한 수입을 제외한 교통량 수입의 처리 방안을 협의함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차액보전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각각 별도로 체결할 수 있음
통행료수입 보장 및 환수 (제4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2월까지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추정교통량 × 기존협약통행료 × 77%)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보장하며, 실제 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80%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입의 일정비율을 국고로 환수 또는 기존협약통행료 인하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 초과 90% 이하 : 초과수입의 40% - 90% 초과 100% 이하 : 초과수입의 60% - 100% 초과 110% 이하 : 초과수입의 80% - 110% 초과 : 초과수입의 100% - 정부는 통행료수입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재정지원과 통행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병행 검토함 - 정부의 요구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결정 또는 조정된 통행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감면을 할 경우 정부는 통행료 수입 감소분을 지급함 - 이때 초과분을 환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법인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잉여수익금을 다음 순서로 처리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가 재정지원 또는 차액보전하여야 할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에 충당 2. 주무관청이 통행료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또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행료 인하 또는 무상사용기간 단축 3. 국고환수

자료: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대구-부산간고속도로는 실시협약 상 2026년 2월까지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자(한국도로공사)로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조항을 두고 있어 해당 시점까지 일정 수입을 보장받고 있으며(2020.12월 실시협약에 따른 통행료수입차액(주)은 운영기간 종료시까지 보장받음), 회사는 MRG 만료 전인 2025년 6월까지 선순위대출 원금을 전액 상환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 2020년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당초 요금을 인하하되, 인하분에 대해 주무관청이 지정한 자로부터 통행료수입차액을 매 분기 보전받고 있으며, 실시협약 상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분을 차기년도 통행료수입차액 및 MRG에 반영하여 분기별로 보전받는 구조로 아래의 구조도와 같이 진행됨

[대구-부산 차액보전금 지급 구조도]



대구-부산 차액보전금 지급구조도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선순위 대출약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차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대주	주식회사 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포함지점
약정체결일	2023년 12월 20일
약정액	145,515,000,000원
이자율	- 기준금리 + 0.88% ※ 기준금리: 신용등급 AAA인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만기 삼(3)개월인 금융채 1(은행채)에 대한 민간 채권평가회사 5개사 시가평균수익률의 단순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상환방법	매 3개월 이자지급시점에 6회에 걸쳐 원금균등분할상환

자료: 회사 자료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후순위A 대출약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차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대주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국민연금공단
약정체결일	2020년 12월 24일
약정액	941,576,065,600원
이자율	10.25%(고정)
상환방법	2021년 3월에 도래하는 상환기일부터 2035년 6월에 도래하는 최종 상환기일까지 매 삼(3)개월마다 오십팔(58)회에 걸쳐 분할상환

주) 후순위A대출 중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4,566억원은 후순위B-2 및 후순위C 대출로 차환됨('24.08.30)

자료: 회사 제공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후순위B-1 대출약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차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대주	주식회사 하나은행(KB대구부산고속도로 일반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SOC)(전문)의 신탁업자)
약정체결일	2023년 12월 20일
약정액	200,800,000,000원
이자율	10.50%(고정)
상환방법	2024년 3월에 도래하는 이자지급일로부터 2035년 6월에 도래하는 최종 상환기일까지 매삼(3)개월마다 사십육(46)회에 걸쳐 원금 불균등 상환

자료: 회사 제공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후순위B-2 대출약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차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대주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중소기업은행(KB대구부산고속도로 일반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2호(SOC)(전문))
약정체결일	2024년 8월 26일

구분	내용
약정액	178,600,000,000원
이자율	10.50%(고정)
상환방법	2024년 9월에 도래하는 이자지급일(단, 최초인출 시점에 따라 이연될수 있음)부터 2035년 6월에 도래하는 최종 상환기일까지 매삼(3)개월마다 사십사(44)회에 걸쳐 원금 불균등 상환

자료: 회사 제공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후순위C 대출약정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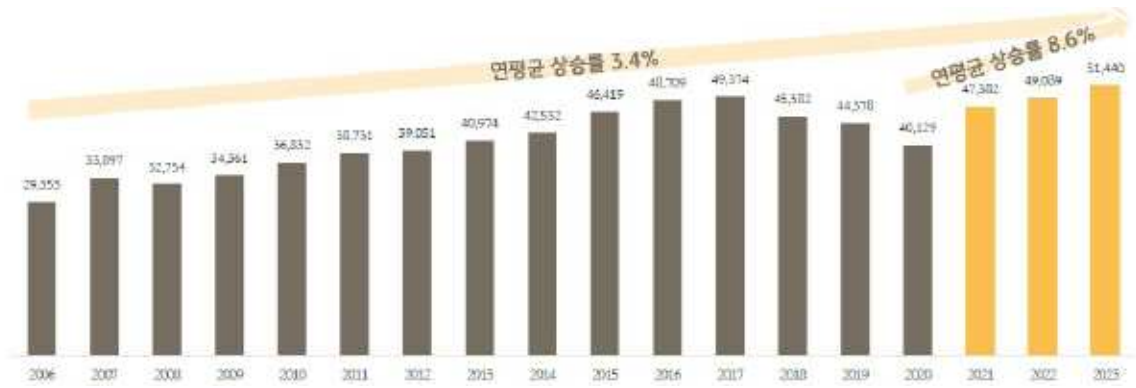
구분	내용
차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대주	주식회사 하나은행(KB대구부산고속도로 일반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SOC)(전문)의 신탁업자)
약정체결일	2023년 12월 20일
약정액	278,000,000,000원
이자율	8.00%(고정)
상환방법	2024년 9월에 도래하는 이자지급일(단, 최초인출 시점에 따라 이연될수 있음)부터 2035년 6월에 도래하는 최종 상환기일까지 매삼(3)개월마다 사십사(44)회에 걸쳐 원금 불균등 상환

자료: 회사 제공

회사의 집합투자업자인 KB자산운용은, 회사가 투자하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동일하게 투자하는 신탁형 펀드인 KB대구부산고속도로 일반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SOC)(전문) 및 KB대구부산고속도로 일반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제2호(SOC)(전문)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정관 및 대출약정서 등 관련 계약을 통해 대출원리금 및 배당금 지급조건,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고 있으며, 회사는 정관 및 자산운용위탁계약서 등에 따라 회사 주주 이익에 부합하도록 위 두 펀드와 독립적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대구-부산간고속도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및 대구지역 이동 통제에 따라 한시적 교통량 감소를 겪었으나, 같은 해 반값 통행료 인하(1종 기준 10,500원→5,000원, 통행료 인하분 정부 보전)를 골자로 하는 변경 실시협약(사업기간 종료시까지 통행료 인하분 정부 보전)의 체결과 코로나19 사태 완화에 따른 이동수요 증가에 따라 2022년 기준 통행량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며, 2023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통행량을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대/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_교통량 실적

자료 : 회사 제시

(2) 수석-호평간도로

수석-호평간도로는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추진된 총 연장 11.2km의 BTO 방식 민자도로로서 주무관청은 남양주시이며, 본 사업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석- 호평간도로 개요]

구분	내용
사업시행법인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
사업형태	BTO(Build- Transfer- Operate)
사업규모	- 총 연장 11.2km - 유출입시설: IC 6개소, 영업소 1개소 - 터널 1개소(2.49km), 교량 16개소(902m)
주무관청	남양주시
실시협약 체결일	2005년 12월 27일
공사기간	2006년 12월 11일 ~ 2011년 8월 29일
운영기간	2011년 9월 1일 ~ 2041년 8월 31일(30년)
불변가격기준시점	2003년 1월 1일
총사업비(실시협약 기준)	1,706억원(불변가격기준)

구분	내용
총투자비(실시협약 기준)	2,370억원
총민간투자비(실시협약 기준)	2,370억원

자료: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



수석-호평간도로 노선도

회사는 수석-호평간도로 사업시행법인인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에 지분 및 후순위 대출의 방식으로 투자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는 주무관청인 남양주시와 맺은 실시협약을 기반으로 주식회사 맥서브와 관리운영위탁계약을 맺어 운영 및 유지보수 관한 사항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수석- 호평간도로_사업구조도

수석-호평간도로의 사업시행법인인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는 주무관청인 남양주시와 2005년 12월 27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석- 호평간도로 실시협약 주요사항]

구분	내용
당사자	사업시행자 :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 주무관청 : 남양주시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제7조)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2011년 9월 ~ 2041년 8월)
총사업비 및 공사비	- 총사업비: 1,706억원 - 공사비: 1,450억원
운영비용 (제37조)	- 1,033억원(불변가격기준, 법인세 제외) - 매 사업년도의 운영비용은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무상사용기간 중 (i) 본 도로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등 또는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ii) 주무관청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비용이 증가하고 남양주시가 해당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승인한 경우, (iii) 운영비용 증가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세법 변경으로 인한 법인세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통행료의 조정,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또는 재정지원을 요구할 수 있음 - 남양주시는 사업시행자가 경영효율 등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사용료의 인하, 무상사용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음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사용료의 정산 (제39조~ 제42조)	-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본 사업구간을 통행하는 차량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함 - 본 사업의 차종별, 구간별 기준통행료는 부록4(차형별 통행료)과 같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사용료 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 그리고 본건 실시협약 제38조의 사업수익률에 따라 산정함 -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당해년도 이전에 본항에 의한 통행료 조정이 없었거나, 일부 조정만 있었던 경우 이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일부 조정의 경우는 미반영 부분)을 합계한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조정할 수 있음 -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 또는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주무관청과의 협의를 통해 본건 실시협약에 정한 원칙과 방식에 따라 통행료를 조정함 - 사업시행자는 2003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당해년도 6월30일까지 산정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하여 조정된 통행료를 당해년도 8월31일까지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당해년도 10월1일부로 통행료를 조정하여 조정된

구분	내용
	통행료를 징수함 ('21년 리파이낸싱시 주무관청과 법인가간 별도 합의를 통해 통행료 조정시기를 변경함)

자료: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 선순위 대출약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차주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
대주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약정체결일	2021년 6월 23일
약정액	111,600,000,000원
이자율	- 약정서 체결일 전 상십(30) 영업일 동안 한국금융투자협회에 고시되는 5년 만기 국고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에 가산 금리를 더하여 산정되는 고정금리 (2.77% 연)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	- 최초상환일 : 인출일로부터 일(1)년 경과 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지급일로서 2022년 9월 26일 - 최종상환일 : 상환계획표상 대출금이 최종적으로 전부 상환되기로 예정된 날 - 상환방식 : 유동화자산양도일 이전에는 상환기일에 상환하고, 유동화자산양도일 이후에는 최초상환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 매 3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대출약정서 부록4의 상환비율표와 같이 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

자료: 회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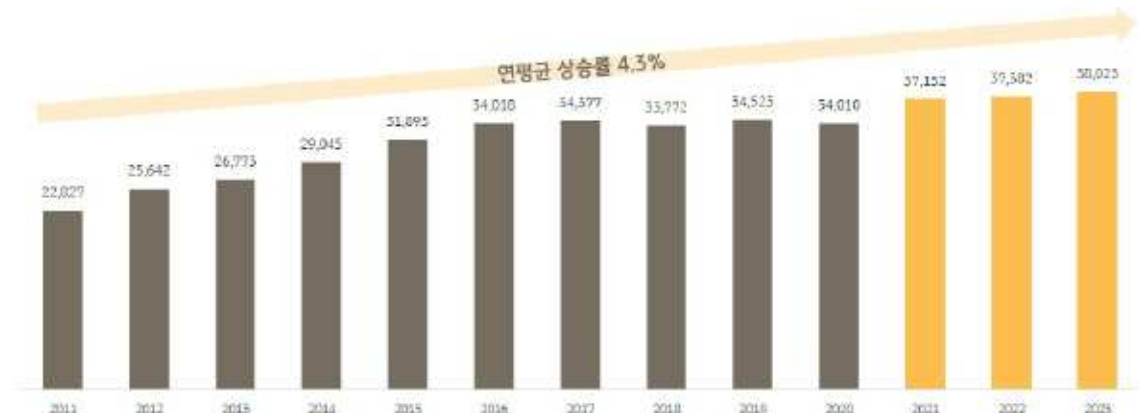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 후순위 대출약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차주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
대주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약정체결일	2021년 6월 23일
약정액	51,625,000,000원
이자율	- 운영개시 후 10년간 12.0% 연(고정) - 이후 기간 20.0% 연(고정)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	최초상환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 매 3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불균등상환

자료: 회사 자료

수석-호평간도로는 시점부는 강변북로와 접속되고 종점부는 평내호평 인근 택지지구와 접속되어 서울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하며, 남양주 양정역세권 및 남양주 왕숙1·2지구 등의 신규 택지개발사업 인근에 위치한 노선입니다. 신고서 작성일 현재 실시협약 대비 저조한 통행량 실적으로 미지급이자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남양주 택지 개발 완료 이후 일부 통행량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위 : 대/일)



수석-호평간도로_교통량 실적

자료: 회사 자료

(3) 용마터널

용마터널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추진된 총 연장 3.6km의 BTO 방식 민자도로로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이며, 본 사업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마터널 개요]

구분	내용
사업시행법인	용마터널(주)
사업형태	BTO(Build- Transfer- Operate)
사업규모	총 연장 3.56km 왕복 4차로(폭원 20m) 유출입시설: 지하차도 1개소, 터널 1개소, 교량 3개소, 영업소 1개소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실시협약 체결일	2003년 8월 12일(최초) 2009년 11월 12일(1차 변경) 2018년 6월 8일(2차 변경)
공사기간	2009년 11월 21일 ~ 2014년 11월 20일
운영기간	2014년 11월 21일 ~ 2044년 11월 30일(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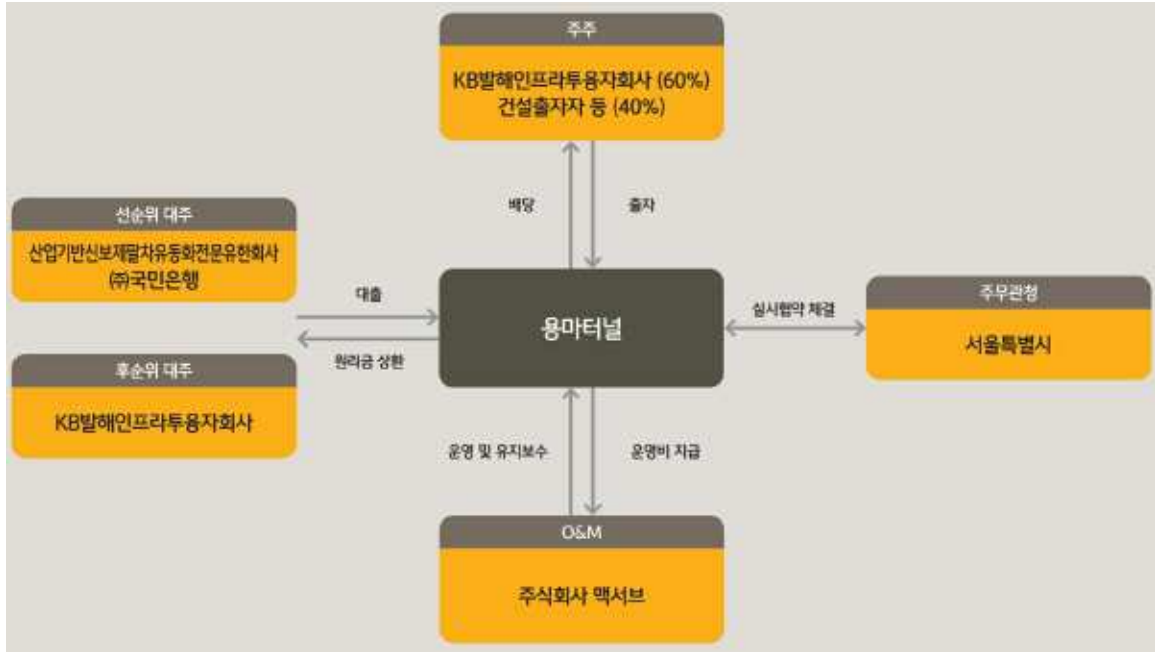
구분	내용
불변가격기준시점	2001년 5월 1일
총사업비(실시협약 기준)	1,181억원(불변가격기준)
총투자비(실시협약 기준)	1,884억원
총민간투자비(실시협약 기준)	1,884억원

자료: 용마터널(주)



용마터널 노선도

회사는 용마터널 사업시행법인인 용마터널(주)에 지분 및 후순위대출의 방식으로 투자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용마터널(주)는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와 맺은 실시협약을 기반으로 주식회사 맥서브와 관리운영위탁계약을 맺어 운영 및 유지보수 관한 사항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용마터널_사업구조도]

용마터널의 사업시행법인인 용마터널(주)는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와 2003년 8월 12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법률 개정 및 제반 여건의 변경에 따라 2009년 11월 12일 1차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자금제조달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1차 변경 실시협약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2018년 6월 8일 2차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마터널 실시협약(최종) 주요 사항]

구분	내용
당사자	사업시행자 : 용마터널(주)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
무상사용기간 (제5조)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2014년 11월 ~ 2044년 11월)
총사업비 및 공사비	총사업비: 1,181억원
운영비용 (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47억원('05.05.01 불변가격기준, 법인세 제외) - 매 사업연도의 운영비용은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영목적에 따라 부문별 운영비용을 상호 전용하거나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다음 사유로 인해 각 사업연도별 운영비용이 증감하는 경우 통행료의 조정,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또는 재정지원 요구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각 사업연도별 운영비용이 증감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비용이 증감하고 서울특별시가 해당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승인한 경우 3.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보험료 증감분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소득에 관한 세법의 개정으로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합의하여 통행료 산정이나 조정시 세율의 변동을 반영하거나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는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영효율 등으로 운영비용이 감소되더라도 이를 사유로 통행료의 인하, 무상사용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감소액의 환수를 요구하지 아니함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사용료의 정산 (제27조 내지 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된 통행료를 서울특별시에 신고 - 무상사용기간 중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며,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정된 사용료를 징수 -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당해년도 이전에 본항에 의한 통행료 조정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조정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누적적으로 합계한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조정 -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통행료가 적정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통행료의 조정 요구 가능, 상호합의 통해 적정통행료 결정
통행료수입 환수 (제2조, 제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사용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통행료수입이 환수기준 통행료수입(추정통행료수입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잉여수익금의 50%를 서울특별시로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인정하는 경우 그에 갈음해 다음 각 호 방법으로 처리가능 (i) 본건 실시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용마터널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이행기가 도래한 금액에 충당 (ii) 통행료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또는 인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행료 인하 또는 무상 사용기간 단축

자료: 용마터널(주)

[용마터널(주) 선순위 대출약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차주	용마터널(주)
대주	장기대출A대주: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장기대출B대주: 에이치엠씨투자증권 주식회사 장기대출C대주: 주식회사 국민은행 신용공여대출대주: 주식회사 국민은행
약정체결일	2015년 10월 26일
약정액	145,000,000,000원
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대출금A: 3.10%연(고정) - 장기대출금B: 3.50%연(고정) - 장기대출금C: 기준금리 +1.0% - 신용공여대출금: 기준금리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 이자율 결정일의 3영업일 전부터 7영업일 전까지 5일간의 신용등급이 AA-, 잔존만기가 3년인 무보증회사채 유통수익률의 단순산술평균
상환기간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대출금A: 최초인출일로부터 4년 거치 후 2년간 3개월 단위로 원금불균등상환 - 장기대출금B, C: 최초인출일로부터 6년 거치 후 16년간 매3개월 단위로 원금불균등상환 - 신용공여대출: 매 인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만기일시상환

자료: 회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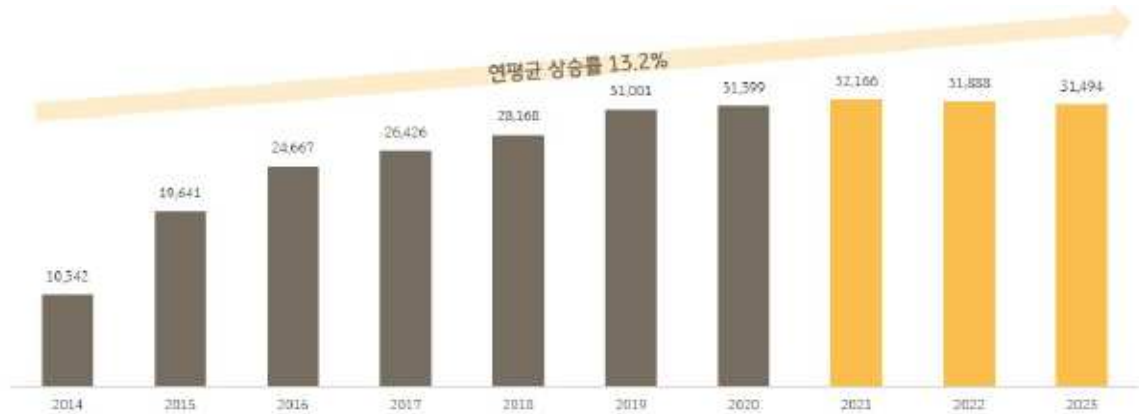
[용마터널(주) 후순위 대출약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차주	용마터널(주)
대주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약정체결일	2015년 10월 26일
약정액	28,000,000,000원
이자율	- 운영개시일 ~ 2031년 3월 28일: 12.0%연(고정) - 2031년 3월 29일 이후: 15.0%연(고정)
상환방법	최초인출일 기준 26년 거치 후 2년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자료: 회사 제공

용마터널은 서울시 중랑구와 경기도 구리시를 연결하며 망우로와 아차산길의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중인 바, 서울 외곽으로 진출하는 교통량의 상당부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용마터널의 교통량은 2014년 구간 개통 이후 2023년까지 교통량이 연평균 13.2%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용마터널과 인접한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구리-안성 구간 개통이 2024년말에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추가적인 교통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위 : 대/일)



용마터널_교통량 실적

자료: 회사 제공

(4) 산성터널

산성터널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추진된 총 연장 5.6km의 BTO 방

식 민자도로로서 주무관청은 부산광역시이며, 본 사업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성터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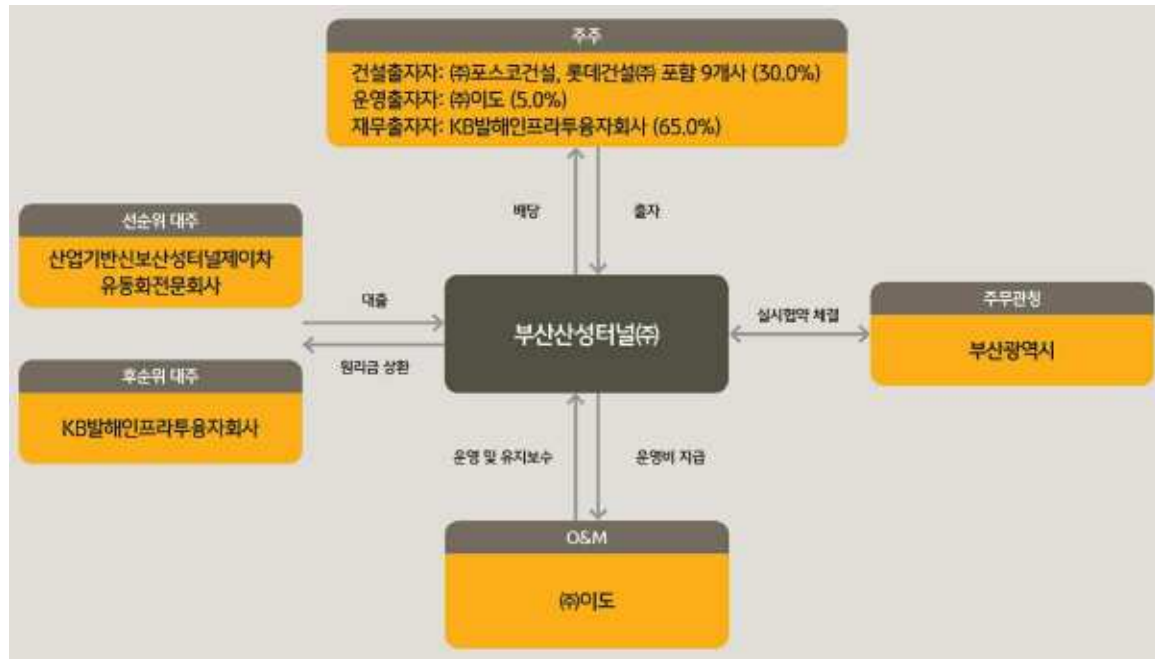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업시행법인	부산산성터널(주)
사업형태	BTO(Build- Transfer- Operate)
사업규모	총 연장 5.62km(터널 4.875km, 왕복 4차로)
주무관청	부산광역시
실시협약 체결일	2012년 4월 19일
공사기간	2013년 7월 1일 ~ 2018년 9월 30일
운영기간	2018년 10월 1일 ~ 2048년 9월 30일(30년)
불변가격기준시점	2005년 3월 1일
총사업비(실시협약 기준)	1,931억원(불변가격기준)
총투자비(실시협약 기준)	2,708억원
총민간투자비(실시협약 기준)	2,159억원

자료: 부산산성터널(주)



산성터널_노선도

회사는 산성터널 사업시행법인인 부산산성터널(주)에 지분 및 후순위대출의 방식으로 투자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산성터널(주)는 주무관청인 부산광역시와 맺은 실시협약을 기반으로 주식회사 이도와 관리운영위탁계약을 맺어 운영 및 유지보수 관한 사항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주주협약에 따라 2027년 3월 31일 이후 건설운영출자자들의 보유주식 전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산성터널_사업구조도]

산성터널의 사업시행법인인 부산산성터널(주)는 주무관청인 부산광역시와 2012년 4월 19일 최초실시협약 체결 이후 2022년 10월 4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성터널 실시협약 주요 사항]

구분	내용
당사자	사업시행자 : 부산산성터널(주) 주무관청 : 부산광역시
무상사용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2018년 10월 ~ 2048년 9월)
총사업비 및 공사비 (제12조, 제19조)	총사업비: 1,931억원(공사비: 1,477억원(불변가격기준)) - 1,036억원(불변가격기준) - 운영기간 중 (i)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등 또는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ii) 총 사업비 변경이나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의 이행으로 인한 경우, (iii) 기타 주무

구분	내용
운영비용 (제40조)	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감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사용료,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경영효율 등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사용료의 인하, 무상사용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음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사용료의 정산 (제47조, 제49조)	- 최초사용료를 제외한 연도별 사용료는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며,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함 - 불가항력 사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부담분 일부를 사용료를 조정하여 해소하기로 합의한 경우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함 - 본 도로와 연계된 도로구간과 사용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는 경우 연계도로의 운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용료 징수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하도록 함
초과사용료 수입 환수 (제56조)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 및 그 후 매 1년마다 운영개시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누적기준 실제사용료 수입이 동일한 기간동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누적기준 환수기준 사용료수입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주무관청에 환급

자료: 회사 제공

[부산산성터널(주) 선순위 대출약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차주	부산산성터널(주)
대주	산업기반신보산성터널제이차유동화전문(유)
약정체결일	2021년 12월 22일
약정액	162,000,000,000원
이자율	-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고정금리 3.02% ⁴ 연 · 기준금리: 최초인출일 3영업일 전부터 7영업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5년 만기 국고채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기준)의 단순산술평균 · 가산금리: (i) 유동화자산양도일까지는 연 일퍼센트(1.0%) (ii) 유동화자산양도일 다음 날부터는 연 일정일퍼센트(1.1%)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	- 최초상환기일 : 2022년 1분기의 이자지급일 - 최종상환기일 : 2043년 1분기의 이자지급일 - 상환방식 : 최초상환기일부터 최종상환기일까지 매 3개월 이자지급시점에 총 85회에 걸쳐 원금불균등분할 상환

자료: 회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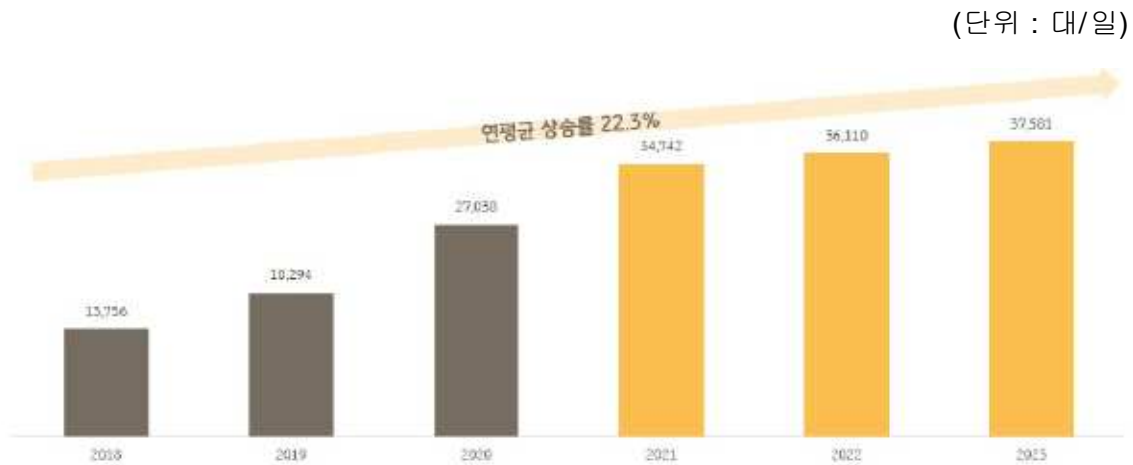
[부산산성터널(주) 후순위 대출약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차주	부산산성터널(주)
대주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약정체결일	2021년 12월 22일
약정액	69,800,000,000원
이자율	11.0% ⁴ 연(고정)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	- 최초상환기일 : 2043년 2분기의 이자지급일 - 최종상환기일 : 2048년 1분기의 이자지급일 - 상환방식 : 최초상환기일부터 최종상환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20회에 걸쳐 각 이자지급일

구분	내용
	에 후순위대출금을 원금균등분할 상환

자료: 회사 제공

산성터널은 부산광역시 소재 금정산을 통과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와 금전구를 연결하는 터널로, 부산광역시의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중요 간선도로로 기능하여 만덕터널의 만성적인 교통혼잡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노선의 동측 접속도로인 윤산터널은 2020년 4월 개통되었으며, 서측부 접속도로인 초정IC~안막IC 구간(2022년 12월 착공) 및 반송터널 개통 시 부산외부순환망의 완성을 통한 교통량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산성터널_교통량 실적

자료 : 회사 제공

(5)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는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추진된 총 연장 7.7km의 BTO 방식 민자도로로서 주무관청은 수원시이며, 본 사업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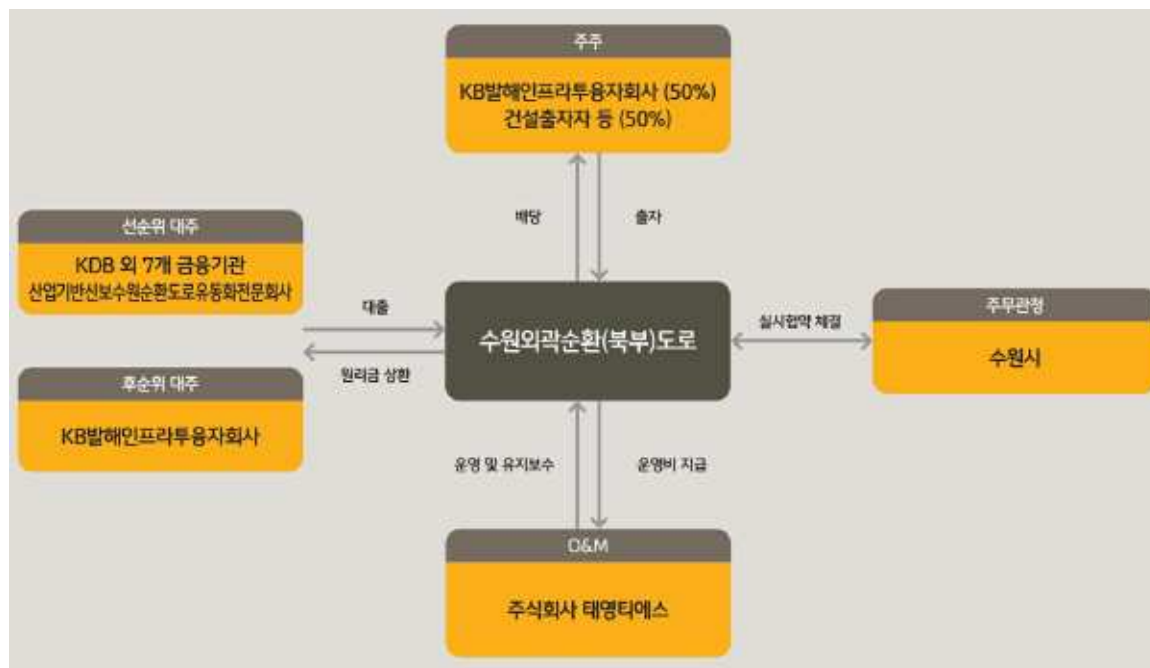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업시행법인	수원순환도로(주)
사업형태	BTO(Build- Transfer- Operate)
사업규모	- 총 연장 7.7km(왕복 4차로) - 영업소 2개소, 출입시설 3개소, 교량 1.76km(13개소), 터널 1.34km(2개소)
주무관청	수원시
실시협약 체결일	- 2014년 8월 07일(최초) - 2021년 7월 28일(최종)
공사기간	2017년 6월 21일 ~ 2020년 9월 20일
운영기간	2020년 9월 21일 ~ 2050년 9월 20일(30년)
불변가격기준시점	2004년 1월 1일
총사업비(실시협약 기준)	1,712억원(불변가격기준)
총투자비(실시협약 기준)	2,599억원
총민간투자비(실시협약 기준)	2,599억원

자료: 수원순환도로(주)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_노선도]

회사는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사업시행법인인 수원순환도로(주)에 지분 및 후순위 대출의 방식으로 투자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수원순환도로(주)는 주무관청인 수원시와 맺은 실시협약을 기반으로 주식회사 태영티에스와 관리운영위탁계약을 맺어 운영 및 유지보수 관한 사항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_사업구조도]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의 사업시행법인인 수원순환도로(주)는 주무관청인 수원시와 2014년 8월 7일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준공 정산 및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7월 28일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실시협약 주요 사항]

구분	내용
당사자	사업시행자 : 수원순환도로(주) 주무관청 : 수원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제10조)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2020년 9월 ~ 2050년 9월)
총사업비 및 공사비 (제12조 및 제19조)	- 총사업비: 1,712억원(불변가격기준) - 공사비: 1,418억원(불변가격기준)
	- 1,095억원('04.01.01. 불변가격기준) - 다음 사유로 인해 각 사업연도별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통행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

구분	내용
운영비용 (제40조)	<p>는 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등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총사업비 변경이나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의 이행으로 인한 경우 ·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p>- 위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을 변경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p> <p>-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효율적 경영으로 운영비용이 절감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통행료의 인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음</p>
통행료의 결정 및 조정, 통행료 정산 (제47조, 제4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사용료를 제외한 연도별 통행료는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며(매 4월 1일 기준),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에 적용할 통행료를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함 - 어느연도의 통행료 조정시 반영되지 아니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있는 경우)은 이후 통행료조정시 누적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불가항력 사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부담분 일부를 통행료를 조정하여 해소하기로 합의한 경우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함 - 본 도로와 연계된 도로구간과 사용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는 경우 연계도로의 운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용료 징수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하도록 함
주무관청 자원에 따른 통행료 인하 (제50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교택지개발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본 사업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무관청은 개발부담금 등(광역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개발부담금 등을 포함함)을 통행료의 인하나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의 단축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개발부담금 등을 교부받는 경우 본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무관청과 상호 협의하여 통행료를 인하하거나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을 단축하기로 함
대체사업으로 인한 보상 (제5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관청은 사업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경쟁노선을 신설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 보상 등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함 · 본 사업시설의 교통량에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신규경쟁 노선 ·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등 도로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 경쟁노선 · 사업제안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신규 경쟁 노선
초과 통행료수입 환수 (제5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개시일로부터 16년이 되는 날(타인자본 상환 완료예정일) 이후의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통행료수입이 누적기준으로 환수기준 통행료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초과액(초과분에 대한 제세공과금 제외)을 주무관청에 환급하되, 협약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에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이행기간 도래한 금액에 충당 · 통행료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또는 인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행료 인하 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단축

자료: 수원순환도로(주)

[수원순환도로(주) 선순위 대출약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차주	수원순환도로(주)
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은행 외 7개 기관 - 산업기반신보수원순환도로유동화전문회사
약정체결일	2014년 12월 30일

구분	내용
약정액	선순위대출금 : 2,200억원 신용공여대출금 : 100억원
이자율	- 장기대출금 I : 4.2% 연(고정) - 장기대출금 II: 기준금리* + 가산금리(1.1%) - 신용공여대출금: 기준금리* + 가산금리(2.5%) · 기준금리*: 이자율 결정일의 직전 1개월 동안 신용평가등급이 AA- 인 잔존만기 3년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의 산술평균
상환기간 및 방법	- 장기대출금 I, II: 최초인출일로부터 4년거치 후 18년 원금불균등상환 - 신용공여대출: 1년 이내의 이자지급일에 일시상환

자료: 회사 제공

[수원순환도로(주) 후순위 대출약정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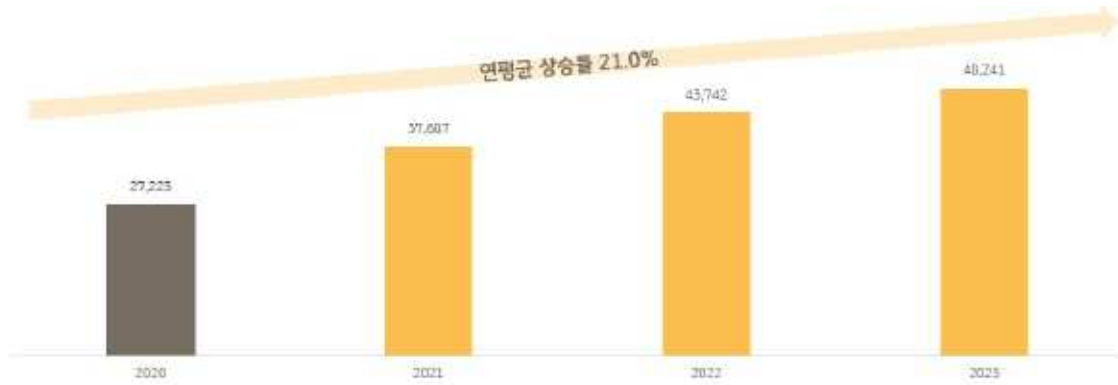
구분	내용
차주	수원순환도로(주)
대주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약정체결일	2013년 1월 23일
약정액	240억원
이자율	13.0% 연(고정)
상환방법	선순위대출금 상환 후 5년(20회) 균등 상환

자료: 회사 제공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는 광고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수원 북부 지역의 교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습니다.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과 영통구 의의동을 연결하는 7.7km 길이 왕복 4차선 도로로서 2020년 개통 이후 램프업(Ramp-up)(*) 기간 동안 급속한 교통량 증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상시 교통체증 구간인 영동고속도로의 우회도로 기능과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 인구증가 예상에 따라 향후 교통량 증가가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본 도로와 접속도로(용인 수지구~처인구, 12.0km)가 무료로 직결되어 있어, 총 20km 직선 도로를 이용 가능하고, 국도 1호선과 43호선 등 시내구간을 경유하지 않고 북수원에서 광고와 용인, 광주 등 타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램프업(Ramp-up): 신규 교통시설의 개통 초기에는 교통수요가 등락을 반복하며 큰 폭으로 상승하다 점차 안정화되는 현상을 가리켜 교통수요의 램프업이라고 합니다.

(단위 : 대/일)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_교통량 실적

자료: 회사 제공

다. 공모 자금의 사용 목적

회사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서 동법 제41조의5에 따라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신규 투자대상의 발굴 시 상기 조건을 염두에 두고 유상증자 및 차입 등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30
2. 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차입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새로운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투자금 등을 신속하게 조달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에 대비하여 회사는 상장후 민간투자법상 차입 한도(회사 자본금의 30%)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하는 적정 수준의 재무적 유동성(현금, 잔여 차입한도)을 항시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우선 회사의 현금 및 차입금을 활용하여 투자금 등을 신속히 마련하고, 추후 필요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여 미래 잠정 신규 투자 등에 필요한 재무적 유동성을 재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신고서 제출일 기준, 회사의 차입 한도는 2,259억원(자본금 7,531억원의 30%에서 억원 미만 절사)이며, 이 중 회사는 신고서 제출일 기준 총 1,708억원(*)을 투자목적자금으로 차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2021년 12월 삼성터널 자금제조달 목적으로 608억원, 2024년 8월 대구부산 추가투자 등 목적으로 1,20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이 중 2024년 10월 7일 사채로 조달한 차입금 100억원이 만기 상환됨에 따라 신고서 제출일 기준 회사의 차입금 잔액은 1,708억원입니다.

회사는 금번 신주발행 통해 1,138억원의 자금 모집을 목표로하며, 이에 따른 발행비용은 약 18억원으로 예상합니다. 목표한 규모의 자금 모집이 이루어질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기존 7,531억원에서 1,120억원(목표 모집액 1,138억원에서 예상 발행비용 18억원을 제한 금액) 증액되어 8,65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해당 자본금 증액에 따라 회사의 상장시 차입 한도는 336억원(자본금 증액분 1,120억원의 30%) 증액되므로, 금번 신주발행을 통해 목표한 규모의 자금모집이 이루어질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의 유동성은 총 1,456억원(자본금 증액분 1,120억원 및 차입한도 증액분 336억원)만큼 늘어납니다.

한편, 회사는 금번 공모에 앞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자산(주식, 후순위대출)을 단기 차입금으로 조달하여 양수('24.8.30.)한 바 있으며, 금번 신주모집을 통해 확보되는 자금으로 위 단기차입금을 포함, 투자목적 차입금을 상환하여 추후 신규투자 등에 필요한 재무적 유동성을 재확보할 예정입니다. 이후 현재 검토중인 신규사업 금융약정시 차입금 및 기보유 투자자산으로부터 상환되는 원본상환금 등을 활용하여 인출 예정입니다. 본 사용계획은 신규투자스케줄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투자제한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3조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사업에만 자산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외의 자산운용의 제한 및 한도는 없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의한 투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한편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8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87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투융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나.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바.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사.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2.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합병·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 같은 항 같은 호 바목의 위험평가액 및 같은 항 같은 호 사목의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제3호가목·나목,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부터 6개월(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1조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로서, 1)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사업의 실행가능성과 수익성이 높고 미래의 현금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투자하며, 2) 일시적 여유자금은 국공채 또는 예금, 민간투자법 제43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국채· 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무위험 자산으로 운용함을 자산운용의 기본방침으로 합니다.

회사의 주요 투자전략은 민간투자법상의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증대하고 현금을 배당함으로써 주주에게 수익을 창출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회사는 다음을 통해 위의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의 인프라사업에 대한 풍부한 투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현금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투자합니다.
- 2) 회사의 전체 포트폴리오 가치를 증대시키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투자합니다.
- 3) 대상 인프라 사업에 내재된 투자 위험에 상응하는 수익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투자합니다.
- 4) 경쟁력있는 자금조달(자금재조달 포함)을 통해 회사의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투자합니다.

회사는 도로, 터널 외에도 철도 등 핵심 인프라 사업 및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넓은 범위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 초기에는 민간투자법상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대형 사회기반시설사업 시행법인에 투자하여 투자자산 확대,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수익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이후 발전·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우량사업 딜소싱 및 선별적인 투자를

통한 배당금 확대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회사는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개별 자산의 투자와 매각, 자금재조달과 관련하여 회사는 법률/회계/기술실사 및 사업성분석 등을 실시합니다. 회사는 중대한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분석 상의 주요 가정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법률, 재무, 세무, 회계, 규제, 교통, 보험, 환경, 기술 및 운영 측면과 같은 주요 위험분야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인프라 사업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운용능력, 종합운용사로서 대체자산에 특화된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부서의 독립적 운영, 중요 사항에 대한 대체투자위원회 의결 등을 바탕으로 회사가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B자산운용 투자 의사결정 구조도

자료 : KB자산운용

나. 수익구조

회사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회기반시설사업 시행 법인에 주식과 후순위 대출 형태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며, 동 법인들로부터 받는 이자수익과 대출원금, 그리고 배당금을 회사의 수익 재원으로 합니다.

회사의 비용은 집합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업자 등 서비스 제공자에 지급하는 보수와 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입니다.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현금흐름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24(E) 주)	2025(E)	2026(E)	2027(E)	2028(E)	2029(E)
선순위 이자수익	-	-	-	-	-	-
후순위 이자수익	46,627	95,553	89,741	86,261	80,697	75,291
배당수익	-	-	-	-	-	-
펀드보수	(2,724)	(5,400)	(5,278)	(5,126)	(4,997)	(4,836)
차입금 이자상환	(3,872)	(9,944)	(9,944)	(9,944)	(9,944)	(9,944)
세무상 이익	40,031	80,209	74,519	71,191	65,756	60,511

자료: 회계법인 새길_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지분가치 평가보고서(2024.10.15)

주) 지분가치 평가보고서 상 2024년 9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기준

회사의 향후 현금흐름은 상기 표와 같이 추정되었으며, 상기 추정치는 전문평가기관 등이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법인들의 통행량을 측정한 결과에 기초하여 산출되었으나, 실제 통행량 및 사업시행법인의 운영비용 변동에 따라 회사의 손익이 변동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회사는 투자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투자매매·중개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투자자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는 투자원금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할 위험 등 다양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회사 주식의 가치는 보장되지 아니하며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발생 가능한 손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 및 회사의 주식의 유동성에 대한 위험요인은 나. 특수위험 - 2. 회사위험 - (5) 분배금 지급 관련 위험, (8) 차입금 관련 위험, (10) 투자자금 조달 불

확실성 위험에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회사가 아래와 같이 기재한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한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본 건 사업 이외의 인프라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께서는 회사가 본 신고서 상의 사업 외 인프라 관련 시행법인 지분 취득·후순위 대출 등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 본 신고서에 드러나지 않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예상 배당수익률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설립일로부터 회사 정관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따른 해산일까지 존속하는 회사로서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 등을 통한 방법으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결과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주식분산요건 중 주주수 요건(50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번 주식의 모집은 취소되며 기 납부한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까지 전액 환불될 예정입니다. 이 때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회사는 인프라 관련 투자자산의 매입 및 운영, 처분 및 기타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다양한 위험회피 전략을 수립하여 위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자산에 대한 위험 이외에도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것과, 위험회피 전략 수립에도 불구하고 분석 및 추정의 오류가 있거나 제반 사항의 변동으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자와 관련된 위험 요소들이므로 투자결정 시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1) 주식가격의 변동 위험(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의 위험)

회사는 투자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 경제 및 도로 수요 등에 따라 수취 현금흐름이 저하되어 주식의 가치가 공모가 이하로 하락하거나, 회사의 투자 대상 인프라 관련 투자자산의 수익성과는 무관하게 국내외 증권시장의 변동에 따른 주가가 하락할 때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투자매매·중개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회사는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의해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지만, 본 기준가격과 유가증권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는 향후 회사 가치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판단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금액의 원본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인프라투융자사업은 국내외 경기 변동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내 경기의 침체는 국내 물동량 및 교통수요를 감소시켜 도로 통행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각 시행법인의 현금흐름 및 회사의 투자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정 교통량 대비 실적 교통량의 저하는 향후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시행법인의 지분에서 창출되는 배당 및 청산배당 등에 영향을 줌으로서 회사의 현재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금액 손실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전염병 등 천재지변에 따른 위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2019년 12월 1일 처음으로 발생이 확인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 경보를 기존 5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6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으로 선포하였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역시 COVID-19 사태 이후 충격을 받았으며, 하락 및 상승을 번갈아 기록하면서 증권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COVID-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및 이동 제한으로, 회사가 투자 중인 일부 고속도로 등의 통행량에도 일시적 감소가 있었습니다. COVID-19는 현재 4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국내에 경제적인 충격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COVID-19 외 타 감염병 유행 등 통행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미래 현금흐름 및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4) 금리 변동 위험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는 총 1,708억원 규모의 자금을 사채 및 차입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차입 및 사채 발행 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나, 상장 이후에는 동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자본금의 100분의 30 규모까지만 차입이 가능합니다. 상장 후 예상 차입 한도는 2,595 억원으로, 금리 변동에 노출될 최대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향후 위 법령 상의 차입 및 사채 발행 한도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회사의 차입 및 사채발행한도가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

※ 관련법규

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30

2. 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차입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서 제출일 현재 차입금 및 추가 차입 예정 금액에 대한 금리 변동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회사의 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발행일/인출일	상환일/만기일	이자율
사채	제3-2회 무보증 사모	10,000	2023.04.06	2024.11.06	5.30%
차입금	슈퍼문레드(주)	20,000	2024.05.02	2024.11.04	4.50%
	뉴라이징제삼차(주)	20,800	2024.04.05	2025.04.04	4.80%
	스페이스레드(주)	30,000	2024.08.29	2024.11.29	3.77%
	스페이스레드(주)	90,000	2024.08.29	2025.02.28	3.77%
합계		170,800	-	-	-

자료: 회사 제시

거시적인 경제 변화로 인한 금리 상승은 금융비용 증가를 야기하며, 회사의 대출금은 변동금리로 조달 예정인 바, 변동금리 적용 시점의 거시 경제 변화로 인한 금리 상승은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가 투자한 일부 투자법인들은 변동 금리부 선순위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위채무와 관련된 조건에 따르면, 해당 투자법인들은 주주배당이나, 후순위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전에 선순위채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러한 투자법인들은 선순위채무에 대해 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회사에 배당형태로 지급되는 금액이나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의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편, 2024년 9월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였으며, 2024년 10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3년 2개월 만의 방향 전환으로 향후 국내 기준금리가 추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기적인 금리 상승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는 시장 금리 변동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선/후순위대출 만기 시점 도래 전 기존 대주와의 선/후순위대출 연장 또는 조기 리파이낸싱 등 금리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5) 신용위험(부도위험)

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부채총계는 약 1,824억원으로, 이 중 미지급배당금, 미지급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 차입부채는 1,708억원입니다.

회사의 차입 조달 능력은 대출 만기 시점의 회사의 신용도, 정부의 인프라 자산 관련 정책, 회사의 투자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현재 차입금 규모와 예상 차입 규모 및 미래 투자법인들로부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등을 고려 시 회사의 재무 유동성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기 시점에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 등에 의해 시장 유동성이 부족해져 차환이 불가능하거나 신규 차입 조달이 어려울 경우 회사가 유동성 위험(신용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및 차입한도 추이]

(단위: 억원)

구분	상장 후 예상	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4년 6월 30일	2023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	2019년 12월 31일
총차입금(A)	1,708	1,708	608	608	608	608	-	-
자본금(주1)	8,651	7,531	7,531	7,571	7,657	8,403	8,418	8,347
차입한도(자본금*30%) (B)	2,595	2,259	2,259	2,271	2,297	2,521	2,525	2,504
잔여차입한도(B)-(A)	887	551	1,651	1,663	1,689	1,913	2,525	2,504

(주1) 상장 후 예상 자본금은 금번 상장 시 조달 자금 1,138억원 중 주식발행 관련 제비용 약 18억원을 차감한 1,120억원을 자본에 계상할 경

유의 금액을 기재

(출처 : 각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회사 제시 자료)

(6) 배당 재원 부족에 따른 위험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의 투융자회사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투자회사이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투자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배당금만큼의 소득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지급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회사는 설립 이후 2023년 말까지 모든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 총액만큼을 배당으로 지급해왔으며, 향후에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여 소득금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신규자산 투자시 취득자금 일부를 차입 조달할 수 있으며, 차입금의 증가는 자산취득을 통한 수익(현금흐름) 창출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리가 변동될 경우 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이익 및 배당 가능 재원이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는 후순위 대출금 및 보유 지분 등 투자자산에서 창출되는 이자수익 및 배당수익을 주요 배당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의 사업계획 상 목표 배당수익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기 예상 배당금액 및 예상 배당률은 각 사업계획 상 회사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반사항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배당금액 및 예상 배당수익률은 이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인프라 자산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거시경제 충격으로 인한 투자 법인 현금흐름이 영향을 받을 경우 배당 수익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상 (예상) 주당배당금 및 배당수익률]

(단위 : 원,%)

사업연도	주당배당금	배당수익률
36기(2024.01.01~2024.12.31)	625원	7.4%

사업연도	주당배당금	배당수익률
37기(2025.01.01~2025.12.31)	650원	7.7%
38기(2026.01.01~2026.12.31)	650원	7.7%
39기(2027.01.01~2027.12.31)	650원	7.7%

자료 : 회사 제공

주1) 공모가액 8,400원 기준 예상 연환산 배당수익률이며, 실제 배당금 및 배당수익률은 관련 법규, 세제, 조례, 회계기준(IFRS 포함) 등의 제도의 변경 및 해석, 시장상황 등에 의하여 실제 운용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사업계획상 예상목표배당수익률은 납입자본금 및 기간별 배당금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현재 편입자산 기준으로 투자원본상환 금액 재투자 가정 기준입니다.

주3) 36기 주당배당금은 상반기 기준 기지급(중간배당)한 주당분배금 3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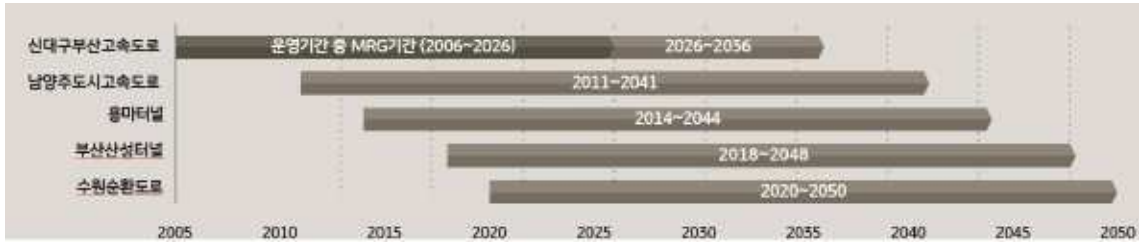
1. 사업위험

(1) 주무관청 및 기타 정부기관의 지급의무 미이행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총 5개의 사업시행법인(이하 "투자법인") 모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주무관청과 체결된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이 사업자에게 필요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해당 주무관청의 예산의 심의 또는 집행과정에서 정부당국의 정책, 주무관청의 재정상 어려움 또는 기타 이유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무관청 또는 기타 정부기관의 지급의무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법인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투자한 총 5개의 투자법인 모두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입니다.

[투자법인 사업시행/운영 및 재정지원 기간]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_투자자산 운영기간

(주1) 투자법인들은 관련 실시협약상, 투자법인 귀책사유, 정부 귀책사유, 그리고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업시행기간 종료 전에 실시협약이 해지될 때에 상당액의 해지시 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민간투자사업에서 실시협약은 각 계약당사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 중에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등의 지급의무에 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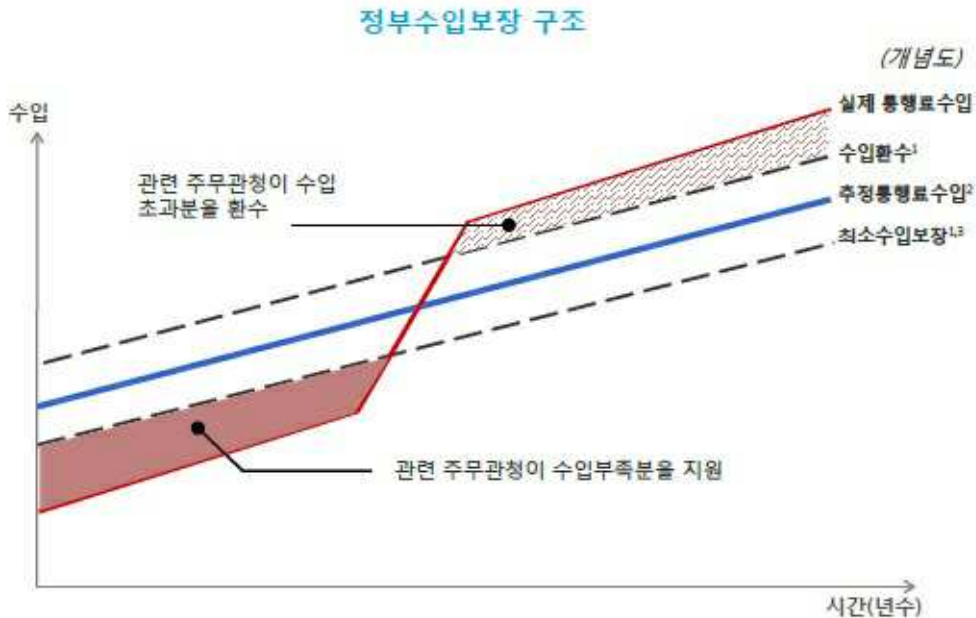
[주무관청등의 지급의무 예시]

구분	내용
최소운영수입보장 (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하 "MRG") 보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운영기간 동안 운영수입 실적이 당초 실시협약의 추정운영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시협약상 정해진 한도까지 주무관청이 부족분을 보전하여 주무관청이 시장위험을 일부 부담합니다. - 과거 민간투자자 유치, 외부차입금 조달 지원, 운영초기 불확실성의 완화 등의 목적으로 실시협약에 MRG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당시에는 MRG 수준이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채무상환능력 판단의 기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정부는 현재 신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MRG 제도를 폐지하였고, MRG에 따른 보전금이 발생하고 있는 기존 사업의 사업조건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예: 자금재조달을 통한 이익공유, 사업재구조화 등). 다만, 이는 기존 사업시행자와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통행료미인상차액보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가 도로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통행료(이하 "협약통행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징수통행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징수통행료가 협약통행료보다 낮을 경우, 사업시행자의 수입이 하락한 만큼(예: 통행료차액 x 통행대수 실적)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수입을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재구조화된 사업의 경우, 통행료미인상차액보전이 아닌 별도의 방식으로 사업자의 수입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재구조화 조건에 따른 자금제공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 재구조화 조건에 따라 MRG 또는 통행료미인상차액보전금이 아닌 다른 방식(예: 비용보전)으로 사업시행자가 수취해야 하는 부족액을 산정하여 주무관청이 보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해지시지급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사업이 중도 해지될 경우, 실시협약 및 해지사유에 따라 주무관청은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지사유,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요건 및 그 외 지급조건 등과 관련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분쟁이

구분	내용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감면금 및 주무관청의 요청에 따른 추가비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정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통행료 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 지역주민할인, 시내버스 할인, 친환경차 할인, 공휴일 통행료 면제 등). 이러한 감면금액 중 주무관청 또는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의 요청 또는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통행료 징수 방법 등이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전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실시협약 및 기타 약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inimum Revenue Guarantee : MRG)는 특정운영기간에 실제 운영수입이 당초 실시협약의 추정운영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정한도까지는 주무관청이 시장위험을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투자비 회수 가능성을 크게 제고하는 장치로서 시기별 및 사업별로 그 수준이 차등 적용되어, 각 사업의 MRG 수준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별 채무상환능력 판단의 기준으로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MRG 지급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정부는 2003년부터 보장기간 및 보장수준을 축소한 데 더하여, 2006년 민간제안사업, 2009년 정부고시사업에 대해 MRG를 폐지하였습니다.

【 정부수입보장 구조 】



정부수입보장구조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필요금액을 지급 해야하나, 해당 주무관청의 예산의 심의 또는 집행과정에서 정부당국의 정책, 주무관청의 재정상 어려움 또는 기타 이유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무관청 또는 기타 정부기관의 지급의무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필요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투자법인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해당 투자법인의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력을 악화시키고, 회사가 해당 투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자 및 원금, 배당금액이 줄어들어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법률 위험

회사가 투자한 총 5개의 투자법인 모두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 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투자법 등 회사와 회사의 사업을 규율하는 법률 환경이 변화되는 경우 회사의 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 1월 16일에 공포된 개정 유료도로법이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 중 도로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고, 이는 투자사업 중 민자도로사업의 비중이 큰 회사에 향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투자한 총 5개의 투자법인 모두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 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회사는 2006년 1월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며, 회사의 사업 역시 민간투자법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최저 순자산액은 민간투자법 제41조의2,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10억원 이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투융자회사는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로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사회는 독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회사의 이사회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법인이사)'와 '감독이사'로 구성되고, 2인 이상의 감독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사는 투자회사를 대표하면서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관련 규제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투융자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련법규
<p>「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p> <p>① 투융자회사의 자본금은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p> <p>② 투융자회사의 최저 순자산액은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p>
<p>「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p> <p>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p> <p>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p>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10억원</p> <p>2. 투융자회사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50억원</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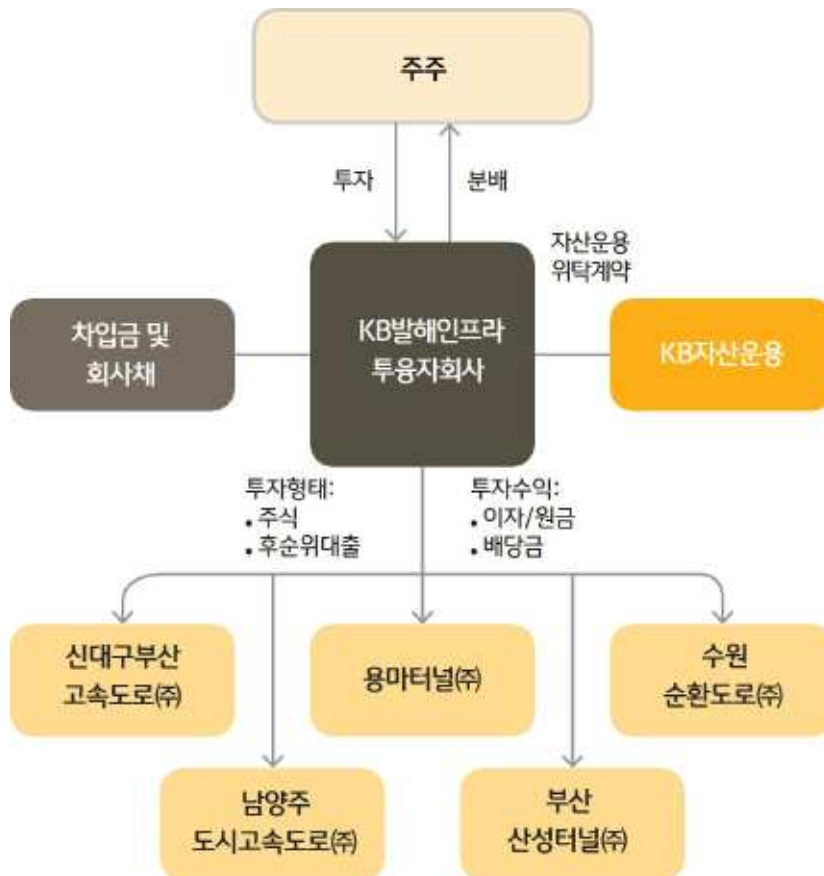
※ 관련법규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 또는 운영하는 법인 등에 출자, 용자 또는 해당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현재 유료도로(교량 및 터널 포함)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시행자에 대한 투자 등 민간투자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투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투자구조 】



투자구조

출처: 회사제시

또한,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3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 관련법규
<p>「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p> <p>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p> <p>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의한 투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p>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p> <p>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한편, 민간투자법 제44조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81조의 "자산운용의 제한" 규정은 회사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상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의 라. 투자제한 참고).

회사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준법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무관청에 의한 관련 법률 및 하위 규정의 불리한 해석, 관련 법률 및 규제의 변경, 신규법 제정 등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사의 법률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런 법률 환경의 변화가 회사 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은 특히 정부의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 중에도 정부의 세무관련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법령의 변경 및 해석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투자법인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에 투자한 투자회사의 대출채권이나 지분투자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유료도로법은 민간투자사업의 근거법인 민간투자법과 별도로 민간투자사업 중 도로사업에 대한 적용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민자도로의 중대한 사정 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유료도로법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한편으로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의 권한은 강화된 반면 사업자의 재량권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이 향후 회사의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무관청의 명령 및 처분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총 5개의 사업 모두 민간투자사업이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및 실시협약의 당사자로 감독·명령, 사업의 중도해지 및 공익처분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민간투자법상 명시된 제한적인 주무관청의 감독 및 명령 권한을 주무관청이 재량에 따라 폭넓게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최근 시행된 개정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하여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거나 주무관청의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무관청의 권한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비록 실시협약의 중도 해지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하도록 실시협약상 규정되어 있지만, 해지시지급금은 사업시행자의 채무이행, 다른 의무 수행 또는 회사 투자자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투자한 총 5개의 사업 모두 민간투자사업이며, 주무관청은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및 실시협약의 당사자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짐

니다.

구 분	내 용
감독·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법에 의해,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실시공 방지,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필수적인 유지관리 등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사유에 한정하여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간투자법 제45조). - 유료도로법상 주무관청은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제23조의2).
사업의 중도해지 및 공익처분, 실시협약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협약상 명시된 사업의 중도해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유료도로관리청은 일정한 경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제23조의5 제3항).
기타 권리	<p>상기 외에도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상 명기된 운영평가 및 관리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p>

민간투자법상 명시된 제한적인 주무관청의 권한을 주무관청이 재량에 따라 폭넓게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 일부 민간투자사업 시행법인에서는 주무관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 등을 진행한 사례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 회사위험의 (9) 소송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실시협약은 아래와 같은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항력의 사유 • 해당 사회기반시설 건설상의 결함 • 사업시행자의 파산 • 사업시행자의 해산 또는 청산관련 주주의 결의 • 사업시행자의 관련 법규, 실시협약, 정부의 명령에 대한 중대 위반 |
|----------------------------------------------------------------------------------------------------------------------------------------------------------------------------------------------------|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위한 처분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사회기반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비록 실시협약의 중도 해지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하도록 실시협약상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해지시지급금은 사업시행자의 채무이행, 다른 의무 수행 또는 회사 투자자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3조의5에 의하면 유료도로관리청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해당 민자도로 사업자가 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p>「유료도로법」 제23조의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p> <p>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교통량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2.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수입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3. 민자도로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민자도로사업자가 주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5. 도로의 종류 또는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 관련법규

6.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실시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주무관청의 통행료 인상 의무 미이행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5개의 유료도로 사업 관련,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여 혜택을 받는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징수통행료를 협약통행료에 맞추어 인상하는 것이 실시협약상 정의된 원칙이나, 주무관청의 장 또는 의사결정 기구의 결정에 따라 징수통행료가 협약통행료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징수통행료가 협약통행료보다 낮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징수 통행료와 협약통행료 간의 차액이 커질수록 주무관청이 징수통행료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이 증가할수록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분쟁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량 역시 유류비, 차량가격 및 차량유지비용, 인구증가, 자연재해의 발생, 운전을 어렵게 만드는 기상 조건,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환경관련 법규 및 규제, 일반적인 경제환경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동 사업시행자에 투자하는 회사의 수익성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투자한 5개의 유료도로 사업은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협약통행료를 징수하여 수입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는 바,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약통행료가 소비자물가상승에 따라 매년 변경되는 사업도 있고, 경상가격 기준으로 정해지는 사업 또한 있습니다.

협약통행료가 소비자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인상이 되었을 경우, 최종적으로 징수통행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이 별도로 요구됩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징수통행료를 협약통행료에 맞추어 인상하는 것이 실시협약상 정의된 원칙이나, 주무관청의 장 또는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에 따라 징수통행료가 협약통행료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주무관청의 통행료미인상차액보전금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며, 실제 통행량이 증가할수록 주무관청의 지급의무가 오히려 가중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징수통행료가 협약통행료보다 낮은 상태로 장기간 지속되어 징수통행료와 협약통행료간의 차액이 커질수록 주무관청이 징수통행료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이 증가할수록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분쟁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미인상차액보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보전금의 수령시점이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시점 이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입 및 현금흐름이 예측한 수준보다 낮아지고 사업시행자의 채무상환 및 이익배당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량 역시 유류비, 차량가격 및 차량유지비용, 인구증가, 자연재해의 발생, 운전을 어렵게 만드는 기상 조건,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환경관련 법규 및 규제, 일반적인 경제환경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동 사업시행자에 투자하는 회사의 수익성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경쟁 시설 신설 위험

회사가 투자한 유료도로 사업 중 현재 경쟁교통시설의 신설 가능성이 파악된 사업은 산성터널 및 용마터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경쟁도로 개통시 통행량 감소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실제 개통시 예상치 못한 교통량 하락 등으로 회사의 영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 중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및 수원순환도로(주)의 유료도로 실시협약은 경쟁도로의 신설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3개 투자법인은 경쟁도로 신설에 따른 보상이 실시협약 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보상 규모가 실시협약에서 규정하는 수준에 미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니 투자 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투자한 유료도로 사업 중 현재 경쟁교통시설의 신설 가능성이 파악된 사업은 산성터널 및 용마터널 사업입니다.

산성터널의 통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 교통 시설은 부산 만덕-센텀간 지하화 고속도로로 2019년 11월 착공하였습니다. 예상 준공 시기는 2026년 1월 경으로, 이는 산성터널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이내에 있습니다.

한편, 용마터널의 통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 교통 시설은 왕숙 지구 광역 개선 대책에 따른 수석대교 정도이나, 아직 착공 및 준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대략 2030년경 준공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용마터널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이내에 있습니다.

경쟁도로가 개통될 경우 회사가 투자한 위 유료도로의 통행량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 중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및 수원순환도로(주)의 유료도로 실시협약은 경쟁도로의 신설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3개 투자법인은 경쟁도로 신설에 따른 보상이 실시협약 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및 수원순환도로(주) 역시 실시협약상 보상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주무관청과의 사이에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성터널 및 용마터널의 경쟁 교통시설 개통 시 각 도로의 통행량 감소에 따른 재무적 영향은 회사에서 이미 분석 및 파악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교통량 하락 등으로 회사의 영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및 수원순환도로(주)의 경쟁도로가 개통될 경우, 경쟁도로의 개통과 관련한 실시협약상의 보상조항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의 해석에 대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경쟁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량 감소의 효과가 완전히 보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이 대상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 수리 또는 관리를 위해 소요하는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은 당초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 금액이 당초 추정치를 상회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은 회사가 사업시행자에 제공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투자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들의 경우,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은 사업시행자가 채무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시행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와 관련 정부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해지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들께서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7) 업무 위탁 관련 위험

회사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민간투자법 규정에 따라 자산을 운용, 관리하며, 향후에도 집합투자업 인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 인가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다른 집합투자업자를 선임해

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관리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의존합니다.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 인가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 ①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회사등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은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업무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는 그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수행한다.
-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 ⑥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1.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
 2.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 관련법규

- 3.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 4.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개최·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
 - 5. 그 밖에 투자회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⑦ 투자회사등은 상근임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민간투자법 규정에 따라 자산을 운용, 관리하며, 이에 향후에도 집합투자업 인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 인가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다른 집합투자업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현재 KB자산운용(주)는 회사의 집합투자업자이고, 농협은행(주)는 회사와 자산보관 위탁계약을 맺은 신탁업자이며, (주)KB펀드파트너스는 회사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이며, KB증권(주), 키움증권(주), 대신증권(주)는 판매회사입니다. 회사는 회사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판매회사(이하 "업무수탁자")를 통제하지 않으며 업무수탁자의 이사나 직원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업무수탁자 각각과 맺은 계약에 의해서만 업무수탁자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업무수탁자가 자신의 사업정책, 인사, 업무수행에 대해 내리는 결정들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에 실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수탁자가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 업무수탁자가 사임하거나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신속하게 만족스러운 후임자를 지명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는 회사의 투자 활동, 자산 운용, 자금 관리 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2. 회사 위험

(1) 투자법인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법인들은 회사를 포함한 대주단에게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각 투자법인이 채무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투자법인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법인이 관련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수리 또는 관리를 위해 소요하는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이 당초 추정치보다 클 수 있으며, 이런 추가적인 비용은 투자법인의 현금흐름 및 회사의 투자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법인의 현금흐름이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에 영향을 받아 악화되거나, 기타 차입계약조건을 불이행하게 될 경우 투자법인은 채무 전체 혹은 일부를 재조달하거나 추가적인 조달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금재조달이나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그 투자법인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된 채권자들이 투자법인의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이러한 투자법인에 대한 회사의 투자자산 가치가 하락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의 현금흐름 창출 능력, 채무상환 및 이익배당 능력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에게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법인들은 회사를 포함한 대주단에게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각 투자법인이 채무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투자법인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법인이 관련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수리 또는 관리를 위해 소요하는 운영비용 및 자본지출액이 당초 추정치보다 클 수 있으며, 이런 추가적인 비용은 투자법인의 현금흐름 및 회사의 투자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법인들은 채무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후순위 채무에 대한 이차지급이나 주주배당 이전에 기한이 도래한 선순위 채무에 대해 이차 및 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투자법인들은 필요 시 부채상환적립계좌를 적립하며, 후순위 원리금 지급 또는

주주배당에 대해 추가적인 제한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투자법인들은 변동금리로 조달한 선순위 채무에 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회사가 지급받을 이자 및 원금 혹은 배당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법인의 현금흐름이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에 영향을 받아 악화되거나, 기타 차입계약조건을 불이행하게 될 경우 투자법인은 채무 전체 혹은 일부를 재조달하거나 추가적인 조달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금재조달이나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그 투자법인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된 채권자들이 투자법인의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이러한 투자법인에 대한 회사의 투자자산 가치가 하락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의 현금흐름 창출 능력, 채무상환 및 이익배당 능력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투자한 사업 중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약정, 재무구조 및 사업의 특성상 운영기간이 경과할수록 실제 운영실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투자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후순위대출과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금액 및 투자수익의 회수가능성은 높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회사가 투자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기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기간]

(기준일 : 2024년 6월 30일)

(단위 : 년)

투자시설명	주무관청	사업시행기간	운영기간 종료일	잔존 사업시행기간
대구-부산간고속도로	국토교통부	30.0	2036년 2월 11일	11.7
수석-호평간도로	남양주시	30.0	2041년 8월 31일	17.2
용마터널	서울특별시	30.0	2044년 11월 30일	20.5
산성터널	부산광역시	30.0	2048년 9월 30일	24.3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수원시	30.0	2050년 9월 20일	26.2

한편, 회사의 투자법인인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는 2021년 6월 선순위차입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실시하여, 기존 5.40%였던 1,079억원 규모의 선순위차입금 이자율을 고정금리 2.77% 수준으로 1,116억원 조달함으로써 현금흐름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또한 부산산성터널(주) 역시 2021년 12월 선순위차입금 리파이낸싱을 통해, 기존 4.50%였던 1,544억원 규모의 선순위차입금 이자율을 고정금리 3.02% 수준으로 1,612억원 조달하면서 현금흐름을 크게 개선시킨 바 있습니다.

2024년 6월 30일 현재 회사가 투자법인에게 실행한 투자자산 및 미수이자 장부가액은 총 8,370억원이며, 후순위대출 및 지분증권 투자가 각각 72.3%, 27.6%(총 투자자산의 장부가액 대비 비중)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회사는 2024년 08월 30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후순위대출채권 및 지분을 추가 취득 하였으며, 2024년 09월 30일 현재 회사가 투자법인에게 실행한 투자자산 및 미수이자 등의 장부가액은 9,799억원이며, 후순위대출 및 지분증권 투자가 각각 72.5%, 27.5%(총 투자자산의 장부가액 대비 비중)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투자자산 구성]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9월 30일		2024년 6월 30일		2023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31일	
	금액	비중(주1)	금액	비중(주1)	금액	비중(주1)	금액	비중(주1)	금액	비중(주1)
후순위대출	6,823	69.6%	6,050	72.3%	6,220	74.3%	3,907	47.3%	3,999	47.9%
지분증권	2,588	26.4%	2,312	27.6%	2,312	27.1%	4,337	52.6%	4,337	52.0%
미수이자등	388	4.0%	8	0.1%	7	0.1%	9	0.1%	12	0.1%
합계	9,799	100.0%	8,370	100.0%	8,538	100.0%	8,252	100.0%	8,348	100.0%

(주1) 비중은 각 자산별 총자산 대비 비중임

(주2) 2023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자산 재평가를 통해 지분증권 및 후순위대출 장부가액 조정

(주3) 2024년 9월 30일 기준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후순위대출채권 및 지분 추가 취득(2024.8.30)이 반영되어 있으며, 미수이자등에 투자자산 이자 수취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회사의 총 투자자산 중 상환순위가 열위한 후순위대출 및 지분증권이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어, 향후 회수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운영기간 내에 투자자산의 회수가
능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법인 관련 의사결정 영향력에 따른 위험

회사는 기투자한 **5개**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법인 또는 해당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
는 법인의 채무 및 지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투자
법인들의 경영에 대해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투자법
인 일부에는 다른 투자자들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다른 투자자들은
회사와 그 투자목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투자법인들의 영업, 배당, 이자지급, 기타 중요한 의사결
정에 대해 제한적인 영향력만 행사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기투자한 5개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
업시행법인 또는 해당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채무 및 지
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그러한 투자법인들의 경영에 대해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 투자법인들은 회사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
습니다. 이러한 투자법인들의 업무 수행, 전략, 정책 등에 대해 회사의 영향력이 제한
적이라는 점은 회사가 현금을 창출하고 분배금을 지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투자법인 일부에는 다른 투자자들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투
자자들은 회사와 그 투자목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해당 투자법인 내 의사결정이
필요한 안건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회사가 선임한 이사 또는 이사들을 통해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안건 결의에는 다른 주주 또는 다른 주주들이 선임한 이사들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투자법인들의 영업, 배당, 이자지급, 기타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제

한적인 영향력만 행사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법인 운영성과 관련 위험

도로 운영 사업시행자들의 수입은 실시협약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수입에 일부 의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 수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통행료는 관련 사업시행자와 정부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시협약상 도로 통행료는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통행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물가 상승률, 교통량 등과 같은 실시협약 외부 요인들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정부 당국은 향후에 통행료 인상을 제한하거나 사업재구조화 또는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의 유료도로 사업은 주무관청의 최소수입보장 여부, 보장 수준 대비 실제 운영 실적, 실시협약기간 대비 보장 기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교통량 및 통행료 수입에 영향을 받아 실적이 악화되어 후순위 이자 지급이 지연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영업 및 재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투자한 총 5개의 유료도로 사업 중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은 실시협약 상 최소운영수입보장과 통행료수입차액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로 운영 사업시행자들의 수입은 실시협약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수입에 일부 의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 수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통행료는 관련 사업시행자와 정부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시협약상 도로 통행료는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통행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물가 상승률, 교통량 등과 같은 실시협약 외부요인들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정부 당국은 향후에 통행료 인상을 제한하거나 사업재구조화 또는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량과 통행료수입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영향을 받습니다.

- 통행료
- 유류비
- 차량가격 및 차량유지비용
- 유료도로(교량 및 터널 포함)를 이용하는 차량의 종류
- 인구증가, 자동차 소유증가 및 운전가능 인구수의 증가
- 홍수, 지진, 산불과 같은 자연 재해의 발생
- 전염병, 전염병의 대유행(팬데믹) 등의 질병 발생에 따른 통행수요 감소
- 폭설, 안개, 비와 같이 운전을 어렵게 하거나 위험하게 만드는 기상 조건
-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와 같이 환경관련 법규
- 철도를 포함한 다른 경쟁관계에 있는 교통수단이나 다른 도로와 비교 시 유료도로의 질과 접근성
- 일정한 기간 중에 유료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차량 수에 대한 제한
- 일반적인 경제환경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 교통 증가율이 감소할 경우 회사의 수입증가를 감소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재정상태와 영업에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유료도로 사업은 주무관청의 최소수입보장(또는 재구조화에 따른 주무관청의 기타 보장을 포함하며 이하 본 문단에서 총칭하여 "보장") 여부, 보장 수준 대비 실제 운영 실적, 실시협약기간 대비 보장 기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분류의 특성 및 위험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무관청의 보장이 없는 사업**
 - 현재 주무관청의 보장이 없는 사업은 수석-호평간도로, 용마터널, 산성터널, 수원외곽순환(북부) 도로입니다.
동 4개 도로 사업은 매출 또는 비용 관련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주무관청 보장이 있고, 최소수입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운영실적으로 보전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시협약기간 도중 주무관청의 보장이 만료되는 사업**
 - 현재 주무관청 보장이 있고, 2021년도 실적 기준 최소수입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운영실적으로

보전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시협약기간 도중 주무관청의 보장이 만료되는 사업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주무관청이 제공하는 보전금은 해당 사업에서 비롯되는 회사 수익률 및 현금흐름의 하방보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운영실적이 큰 폭으로 향상되지 않는 이상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 보장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과거 보장기간 대비 수입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회사 수익률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보장기간 대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석-호평간도로를 운영하는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의 경우, 2021년까지 영업현금흐름이 전체 이자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하여 후순위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2021년 6월, 남양주도시고속도로의 선순위 차입금에 대한 재구조화를 진행하여 기존 고정금리 5.40%였던 1,079억원 규모의 선순위차입금 이자율을 고정금리 2.77% 수준으로 1,116억원 조달함으로써 현금흐름을 크게 개선시켰고, 2022년부터는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후순위 이자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양주도시고속도로(주)를 포함한 사업시행자들 모두, 상기 기재된 요인들로 인해 교통량 및 통행료 수입에 영향을 받아 실적이 악화되어 후순위 이자 지급이 지연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영업 및 재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종료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실시협약 상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자(한국도로공사)로부터 보전 받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조항이 존재하며, 2020년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인하된 요금분에 대해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통행료수입차액을 매분기 보전받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협약 상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분을 차기년도 주무관청 재정지원금에 반영하여 분기별로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이 중, 최소운영수입보장의 경우 2026년 2월에 종료 예정이며, 대구-부산간고속도로가 현재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최소운영수입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수입 보전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최소운영수입보장 종료시에는 수입 총금액이 이전 수준 대비 감소할 것으로

로 예상됩니다.

투자법인은 선순위대출 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라 **2025년 6월까지** 선순위 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 예정이나, 선순위대출 원리금 상환 계획이 지연되거나, 최소운영수입보장 기간 종료 이후 예측과 달리 통행료 수입이 저조한 경우 등 투자법인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에게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투자한 총 5개의 유료도로 사업 중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은 실시협약 상 최소운영수입보장과 통행료수입차액 등이 포함됩니다. 대구-부산간고속도로의 최종 실시협약 상 최소운영수입보장과 통행료수입차액 보전금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실시협약 상 재정지원금 관련 사항]

구분	내용
당사자	사업시행자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주무관청 : 국토교통부
통행료수입차액의 산정 및 차액보전금의 청구 (제44-1조 내지 제44-5조, 부록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분기의 실제 통행료수입과 추정통행료간 차액에 미오인식 손실보전금액 및 수납불일치 손실보전금액을 더한 값을 통행료수입차액으로 하여, 그에 따른 차액보전금을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에 청구함 - 주무관청이 지정한 자는 매 분기별 차액보전금을 당해 분기 종료 직후 월의 말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며, 주무관청이 지정한 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이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 - 지급기일 이내에 차액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적용함 - 밀양JCT 유출입 수입 중 전환교통량에 대한 수입을 제외한 교통량 수입은 2026년까지 차액보전금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통행료수입에 포함하여 처리함. 단,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한양울산고속도로가 전 구간 개통되지 전까지 2026년 이후 밀양JCT 유출입 수입 중 전환교통량에 대한 수입을 제외한 교통량 수입의 처리 방안을 협의함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차액보전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각각 별도로 체결할 수 있음
통행료수입 보장 및 환수 (제4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2월까지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추정교통량 × 기준협약통행료 × 77%)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보장하며, 실제 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80%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입의 일정비율을 국고로 환수 또는 기준협약통행료 인하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초과 90%이하 : 초과수입의 40% - 90%초과 100%이하 : 초과수입의 60% - 100%초과 110%이하 : 초과수입의 80% - 110%초과 : 초과수입의 100% - 정부는 통행료수입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재정지원과 통행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병행 검토함 - 정부의 요구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결정 또는 조정된 통행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감면을 할 경우 정부는 통행료 수입 감소분을 지급함 - 이때 초과분을 환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법인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잉여수익금을 다음 순서로 처리함:

구분	내용
	1. 정부가 재정지원 또는 차액보전하여야 할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에 총당 2. 주무관청이 통행료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또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행료 인하 또는 무상사용기간 단축 3. 국고환수

자료: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2020년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기존 요금을 인하하며, 인하분에 대해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통행료수입차액을 매 분기 보전받고 있으며, 실시협약 상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분을 차기년도 통행료수입차액 및 MRG에 반영하여 분기별로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수입 및 지출 구조도]



대구- 부산 차액보전금 지급구조도

(자료: 회사 제시)

대구-부산간고속도로는 실시협약 상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한국도로공사)로부터

보전 받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이 2026년 2월에 종료 예정이며, 대구-부산간고속도로가 현재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최소운영수입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수입 보전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최소운영수입보장 종료시에는 수입 총금액이 이전 수준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법인은 선순위대출 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라 2025년 6월까지 선순위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 예정이나, 선순위대출 원리금 상환 계획이 지연되거나, 최소운영수입 보장 기간 종료 이후 예측과 달리 통행료 수입이 저조한 경우 등 투자법인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구부산 - 현금흐름 추정결과(2024.7.1~2036.2.11)]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초현금	73,573	64,380	115,698	132,509	140,548	165,881	197,001
연차배당	-	-	-	-	-	-	(1,084)
배당 후 잔액(A)	73,573	64,380	115,698	132,509	140,548	165,881	195,917
영업현금흐름(B)	135,455	271,012	206,273	187,590	194,971	190,847	201,297
부채상환적립계정(DSRA) 인출(C)	1,643	26,616	2,478	2,478	2,478	2,478	2,478
선순위원리금 상환재원(D=A+B+C)	210,672	362,008	324,449	322,577	337,997	359,206	399,692
선순위차입금 이자지급	(2,122)	(909)	-	-	-	-	-
선순위차입금 원금상환	(48,505)	(48,505)	-	-	-	-	-
선순위 원리금 상환 후 잔액	160,044	312,593	324,449	322,577	337,997	359,206	399,692
부채상환적립계정(DSRA) 적립	-	(3,617)	-	-	-	-	-
후순위차입금 이자지급	(53,189)	(100,054)	(90,445)	(80,534)	(70,622)	(60,710)	(50,798)
후순위차입금 원금상환	(42,476)	(93,223)	(101,495)	(101,495)	(101,495)	(101,495)	(101,495)
기말현금	64,380	115,698	132,509	140,548	165,881	197,001	247,399

(단위: 백만원)

구분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기초현금	247,399	235,544	225,270	214,182	196,239	265,097	-
연차배당	(74,648)	(86,143)	(98,803)	(110,860)	(117,722)	-	-
배당 후 잔액(A)	172,751	149,401	126,467	103,322	78,516	265,097	-
영업현금흐름(B)	202,696	205,861	207,795	203,084	212,573	(13,395)	-
부채상환적립계정(DSRA) 인출(C)	2,478	2,478	2,478	2,478	26,613	-	-

선순위원리금 상환재원 (D=A+B+C)	377,925	357,740	336,740	308,884	317,702	251,701	-
선순위차입금 이자지급	-	-	-	-	-	-	-
선순위차입금 원금상환	-	-	-	-	-	-	-
선순위 원리금 상환 후 잔액	377,925	357,740	336,740	308,884	317,702	251,701	-
부채상환적립계정(DSRA) 적립	-	-	-	-	-	-	-
후순위차입금 이자지급	(40,886)	(30,974)	(21,063)	(11,151)	(1,858)	-	-
후순위차입금 원금상환	(101,495)	(101,495)	(101,495)	(101,495)	(50,747)	-	-
기말현금	235,544	225,270	214,182	196,239	265,097	251,701	-

자료: 회계법인 새길_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지분가치 평가보고서(2024.10.15)

(5) 분배금 지급 관련 위험

안정적인 주주의 투자수익을 유지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배당소득 공제(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대상이익에서 공제)를 위한 분배금 지급으로 인해 자금소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본시장법 및 정관에 의거 주주들에게 배당 또는 이익초과분배의 형태로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어, 주주의 투자수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분배금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분배금 지급을 대신하여 이익분배금의 범위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회사의 투자자산인 대출금 및 지분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배당수익, 원본상환금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발생한 유가증권평가손실 및 대출채권평가이익은 회사의 투자대상 중 하나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지분증권 및 후순위대출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진행하며 발생한 일시적인 평가이익이며, 평가이익을 제외한 이익 및 원본 전액을 배당하였습니다. 참고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로부터 수취하는 원리금은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위 평가 이후 후순위대출 이자로 인식하던 현금흐름 일부를 후순위대출 원금상환으로 변경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회계기준 변경 전 세무상 취득가 기준 원금에 해당하는 회수금액은 신규자산 투자 및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 예정

이며, 회계기준 변경 전 이익 대부분은 회계상 이익분배금과 함께 주주 배당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배당금은 결산 전 중간배당금으로, 배당 후 잔여현금 일부는 **2024년** 결산 배당금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예정입니다. 다만, 투자법인 현금 유입 지연이 지속될 경우 회사의 영업적, 재무적 악영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타 투자법인에 예상치 못한 부정적 이슈가 발생하여 이자수익의 현금흐름과 회계상 인식되는 이자수익 간 기간불일치 이슈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유동성 수요는 증대될 수 있으며 재무적 부담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주의 투자수익률 유지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배당소득공제(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대상이익에서 공제)를 위한 분배금 지급으로 인해 자금소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본시장법 및 정관에 의거 주주들에게 배당 또는 이익초과분배의 형태로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어, 주주의 투자수익률 유지를 위하여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분배금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분배금 지급을 대신하여 이익분배금의 범위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연도별 분배금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별 분배금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상반기 (36기)	2023년 (35기)	2022년		2021년	
			하반기 (34기)	상반기 (33기)	하반기 (32기)	상반기 (31기)
당기순이익	269	1,182	419	506	473	436
원본상환금	170	86	46	45	656	47
(회계기준 변경 전 원금)	40					
(회계기준 변경 전 이익)	129					
합계	438	1,268	465	551	1,129	483
배당금 총액	341	805	419	506	473	426

구분	2024년 상반기 (36기)	2023년 (35기)	2022년		2021년	
			하반기 (34기)	상반기 (33기)	하반기 (32기)	상반기 (31기)
주당 배당금(원)	300	707	368	445	416	375

(주1) 과거의 실적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2) 2023년말 기준 회계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주3) 배당금 총액 및 주당배당금은 회계기준 변경 전 원금 차감 후 산출되었습니다.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배당금은 회사의 투자자산인 대출금 및 지분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배당수익, 원본상환금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발생한 유가증권평가손실 및 대출채권평가이익은 회사의 투자대상 중 하나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지분증권 및 후순위대출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진행하며 발생한 일시적인 평가이익이며, 평가이익을 제외한 이익 및 원본 전액을 배당하였습니다. 참고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로부터 수취하는 원리금은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위 평가 이후 후순위대출 이자로 인식하던 현금흐름 일부를 후순위대출 원금상환으로 변경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회계기준 변경 전 세무상 취득가 기준 원금에 해당하는 회수금액은 신규자산 투자 및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 예정이며, 회계기준 변경 전 이익 대부분은 회계상 이익분배금과 함께 주주 배당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배당금은 결산 전 중간배당금으로, 배당 후 잔여현금 일부는 2024년 결산 배당금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예정입니다.

[회사 손익 구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반기	2023년	2022년	2021년
운용수익	31,245	329,167	100,720	97,833
이자수익	31,245	88,951	100,720	97,813
기타수익	-	240,216	-	20

구분	2024년 반기	2023년	2022년	2021년
운용비용	4,368	210,958	8,228	6,860
이자비용	1,562	2,890	2,245	634
자산보관보수	80	157	160	178
자산운용보수	2,613	5,101	5,194	5,689
일반사무보수	80	157	160	178
판매보수	-	-	-	0
기타비용	32	169	470	181
유가증권평가손실	-	202,485	-	-
당기순이익	26,877	118,208	92,492	90,972

(주1) 회사는 2022년까지 반기 결산 법인이었으며, 2023년 부터 온기 결산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 표시 목적으로 각 사업연도별 실적으로 합산하여 1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상술한 바와 같이 2023년말 대구부산고속도로 관련 회계기준 변경 이후, 기존 후순위대출 이자로 인식 하던 현금흐름 일부를 후순위대출 원금상환으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2024년부터 운용수익이 감소하였으나, 실제 주주배당금은 변경 처리한 후순위 원금상환분 대부분을 합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출처 : 회사 제시 자료)

회사의 주요수익원인 이자수익 관련하여, 회계상 이자수익은 발생주의에 근거하여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예정된 시점에 회수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투자법인의 경우 현금 유입 지연에 대하여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바 실제 이자를 지급받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자수익의 현금흐름과 회계상 인식되는 이자수익 간 기간불일치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투자법인 현금 유입 지연이 지속될 경우 회사의 영업적, 재무적 악영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타 투자법인에 예상치 못한 부정적 이슈가 발생하여 이자수익의 현금흐름과 회계상 인식되는 이자수익 간 기간불일치 이슈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유동성 수요는 증대될 수 있으며 재무적 부담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6) 주무관청, 기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의 지급의무 관련 위험

실시협약에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필요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시협약에 근거하

여 주무관청은 사업자에게 필요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해당 주무관청의 예산의 심의 또는 집행과정에서 정부당국의 정책, 주무관청 재정상 어려움 또는 기타 이유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무관청 또는 기타 정부기관의 지급의무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필요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투자법인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투자법인의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력을 악화시키고, 회사가 해당 투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자 및 원금, 배당금액이 줄어들어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투자한 5개의 투자법인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주무관청과 체결된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은 각 계약당사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지급의무는 나. 특수위험 - (1) 사업위험 - (가) 주무관청 및 기타 정부기관의 지급의무 미이행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시협약에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필요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은 사업자에게 필요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해당 주무관청의 예산의 심의 또는 집행과정에서 정부당국의 정책, 주무관청 재정상 어려움 또는 기타 이유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무관청 또는 기타 정부기관의 지급의무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필요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투자법인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투자법인의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력을 악화시키고, 회사가 해당 투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자 및 원금, 배당금액이 줄어들어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투자한 5개의 투자법인 중 통행료수입차액 및 MRG 지급 거부 사례는 발생한 바 없습니다. 주무관청의 지급의무 미이행은 관련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바, 자세한 사항은 나. 특수위험 - (2) 회사위험 - (9) 소송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6월 30일 기준, 회사가 투자한 사업 중 주무관청과 체결한 실시협약상

재정지원 이행 의무가 유효한 사업들의 사업시행기간 및 주무관청의 재정지원 조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정지원 이행 의무가 유효한 투자사업들의 사업시행기간 및 주무관청의 재정지원 조건 현황]

(기준일 : 2024년 6월 30일)

(단위: 년)

투자시설명	주무관청	사업 시행기간	잔존 사업 시행 기간	재정지원 기간	잔존 재정지원기간	수입 보장기준(주1)	수입 환수기준(주1, 주2)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국토교통부	30.0	11.7	20.0	1.7	77%	80%

(주1) 실시협약 상 연간 추정 통행료수입에 대한 실제 통행료수입 비율(%)

(주2) 주무관청이 수입 초과분 환수

(7) 건설중인 자산 관련 위험

회사가 건설단계에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유료도로, 교량, 터널, 철도와 같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자연 재해, 설계 변경, 그리고 지역사회나 종교, 환경 단체와 같은 특수 이익집단의 반대 등의 잠재적인 위험이 뒤따릅니다.

비록 대다수 위험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시공사 또는 관련 정부에게 이전될 수 있으나, 이러한 위험들이 발생할 경우 공사지연, 수익 손실과 비용초과 등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투자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의 완공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자는 관련 정부 당국에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비록 시공사는 통상적으로 건설지연으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러한 배상은 사업시행자의 모든 의무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들은 건설지연으로 심각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건설단계에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유료도로, 교량, 터널, 철도와 같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자연 재해, 설계 변경, 그리고 지역사회나

중교, 환경 단체와 같은 특수 이익집단의 반대 등의 잠재적인 위험이 뒤따릅니다.

비록 대다수 위험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시공사 또는 관련 정부에게 이전될 수 있으나, 이러한 위험들이 발생할 경우 공사지연, 수익 손실과 비용초과 등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투자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회사가 투자한 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이 적기에 완성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는 수입 감소와 유지비용 증가, 그리고 공사 혹은 재공사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투자한 사회기반시설 모두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해당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보험금을 통해 그러한 손실이나 피해를 모두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통상적으로 그러한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선순위 대출기관에게 담보로서 질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의 완공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자는 관련 정부 당국에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비록 시공사는 통상적으로 건설지연으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러한 배상은 사업시행자의 모든 의무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들은 건설지연으로 심각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건설단계에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상장 이후 건설중인 투자자산을 편입할 경우 상기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위험요소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8) 차입금 관련 위험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1조의5 제1항에 따라 상장 후 자본금의 30%까지만 차입 또는 사채발행이 가능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차입 부채는 총 1,708억원(원금 기준)으로, 이는 사채 100억원 및 차입금 1,608

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차입부채 **1,708**억원은 자본금 대비 약 **22.7%** 수준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차입 또는 사채발행 한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적절한 재무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 자본금 규모가 약 **8,651**억원으로 증가 시 차입 또는 사채발행 한도가 증가한 자본금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신규자산 투자로 인해 차입부채가 차입한도까지 증가하거나 관계법령 변경으로 인한 차입 또는 사채발행 한도가 증가되는 경우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1조의5 제1항에 따라 상장 후 자본금의 30%까지만 차입 또는 사채발행이 가능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차입부채는 총 1,708억원(원금 기준)으로, 이는 사채 100억원 및 차입금 1,608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사는 2023년 사채 전액에 대해 상환기일 이전에 자금재조달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자를 5.3%로 1.45%p 인하하였습니다. 차입금은 만기 이후 전액 자금재조달 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5.2% 및 5.5%로 소폭 인상되었으나, 2024년 상반기 자금재조달하여 이자율을 4.5% 및 4.8%로 인하하였습니다.

[차입부채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권신고서 제출일현재	2024년 상반기 말	2023년 말	2022년 말	발행일/인출일	상환일/만기일	이자율
사채	제2회 무보증 사모	-	-	-	20,000	2022.10.31	2023.10.31	6.75%
	제3-1회 무보증 사모	-	10,000	10,000	-	2023.04.06	2024.10.06	5.30%
	제3-2회 무보증 사모	10,000	10,000	10,000	-	2023.04.06	2024.11.06	5.30%
차입금	키스플러스제이삼차(주)	-	-	-	40,800	2022.09.23	2023.04.06	4.95%
	슈퍼문레드(주)	-	-	20,000	-	2023.10.31	2024.05.02	5.50%
	뉴라이징제삼차(주)	-	-	20,800	-	2023.04.06	2024.04.05	5.20%
	슈퍼문레드(주)	20,000	20,000	-	-	2024.05.02	2024.11.04	4.50%
	뉴라이징제삼차(주)	20,800	20,800	-	-	2024.04.05	2025.04.04	4.80%
	스페이스레드(주)	30,000				2024.08.29	2024.11.29	3.77%
	스페이스레드(주)	90,000				2024.08.29	2025.02.28	3.77%
합계		170,800	60,800	60,800	60,800	-	-	-

주)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회사는 상장이후 신규자산 편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법에서 허용하는 한도에 맞추어 추가 차입 또는 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위한 공모 과정에서 신주발행을 통해 자본금 규모가 약 8,651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총 차입부채 1,708억원은 자본금 대비 약 22.7% 수준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차입 또는 사채발행 한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적절한 재무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 자본금 규모가 약 8,651억원으로 증가 시 차입 또는 사채발행 한도가 증가한 자본금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신규자산 투자로 인해 차입부채가 차입한도까지 증가하거나 관계 법령 변경으로 인한 차입 또는 사채발행 한도가 증가되는 경우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소송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 중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교통상황용역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사건, 관할 노동청의 시정지시 불이행과 관련한 행정사건(과태료),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사건 총 3건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① 2020년 2월 20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하도급 관계인 대보정보통신의 근로자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피고)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와 임금차액 확인 및 청구를 구한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②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2020년 3월 11일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 대상 근로자 220명을 직접고용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총액 22억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후 2020년 5월 20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

한 이의를 제기하여 1심이 계속 중입니다.

③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은 2019년 12월 11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파견근로자 220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지시하는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해당 시정지시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시정지시는 처분성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되었고, 관할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불이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검찰로 송치되어 2024년 5월 22일 공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에 추가적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투자법인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회사의 재무 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 중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교통상황용역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사건, 관할 노동청의 시정지시 불이행과 관련한 행정사건(과태료),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사건 총 3건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① 2020년 2월 20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하도급 관계인 대보정보통신의 근로자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피고)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와 임금차액 확인 및 청구를 구한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선행사건(대법원 2021다310484, 원고 양우주 외 125명)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접고용 의무는 모든 원고들에 대하여 인정되었으나 지급할 임금 차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각되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도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서 교통상황관리 및 순찰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에 회사에서 직접고용하였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직종이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은 선행사건과 유사하게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구 분	내 용
사건명	고용의사표시 등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가합10229
원고	손지형 외 25인
피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접수일	2020년 2월 20일
소송가액	근로자 지위를 구하는 동시에 임금차액분 13억원을 구하는 소송을 청구 중으로, 소송 중 소송인원 및 임금차액이 변경 될 수 있음
소송현황	2023년 4월 12일 선행사건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2024년 5월 2일 4회 변론기일이 속행되었으며, 2024년 7월 11일 5회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 음

②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2020년 3월 11일 불법과건으로 인한 직접고용 대상 근로자 220명을 직접고용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총액 22억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후 2020년 5월 20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1심이 계속 중입니다.

주요 쟁점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와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한 동우공영, 씨앤에스 자산관리, KR산업 및 대송 소속 근로자 220명에 대하여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직접고용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많은 169명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동우공영(통행료 수납업무)의 경우 직접고용 의무가 존재한다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반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의 감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법인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일상유지관리용역, 교통순찰용역)에 대하여는 아직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선순위금융약정상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 등을 명하는 판결 또는 명령이 확정되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가 6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구 분	내 용
사건명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구 분	내 용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20과11
과태료부과기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과태료 금액	22억원
접수일	2020년 5월 20일
소송현황	2023년 5월 24일 준비서면 제출 후 현재 기일 미지정

③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은 2019년 12월 11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파견근로자 220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지시하는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해당 시정지시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시정지시는 처분성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되었고, 관할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불이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검찰로 송치되어 2024년 5월 22일 공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르면,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판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에 법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벌금 3천만원이고, 그 금액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재정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중요도가 높은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대구-부산간고속도로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 분	내 용
사건명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번호	2021형제2963호
피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공소일	2024년 5월 22일
소송현황	2024년 5월 22일 공소장 접수 이후 공판기일 미정

이와 더불어, 향후 회사가 투자한 투자법인에 추가적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투자법인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회사의 재무

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0) 투자자금 조달 불확실성 위험

회사의 지속적인 투자자금 조달 및 집행은 추가적인 증자, 채권 발행 또는 차입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이러한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투자대안의 유효성, 시기, 그리고 규모 등의 사전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 내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② 민간투자법상 회사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회사 자본금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차입금의 사용목적은 투자 및 운영자금에 한합니다.
- ③ 매년 분배가능이익 또는 세무상 이익 중 더 큰 금액의 수준에서 분배하는 회사의 현 분배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면 투자집행을 위한 여유 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④ 시간적인 제약조건 내지는 발행조건 상 투자자의 수요부족으로 회사는 필요로 하는 물량의 주식이나 사채 발행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⑤ 시장여건이나 회사의 사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금조달에 실패할 경우 회사의 투자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속적인 투자자금 조달 및 집행은 추가적인 증자, 채권 발행 또는 차입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이러한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투자대안의 유효성, 시기, 그리고 규모 등의 사전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 내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② 민간투자법상 회사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회사 자본금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차입금의 사용목적은 투자 및 운영자금에 한합니다.

- ③ 매년 분배가능이익 또는 세무상 이익 중 더 큰 금액의 수준에서 분배하는 회사의 현 분배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면 투자집행을 위한 여유 자금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 ④ 시간적인 제약조건 내지는 발행조건 상 투자자의 수요부족으로 회사는 필요로 하는 물량의 주식이나 사채 발행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⑤ 시장여건이나 회사의 사업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금조달에 실패할 경우 회사의 투자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업자 변경 관련 위험

2022년 8월 29일에 추가로 개정된 회사와 집합투자업자간의 자산운용위탁 계약의 조항에 따라 회사는 **60일** 전 사전 서면통보에 따라 자산운용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회사가 집합투자업자의 해산, 계약의 중대한 위반, 관계법령 위반, 관련 수탁회사와의 업무협조 실패 등 업무 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가 **30일** 이상 지속되거나, 계약상 권리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인허가 등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받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 자산운용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해지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9일에 추가로 개정된 회사와 집합투자업자간의 자산운용위탁계약의 조항에 따라 회사는 60일 전 사전 서면통보에 따라 자산운용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가 집합투자업자의 해산, 계약의 중대한 위반, 관계법령 위반, 관련수탁회사와의 업무협조 실패 등 업무 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가 30일 이상 지속되거나, 계약상 권리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인허가 등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받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 자산운용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해지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회사의 합병 및 피흡수 합병 제한 관련 위험

자본시장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회사와 법인이사가 같은 다른 투자회사만 합병 또는 피합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합병할 수 있는 잠재적인 후보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합병 및 피흡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투자 포트폴리오 가치의 증대를 이루지 못하고, 관련 거래에 따른 주주의 투자가치 증대 기회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회사와 법인이사가 같은 다른 투자회사만 합병 또는 피합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합병할 수 있는 잠재적인 후보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합병 및 피흡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투자 포트폴리오 가치의 증대를 이루지 못하고, 관련 거래에 따른 주주의 투자가치 증대 기회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

(13) 회사의 존속기한 관련 위험

회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5개** 민간투자사업(대구-부산간고속도로, 수석-호평간도로, 용마터널, 산성터널,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에 투자하고 있으며, 실시협약에 따른 해당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시 사업

시행법인(SPC)이 소멸되는 구조이므로, 현재 투자자산 기준 회사는 2050년 이후 회사 정관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산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신규 투자를 통해 사업시행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존속기한은 마지막 사업시행법인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이후 해산될 수 있으나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5개 민간투자사업(대구-부산간고속도로, 수석-호평간도로, 용마터널, 산성터널,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에 투자하고 있으며, 실시협약에 따른 해당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시 사업시행법인(SPC)이 소멸되는 구조이므로, 현재 투자자산 기준 회사는 2050년 이후 회사 정관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산이 가능합니다.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기간]

(기준일 : 2024년 6월 30일)

(단위 : 년)

투자시설명	주무관청	사업시행기간	운영기간 종료일	잔존 사업시행기간
대구-부산간고속도로	국토교통부	30.0	2036년 2월 11일	11.7
수석-호평간도로	남양주시	30.0	2041년 8월 31일	17.2
용마터널	서울특별시	30.0	2044년 11월 30일	20.5
산성터널	부산광역시	30.0	2048년 9월 30일	24.3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수원시	30.0	2050년 9월 20일	26.2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정관 상 존립기간 및 해산 사유]

구분	내용
제57조(해산)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주총회의 의결 2.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금융위원회로부터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6. 회사의 모든 투자자산의 매각·회수 또는 처분 7. 기타 관계법령에서 이 회사의 해산사유로 정한 사유

구분	내용
	② 제1항의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다만,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는 경우 동 개정규정에 따른다)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2조(존립기간)	이 회사의 존립기간은 이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시까지로 한다.

자료: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정관(2024. 08. 14 개정)

회사가 신규 투자를 통해 사업시행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존속기한은 마지막 사업시행법인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이후 해산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4) 투자회사의 해산 관련 위험

투자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순자산액이 최저순자산액(50억원)에 미달하고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최저 순자산액 미달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금융위가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해산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순자산액이 최저순자산액(50억원)에 미달하고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최저 순자산액 미달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금융위가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해산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19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최저

※ 관련법규

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제 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② 발기인은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7. 그 투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최저액(이하 "최저순자산액"이라 한다)

다. 기타 투자위험

(1) 상장 이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 위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 주식의 가격은 국내 경기 상황, 인플레이션 및 금리 변동, 주식시장 수급 상황 및 국내외 경제, 정치, 사회적인 사건 등 외부 요인과 회사 관련 지표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상기한 요인 및 거래 부진 등의 사유에 따라 환금성이 낮을 수 있으며,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존재하오니,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지만, 본 기준가격과 유가증권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는 향후 회사 가치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판단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 및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투자매매·중개업자를 포함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지분 희석 및 주식가치 희석에 따른 위험

회사는 향후에도 신규 투자자산 취득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 이후에도 유상증자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입 한도가 존재하는 인프라투자회사의 특성 및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여야 하는 투자회사의 특성이 기인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지분 희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통하여 추가로 취득하는 투자자산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주식가치의 희석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지분 희석 및 주식가치의 희석화에 따른 위험을 미리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3) 이해관계 상충 관련 위험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의 발기인들에 의해 지명되었고 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용위탁계약에 따라 임무를 수행합니다. **KB자산운용(주)**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법인이사로 선출되었으며, 동법과 회사의 정관규정 및 자산운용위탁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결이 어려운 이해 상충 관련 상황이나 그에게 주어진 특정한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회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대상 선정 관련 위험

회사의 집합투자업자인 **KB자산운용(주)**는 동사 내규에 의하여 투자대상 자산 선정시 자체적 투자심의기구인 대체투자위원회를 통해 투자 수익성,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점검 등 주요 사항을 검토하고 투자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 자산편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실제 투자 이후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상한 투자 수익성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5) 신규 사업에 대한 경쟁 심화 관련 위험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하는 사업시행자에 투자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 다른 컨소시엄 및 회사와 경쟁을 합니다. 대형 건설사와 금융 투자자 등이 포함된 경쟁자들은 사업에 입찰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풍부한 금융재원을 가지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조건들을 걸고서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으로 인해 회사는 사업시행자에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회사가 과거에 획득했던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의 경쟁자의 일부는 회사가 자산운용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운용보수와 같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추가적인 사업시행자에 투자하지 못하거나 유리하지 않은 조건 하에서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회사는 사업을 성장시키는 전략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회사의 투자목적을 실현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들에게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규정 혹은 협약의 불이행에 의한 법적 제재 관련 위험

사업시행자들이 관련 규정이나 실시협약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들은 벌금 등의 법적 제재를 당하거나 더 나아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모든 투자는 정부기관에 의한 규제를 받는 사업시행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들은 그 해석이나 구속력에 대한 논쟁이 생길 수 있는 일반적으로 매우 복잡한 정부 허가, 실시협약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들이 관련 규정들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따르지 못한다면, 이들은 벌금 등의 법적 제재를 당하거나 해당 사회기반시설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박탈 당할 수 있으며, 또는 이 두 가지 상황에 동시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정부와의 실시협약에 의거한 것인 바, 그 실시협약이 현금흐름과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사업시행자의 자산운용전략에 제약을 줄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실시협약은 일반적인 상업계약보다는 정부 쪽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는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는 실시협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지시지급금은 사업시행자의 채무이행, 다른 의무수행 또는 회사 투자자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정부가 가지는 계약상의 권리 이외에도 이러한 사업시행자들의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제와 정책을 변경하거나 강화하는데 있어 상당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인 면들을 고려하여 이 사업시행자들의 운영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자산 관련 불가항력 및 기타 위험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자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 또는 향후 운영하게 될 자산의 경우 인프라성 자산의 특성상 교통사고, 화재, 홍수,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인재에 속하는 테러 등의 위험, 설계나 공사의 결함, 경사도 예측 실패, 교량과 터널 붕괴, 도로 함몰, 노동 쟁의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사건들에 의해 방해 받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투자한 자산의 운영이 이러한 사유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거나 해당 사업시행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유지비와 복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투자한 모든 사업시행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를 제외한 전쟁, 테러 등의 불가항력적 위험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의하여 부보되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회사의 영업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에

는 회사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금으로 손실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가 가입한 보험청구액이 유료도로, 터널 등에 대한 설계, 공사, 유지의 하자나 또는 이로 인한 수입 감소와 비용 증가에 대한 손실보전을 하기에 충분할 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 투자자들에게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국가신용 관련 위험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권은 정부 당국에 의해 부여 받은 것이며, 관련 정부 당국이 고유의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실시협약 하의 사업시행자의 권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등의 특수한 위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자들의 영업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당국자에 의한 관련 법률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또는 법에 반하는 행동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자들에게서는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9) 대리인 및 이해상충위험

회사는 서류상 회사로 자산의 운용 및 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대리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 위탁회사들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나 역량부족과 업무 태만이 나타날 경우 회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독자적인 업무 및 이익창출 활동을 더 우선시 할 경우 회사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 집단소송 관련 위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의 합계 지분율이 총지분의 **0.01%** 이상이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관련 거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5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한 명 이상의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권 거래 관련 집단소송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추가적인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의 관심과 자원을 회사의 핵심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11) 소수주주권 관련 위험

본 공모 이후 회사 주식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국내 법에 의하면, 상장된 인프라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은 **(i)** 해당 인프라투자회사를 대리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ii)** 이사가 인프라투자회사의 정관, 관련 법률이나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은 **(x)** 인프라투자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y)**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의 해임이 인프라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이들에 대한 해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z)**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명령 또는 인프라투자회사의 사업이나 재정 상황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인의 선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주주와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회사 이사회가 결의한 전략의 시행을 방해할 경우 회사의 사업과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2) 상장 지연 또는 실패 관련 위험

공모 자금 납입일 이후 회사가 상장 신청 시 상장요건에 부합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보통주의 상장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 보통주의 유동성 및 시장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3) 미래 예측 관련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회사의 현재 예측을 토대로 한 미래 예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에 언급된 회사 사업 관련 위험 및 기타 요인들로 인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다양한 미래 예측에 대한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위험 및 기타 위험과 관련된 일부 기업정보공시는 그 특성상 예측에 불과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이나 위험이 하나

이상 현실화되는 경우, 실제결과는 과거 실적은 물론 추정치, 예상치와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래 예측 자료들은 본 증권신고서 기준일자 현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정보취득, 미래 사건 발생 등과 관계없이 미래 예측 자료를 갱신 또는 수정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이와 같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향후 회사 또는 회사 대리인이 제공하는 모든 미래 예측에 대한 내용에는 본 부문에 기재된 유의사항이 적용됩니다.

(14) 일반청약 배정 방식에 따른 위험

금번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에 있어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 대하여 비례배정 방식으로만 진행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 기타 고려사항

회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회사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운영기간이 중장기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류도로 자산은 비교적 독점적인 지위에 있어 경쟁 자산의 등장에 한계가

있으며 자산의 성격상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기대됩니다. 회사는 현재 회사가 투자한 5개의 사업 외에 추가적인 투자를 실행할 수 있으나 그 대상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정되므로 현금흐름의 변동성 측면에서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회사는 폐쇄형 펀드로서 회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므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와는 별개로 회사의 투자자는 회사 주식의 매매 시점에 따라 가격변동성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회사는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하는 보통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등급평가는 KB자산운용(주)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며, 외부평가 기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객관적인 등급평가는 아닌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은 다음 6단계로 구분됩니다.

투자위험 등급 (4) 등급 보통위험

회사가 투자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우 대체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며, 운영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용량의 증가 등에 따른 실적 개선 및 부채 감소로 인해 지속적인 현금흐름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의 향상은 회사의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인 바, 회사는 "안정적인 장기 현금흐름을 선호하는 투자자"를 적합한 투자자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KB자산운용(주)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등급	분류기준	국내 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주2)
1등급	매우 높은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등급	분류기준	국내 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주2)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상기 기준은 KB자산운용 내부기준으로 주로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를 가장 큰 리스크요인 사항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투자위험 분류 기준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 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 등급 이상), CP(A2- 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국내신용등급과 해외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 국내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신용등급만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시행세칙 [별표5] 35호 라목에 따라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5.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등급을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외국통화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할 수 있고, 환율위험에 대한 헤지가 이루어져 환율의 변동성이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환율위험이 위험등급에 이미 반영된 경우 등 등급 상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2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 ·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며, 개별펀드의 위험자산 투자비율은 운용전략 · 벤치마크(BM)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고, 그 경우 판매위탁계약 체결된 판매회사를 통하여 매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매입시 기준 가격은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이후 회사 주식의 매입 및 매도는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유가증권 매매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주식의 매매 가격은 거래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

주식의 유동성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매매에 따른 과세는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환매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회사(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순자산가치 총액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 건별 자산가치의 합계에서 회사의 부채 총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회사의 자산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지분투자과 대출채권,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포함합니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지분과 대출채권은 각각 취득원가와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자산가치의 경우, 순자산가치 총액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순자산가치 총액과 주당 순자산가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 및 향후 회사 가치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기간별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과 채권의 평가액이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순자산가치(NAV)(*) / 총발행주식수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산정
기준가격 공시시기	분기별 공시(민간투자법에 의해 매일 공시하는 의무는 면제)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에 포함

(*) 순자산가치(NAV) = 자산총계 - 부채총계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자산의 평가

현재 회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지침상 비상장주식의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채권의 경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대출채권	장부가액

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경우 2023년 12월 거래시점 공정가격을 반영

다만,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지분증권 및 대출채권의 경우 2023년 12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타 주주 및 제3자간 대규모 거래(지분증권 및 후순위대출)가 발생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또한 해당 거래가격을 공정가격으로 반영하고, 후순위대출은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재평가하여 공정가격으로 반영하는 것을 자산운용사 자산평가절차(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 따라 의결하였습니다.

(2)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

회사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담당임원(위원장), 집합 투자재산의 운용업무담당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되며(위원장 부재 시 해당 자산의 운용업무담당 임원이 대행),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매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거래 시 거래 증권회사가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외에 주식거래에 따른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	-	-	-	-	-
-	-	-	-	-	-
부과기준		-	-	-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관련 보수 및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 보수	(동종유형 총 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 · 비용	총 보수 · 비용(피투 자 집합투 자기구 보 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집합투자 기구 (클래스 해당없음)	0.65	-	0.02	0.02	0.69	-	-	0.69	0.69	-
	매분기		매분기	매분기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 보수	(동종유형 총 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 · 비용	총 보수 · 비용(피투 자 집합투 자기구 보 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지급시기	말일의 익영업일	-	말일의 익영업일	말일의 익영업일	-	해당없음	-	-	-	-

주1) 집합투자업자보수: 회사의 정관 및 자산운용위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회사는 회사의 투자운용에 대하여 운용보수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는 매년 각 분기가 종료되는 3월31일, 6월30일, 9월30일 그리고 12월31일을 기준으로 자산운용위탁계약서 상 계산방법에 의거하여 산정 및 지급되며, 약정보수는 별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주2) 수탁회사 보수는 자산보관회사 보수를 의미합니다.

주3) 회사는 집합투자자기구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 외에 별도의 종류(Classes)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동종유형 집합투자자기구 총 보수비용 비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4) 총보수 및 비용(피투자집합투자자기구 보수포함)의 경우, 회사는 재간접펀드가 아닌 바, 피투자 집합투자자기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총보수 및 비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의 내역으로 사무주관수수료, 인수수수료 및 성과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구분	수수료 수취인	수수료율 및 수취인별 비중
사무주관수수료	KB증권 주식회사	총 공모금액의 0.3% 중 100% (총 공모금액의 0.3%)
인수수수료	KB증권 주식회사	신주 공모금액의 1.0% 중 60% (신주 공모금액의 0.6%)
	키움증권 주식회사	신주 공모금액의 1.0% 중 25% (신주공모금액의 0.25%)
	대신증권 주식회사	신주 공모금액의 1.0% 중 15% (신주 공모금액의 0.15%)
성과수수료	KB증권 주식회사	신주 공모금액의 0.8% 한도 내 상장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인수단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에게
	키움증권 주식회사	

구분	수수료 수취인	수수료율 및 수취인별 비중
	대신증권 주식회사	차등 지급 가능

개정정관상 집합투자업자 등의 보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운용위탁계약

(1) 운용보수

- 보수 지급기준은 산정 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법령에 의한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에는 산정 기준일의 시가총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 계산일까지(“ 보수계산기간”) 누적하여 합산한 후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연 0.65%로 한다.

(2) 약정보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약정보수는 신규 투자약정액의 0.50%로 하되, 해당 투자약정액이 일백억원(₩10,000,000,000)을 넘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약정보수는 발생한 사업연도의 당기 및 차기 사업연도 동안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수탁회사가 회사에게 약정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10영업일 또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기간 내에 일시지급하기로 한다.

※ 회사의 자산운용위탁계약상 운용보수는 기본 운용보수 및 약정보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상기 기재한 것과 같습니다. 별도의 성과보수 혹은 매각에 따른 수수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자산보관위탁계약

보수 지급기준은 산정 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법령에 의한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동안 누적하여 합산한 후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연 0.02%로 한다.

3)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

보수 지급기준은 산정 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법령에 의한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동안 누적하여 합산한 후 보수계산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연 0.02%로 한다.

※ 약정보수를 제외한 각 보수계산기간은 분기 단위로 하며(단, 최초 보수는 각 계약기간의 개시일부터 해당 분기 말일까지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며, 최종 보수는 해당 분기의 초일부터 각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보수를 일할 계산한다), 계산기간 중 보수는 매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의 익영업일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회사가 회사 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회사의 해산
3. 위탁계약의 해지

4) 판매위탁계약

위탁자(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가 수탁자(판매회사)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참고로, 과거 본 펀드의 최근 보수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운용보수	6,743,385	6,816,971	5,688,908	5,193,630	5,100,754	2,613,090
수탁보수	252,877	255,636	177,908	159,804	156,946	80,403
사무관리보수	252,877	255,636	177,908	159,804	156,946	80,403
판매보수	152	1,027	221	-	-	-
합계	7,249,290	7,329,271	6,044,946	5,513,238	5,414,646	2,773,896

주) 판매보수의 경우 회사와 국민은행간 체결한 판매위탁계약서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매 신주발행금액의 0.01%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한 바 있으며, 2022년 이후 신주 미발행에 따라 별도의 판매보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기준지표	보수 산정방식	한도 (%)	산출 주기	지급 시기	지급내역 (직전 회계연도 기준,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순투자 가치 및 투자약정액	상기 나. 내용 참고	0.65	매분기	매분기말일의 익영업일	0.65	0.65	0.65	0.65

주1) 상기 한도(%) 0.65%는 운용보수율을 의미합니다.

주2) 직전 회계연도 기준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약정보수)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급내역에는 연율을 기재하였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회사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현금 또는 주식의 형태로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그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

한편, 회사는 자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서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당해 이익 배분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일자를 지급일로 지정하여 지급하며, 지급규모는 분배가능금액 내에서 결정합니다.

2023년 12월 자산재평가 이후 후순위대출 이자로 인식하던 현금흐름 일부를 후순위대출 원금상환으로 변경 회계 처리함에 따라, 기존 이익으로 인식했던 후순위대출원금 수취금액은 초과이익분배 형태로 배당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정관 상 이익분배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제55조 (이익분배 등)</p>	<p>① 이 회사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자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으로 분배하여야 한다.</p> <p>② 이 회사는 자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야 하며, 동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 일 현재 주주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이사회에서 정한 일자(“ 지급일 ”)까지 지급 하여야 한다. 지급일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일 현재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제8조에서 정한 최저순자산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 분배 가능금액 ”) 내에서 분배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그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이사회에서 금전의 분배를 결의하는 경우 동 결의에는 분배가능금액 및 그 산정방법, 실제 분배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분배가능금액은 당해 결산기말 현재 위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당해 금전분배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결산기 금전의 분배와는 별도로 필요에 따라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단, 이사회가 추가 분배가 필요하다고 결의하는 경우 추가 분배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수시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기준일을 정하고, 그 기준일 현재 주주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그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분배가능금액 내에서 금전을 분배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 금전의 분배를 결의하는 경우 지급시기는 당해 금전분배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p> <p>⑤ 이 회사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금전분배에 관한 계산서에 근거하여 이익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p>

자료: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정관(2024. 08. 14 개정)

회사가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게 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금전으로 환금한 후 동 자산으로 모든 비용 등을 지급한 후 청산감독인과 상의를 거쳐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불확정 채무 및 책임에 대한 적립을 마친 후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되, 분배되지 않는 부분은 현물로 주주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정관 상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제59조 (잔여재산의 분배)	회사가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회사 자산을 구성하는 투자는 금전으로 환금한 후 회사의 자산(직전 사업연도의 이익금과 자본금을 포함한다)으로 모든 비용 등을 지급하고 회사가 청산감독인과 상의를 거쳐서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불확정 채무 및 책임에 대한 적립을 마친 후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되, 그렇게 분배되지 않는 부분은 현물로 주주에게 분배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재산은 수차에 걸쳐 나누어 분배될 수 있다.

자료: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정관(2024. 08. 14 개정)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분배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사회 승인에 따라 연 2회 분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연간 배당실적]

(단위: 억원)

연도	납입액	원본상환액	이익분배액
2006	3,580	-	38
2007	3,220	-	203
2008	1,553	-	415
2009	450	-	570
2010	442	-	586
2011	719	-	551
2012	211	511	615
2013	-	-	497
2014	64	-	446
2015	225	-	416
2016	375	-	464
2017	64	2,317	1,049
2018	369	144	542
2019	47	-	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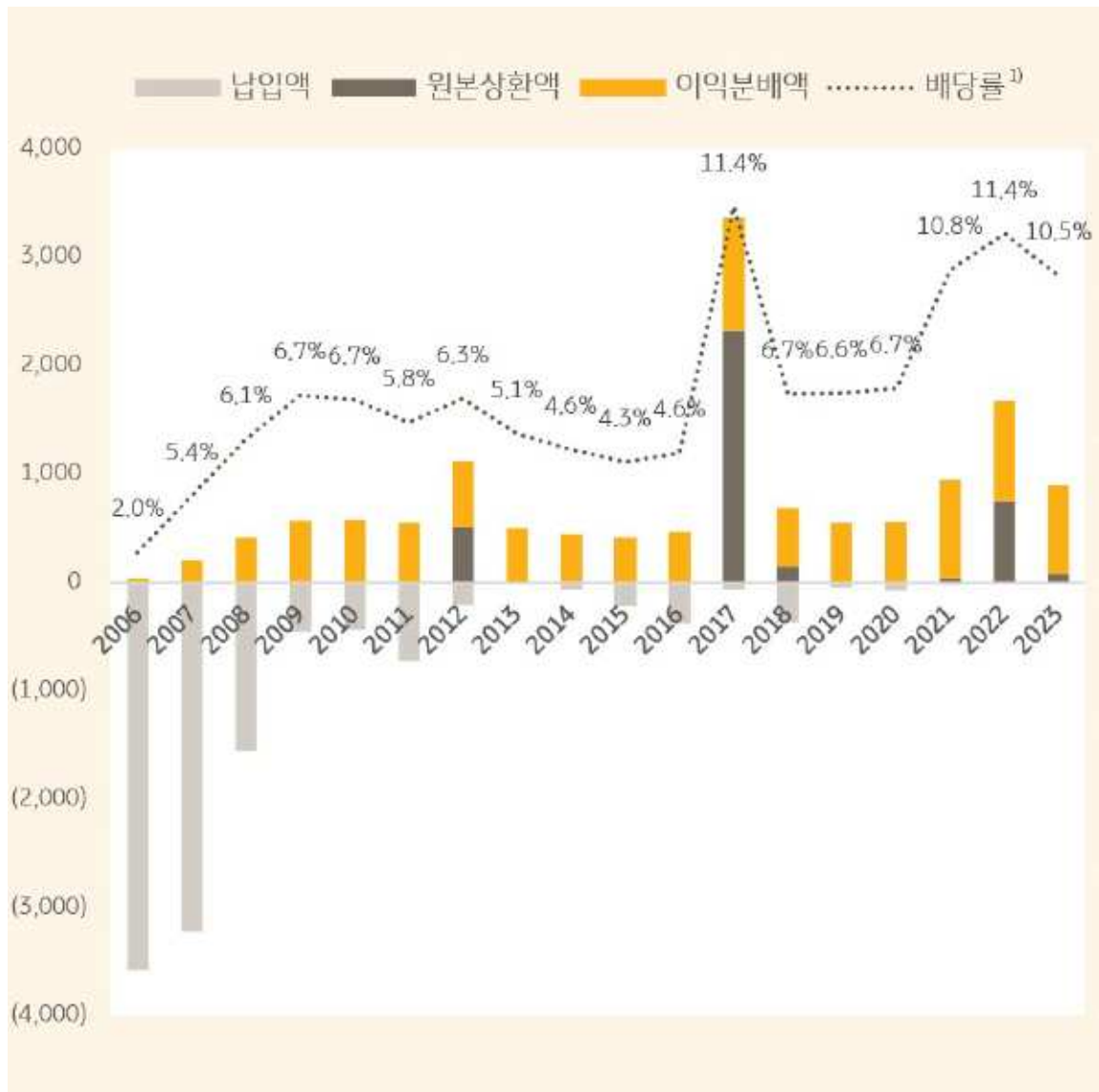
연도	납입액	원본상환액	이익분배액
2020	71	-	564
2021	22	37	910
2022	-	746	925
2023	-	86	805
2024 주)	-	40	341
합계	11,412	3,881	10,485

주) 2024년은 상반기 배당 실적을 기재하였으며, 원본상환액은 회계기준 변경 전 원금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료: 회사 제공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의 과거 배당실적]

(단위 : 억원, %)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_과거 배당실적

- 주1) 배당률은 해당기간의 이익배당금을 평균 자본금(각 반기별 기초 자본금의 평균)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중평균수익률이며, 과세 전 수익률입니다.
- 주2) 연도별 배당률에 관한 정보는 명시된 각 기간별로 산정한 배당률로 실제투자시점의 배당률과는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3) 회사의 과거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회사는 주주들에게 이익분배 또는 이익초과분배의 형태로 분배를 결의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익초과분배는 해당 회계기간 중 회계

상의 이익을 초과하여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분배금입니다. 그러한 이익초과분배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대출금에 대한 원금회수분 및 자금재조달(refinancing)을 통해 유입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국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배당소득공제를 위해 주주들에게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분배가능이익 중 큰 금액을 분배금으로 선언하고 지급할 계획이나, 이사회 결의 또는 회사의 향후 분배정책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배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절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추가로 필요시 회사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통해 주주들에게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 배당가능이익” 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 배당금액” 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 초과배당금액” 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1.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특정한 회계기간 중 비경상적인 비용발생으로 회사의 분배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된 경우, 회사는 주주들이 받게 될 현금분배금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주주들에게 이익초과분배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차입금 설정비용과 같이 비반복적이거나 일회성의 항목이 위에서 언급한 비경상적인 비용발생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회계기간 중 이익항목이 회사의 분배가능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해당 회계기간 중 이익의 일부를 분배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 회사는 특정한 회계기간 중 분배가능이익의 90%이하로 분배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분배정책은 회사의 적정 운용자금을 유지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분배가능이익의 실현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회사의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인 50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 기술한 바는 현재 회사의 분배정책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분배정책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예: 무분배의 선언 내지는 분배 축소). 분배에 대한 결의는 회사 이사회의 독자적인 권한이며 분배의 형태, 횟수, 금액 등은 회사의 이익,

재무상태, 영업성과, 계약상의 제약조건,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결정할 것입니다.

1) 연평균 수익률

기간	최근 6개월 (2024.01.01~2024.06.30)	최근 1년 (2023.07.01~2024.06.30)	최근 2년 (2022.07.01~2024.06.30)	최근 5년 (2019.07.01~2024.06.30)	설정일 이후 (2006.01.24~2024.06.30)
집합투자지구	9.02%	10.60%	10.23%	9.45%	6.99%

주1) 2024년 상반기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이익배당금을 기초 자본금으로 나눈 후 연환산한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주2) 그 외 기간의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이익배당금을 평균 자본금(각 반기별 기초 자본금의 평균)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중평균수익률입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과세 전 수익률이며, 명시된 각 기간별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투자시점의 수익률과는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간	제36기 반기 (2024.01.01~2024.06.30)	제35기 (2023.01.01~2023.12.31)	제33~34기 (2022.01.01~2022.12.31)	제31~32기 (2021.01.01~2021.12.31)	제29~30기 (2020.01.01~2020.12.31)
집합투자지구	9.02%	10.54%	11.44%	10.79%	6.74%

주1) 2024년 상반기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이익배당금을 기초 자본금으로 나눈 후 연환산한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주2) 그 외 기간의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이익배당금을 평균 자본금(각 반기별 기초 자본금의 평균)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중평균수익률입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과세 전 수익률이며, 명시된 각 기간별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투자시점의 수익률과는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예상 배당금

[사업계획상 (예상) 주당배당금 및 배당수익률]

(단위 : 원,%)

사업연도	주당배당금	배당수익률
36기(2024.01.01~2024.12.31)	625원	7.4%
37기(2025.01.01~2025.12.31)	650원	7.7%
38기(2026.01.01~2026.12.31)	650원	7.7%
39기(2027.01.01~2027.12.31)	650원	7.7%

자료 : 회사 제공

주1) 공모가액 8,400원 기준 예상 연환산 배당수익률이며, 실제 배당금 및 배당수익률은 관

련 법규, 세제, 조례, 회계기준(IFRS 포함) 등의 제도의 변경 및 해석, 시장상황 등에 의하여 실제 운용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사업계획상 예상목표배당수익률은 납입자본금 및 기간별 배당금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현재 편입자산 기준으로 투자원본상환 금액 재투자 가정 기준입니다.

주3) 36기 주당배당금은 상반기 기준 기지급(중간배당)한 주당분배금 3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과세

아래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투자회사 및 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적용되는 본문서 작성일 현재의 관련 세법 규정을 요약한 것으로, 투자자의 과세 문제에 관한 법률 또는 세무의견은 아니므로 회사에 투자할 것을 고려하는 투자자는 투자와 관련한 과세문제에 대하여 각자 전문가의 자문 및 조언을 구하여야 합니다.

(1)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회사는 법인세법상 내국영리법인으로서 9.9% 내지 23.1%(소득할 주민세 포함)의 일반법인 세율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을 가산·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당해 배당 금액은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에 공제(배당소득 공제)됩니다.

(2) 주주에 대한 과세

(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1) 개인주주

- 국내 거주자

거주자인 개인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

로 원천징수 됩니다. 한편, 개인투자자의 연간이자 및 배당소득(투자회사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포함)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개인투자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에 따라 투융자집합 투자기구전용계좌를 통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는 투자금액 1억원 한도에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12월 31일까지).

- 국내 비거주자

회사는 국내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세로 배당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가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2%와 당해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 비거주자는 회사에게 「소득세법」 제156조의6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거주지국의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를 배당금 지급일 이전에 회사를 비롯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주주

- 내국법인

내국법인 주주인 경우 배당금은 법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며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내국법인 주주가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법인

회사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당해 외국법인이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2%와 당해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 외국법인은 회사에게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거주지국의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를 배당금 지급일 이전에 회사를 비롯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1)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주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2%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한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22%와 당해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주주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상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거주지국의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를 배당금 지급일 이전에 회사를 비롯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주주가 당해 회사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11%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양도차익의 22%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며, 지방소득세 포함) 중 낮은 금액이 과세됩니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한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따라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조약상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상의 "비과세·면세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당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인 경우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조약에 의하여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국내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간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자 개인주주

[개인거주자가 2025년 1월 1일 전에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개인거주자의 경우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말합니다. 즉, 주주 1인과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i)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또는 그 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유한 주식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 주식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이상인 경우, 또는 (ii)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가 양도하는 경우와 장외에서 양도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투자회사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 그 외의 경우에는 22%(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 27.5%,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장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03%(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0%)의 증권거래세와 0.15%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장외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35%의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음)가 과세됩니다. 회사 주식 관련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경우 주식 양도의 경우와 유사하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3) 내국법인 주주

내국법인 주주는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연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9.9%~26.4%, 지방소득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내국법인인 주주가 받는 배당금액 및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고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증권거래세(주식양도거래에 부과되는 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03%(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이후에는 0%)의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0.1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므로 양도자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고자, 동법 제27조에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간투자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 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1명당 1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 전용계좌” 라 한다)만 가입할 것
 2.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것
 3. 전용계좌의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
- ②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금융투자소득 신설 및 개정안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 2020.12.29.)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었으며,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재개정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그 성격 및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아닌 거주자인 개인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현재 비과세되나,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2024년 7월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것으로 발표된 바 있으므로, 추후 확정되는 개정 세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과세방법, 세율 등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15. 발기인 ·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단위: 주, 천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주식수	금액	결격요건 해당여부
주식회사 국민은행	201-81-68693	126,050	1,260,500	해당사항 없음
국민연금관리공단	219-82-01593	126,050	1,260,500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20-82-00935	84,034	840,340	해당사항 없음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現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116-81-11757	84,034	840,340	해당사항 없음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現 DB손해보험 주식회사)	201-81-45593	84,034	840,340	해당사항 없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16-82-01445	84,034	840,340	해당사항 없음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104-81-26688	84,033	840,330	해당사항 없음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現 ABL생명보험 주식회사)	214-81-04337	84,033	840,330	해당사항 없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주식수	금액	결격요건 해당여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102-81-11097	42,017	420,170	해당사항 없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04-82-07072	42,017	420,170	해당사항 없음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104-81-18586	42,017	420,170	해당사항 없음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現 DB생명보험 주식회사)	202-81-18158	33,613	336,130	해당사항 없음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 (現 푸본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	108-81-60086	25,210	252,100	해당사항 없음
주식회사 경남은행	608-81-00555	16,807	168,070	해당사항 없음
대한소방공제회	215-82-00710	16,807	168,070	해당사항 없음
주식회사 부산은행	604-81-04753	16,807	168,070	해당사항 없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102-81-32035	8,403	84,030	해당사항 없음
합계	-	1,000,000	10,000,000	-

주) 소유주식수 및 금액은 설립시 기준

나.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회사는 정관 상 1인의 법인이사와 2인 이상의 감독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감독이사 선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보수	결격 여부
장창호	661019	- 現, 법무법인 청현 대표변호사 - 前, 동부건설(주) 사외이사 - 前,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 사법연수원 수료(29기)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2,400,000원	해당사항 없음
전주용	730426	- 現,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 前,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원 - 前, 미시간 대학교 경제학 박사 - 서울대 전기공학부 졸업	2,400,000원	해당사항 없음
고영경	711010	- 現,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교수 - 前,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산학연구단	2,400,000원	해당사항 없음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보수	결격 여부
		- 前,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박사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주) 보수지급액은 2024년 상반기까지 누적 지급된 보수액입니다.

다. 감독이사의 보수지급기준

회사는 정관상 감독이사=사 1인당 1억원을 한도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정관 상 이사의 보수 지급 기준]

구분	내용
제44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법인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없다. ②감독이사의 보수는 각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료: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정관(2024. 08. 14 개정)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연간 재무제표를 제외한 반기 재무제표상의 수치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 목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35기(2023.01.01~2023.12.31)	이지회계법인	적정
제34기(2022.07.01~2022.12.31)	이지회계법인	적정
제33기(2022.01.01~2022.06.30)	이지회계법인	적정
제32기(2021.07.01~2021.12.31)	이지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항 목	제36기 반기 추 (2024.06.30)	제35기 (2023.12.31)	제34기 (2022.12.31)	제33기 (2022.06.30)	제32기 (2021.12.31)
운용자산	844,169,037,806	868,192,467,890	834,998,357,798	888,007,355,445	871,035,320,701
기타자산	1,857,983,618	1,333,150,352	873,419,882	1,145,135,893	1,336,538,138
자산총계	846,027,021,424	869,525,618,242	835,871,777,680	889,152,491,338	872,371,858,839
부채총계	62,448,471,899	60,800,000,000	60,800,000,000	45,157,071,844	30,587,857,366
자본금	753,098,862,780	757,129,179,567	765,685,671,500	843,995,419,494	841,784,001,473
이익잉여금	30,479,686,745	37,730,885,797	-	-	-
자본총계	783,578,549,525	794,860,065,364	765,685,671,500	843,995,419,494	841,784,001,473
부채및자본총계	846,027,021,424	869,525,618,242	835,871,777,680	889,152,491,338	872,371,858,839
운용수익	31,245,121,22	329,166,717,768	46,601,986,492	46,791,452,795	32,425,398,438
운용비용	4,368,250,981	210,958,334,220	4,710,812,767	3,148,390,352	3,707,899,817
매매회전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주) 감사 전 자료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재무상태표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단위: 원)

과 목	제36기 반기 추 (2024.06.30)	제35기 (2023.12.31)	제34기 (2022.12.31)	제33기 (2022.06.30)	제32기 (2021.12.31)
자 산					
I. 운용자산	844,169,037,806	868,192,467,890	834,998,357,798	886,533,490,241	948,750,052,208
(1) 현금및예치금	7,964,336,713	15,039,850,721	10,669,061,523	57,579,631,531	115,224,100,379
1. 현금및현금성자산	7,964,336,713	15,039,850,721	10,669,061,523	57,579,631,531	115,224,100,379
(2) 유가증권	231,187,384,538	231,187,384,538	433,672,265,019	433,672,265,019	433,672,265,019
1. 지분증권	231,187,384,538	231,187,384,538	433,672,265,019	433,672,265,019	433,672,265,019
(3) 대출채권	605,017,316,555	621,965,232,631	390,657,031,256	395,281,593,691	399,853,686,810
1. 대출금	605,017,316,555	621,965,232,631	390,657,031,256	395,281,593,691	399,853,686,810
II. 기타자산	1,857,983,618	1,333,150,352	873,419,882	1,042,203,680	1,237,784,967
1. 미수이자	789,608,759	683,966,843	873,419,882	1,042,203,680	1,237,784,967
2. 선급이자	1,068,374,859	649,183,509	-	-	-
자산총계	846,027,021,424	869,525,618,242	835,871,777,680	887,575,693,921	949,987,837,175
부 채					
I. 차입부채	60,800,000,000	60,800,000,000	60,800,000,000	60,800,000,000	60,800,000,000
1. 사채	20,000,000,000	20,000,000,000	20,000,000,000	20,000,000,000	20,000,000,000
2. 차입금	40,800,000,000	40,800,000,000	40,800,000,000	40,800,000,000	40,800,000,000
II. 기타부채	1,648,471,899	13,865,552,878	9,386,106,180	52,019,961,721	48,865,185,397
1. 자산보관보수미지급금	40,490,810	40,116,268	40,178,598	40,586,860	43,916,707
2. 자산운용보수미지급금	1,315,952,753	1,303,780,087	1,305,805,921	1,319,074,388	1,427,294,557
3. 일반사무보수미지급금	40,490,810	40,116,268	40,178,598	40,586,860	43,916,707
4. 미지급이익분배금	-	12,221,359,151	7,763,104,425	50,600,335,541	47,329,125,637
5. 미지급이자	249,753,426	252,657,534	229,315,068	12,273,972	13,808,219
6. 기타미지급금	1,784,100	7,523,570	7,523,570	7,104,100	7,123,570
부채총계	62,448,471,899	74,665,552,878	70,186,106,180	112,819,961,721	109,665,185,397
자 본					
I. 자본금	753,098,862,780	757,129,179,567	765,685,671,500	774,755,732,200	840,322,651,778
1. 보통주자본금	753,098,862,780	757,129,179,567	765,685,671,500	774,755,732,200	840,322,651,778
II. 이익잉여금	30,479,686,745	37,730,885,797	-	-	-
1. 미처분이익잉여금	30,479,686,745	37,730,885,797	-	-	-
자본총계	783,578,549,525	794,860,065,364	765,685,671,500	774,755,732,200	840,322,651,778
부채와자본총계	846,027,021,424	869,525,618,242	835,871,777,680	887,575,693,921	949,987,837,175

주) 감사 전 자료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손익계산서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단위: 원)

과 목	제36기 반기 ㉔ (2024.01.01~ 2024.06.30)	제35기 (2023.01.01~ 2023.12.31)	제34기 (2022.07.01~ 2022.12.31)	제33기 (2022.01.01~ 2022.06.30)	제32기 (2021.07.01~ 2021.12.31)
I. 운용수익	31,245,121,229	329,166,717,768	46,601,986,492	54,117,798,745	51,041,087,810
1. 이자수익	31,245,121,229	88,950,951,490	46,601,986,492	54,117,798,745	51,041,087,810
2. 대출채권평가이익	-	240,215,766,278	-	-	-
II. 운용비용	4,368,250,981	210,958,334,220	4,710,812,767	3,517,463,204	3,711,962,173
1. 이자비용	1,562,199,335	2,890,279,503	1,529,594,520	715,864,109	634,303,561
2. 자산보관보수	80,402,693	156,946,096	79,542,695	80,261,126	86,833,135
3. 자산운용보수	2,613,090,360	5,100,753,694	2,585,140,474	2,608,489,533	2,822,079,862
4. 일반사무보수	80,402,693	156,946,096	79,542,695	80,261,126	86,833,135
5. 기타비용	32,155,900	168,528,350	436,992,383	32,587,310	81,912,480
6. 유가증권평가손실	-	202,484,880,481	-	-	-
III. 당기순이익	26,876,870,248	118,208,383,548	41,891,173,725	50,600,335,541	47,329,125,637
IV. 주당순이익	236	1,039	368	445	416

주) 감사 전 자료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자본변동표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단위: 원)

제36기 반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06월 30일까지 ㉔

제35기 반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과목	자본금	이익잉여금	총계
2023.01.01(전기 초)	765,685,671,500	-	765,685,671,500
당기순이익	-	39,861,405,006	39,861,405,003
현금분배금	(4,277,892,937)	(34,128,069,300)	(38,405,962,237)
(총발행주식수: 113,760,231주)			
(기준가격: 6,743.49원)			
2023.06.30(전반기 말)	761,407,778,563	5,733,335,703	767,141,114,266
2024.01.01(당기 초)	757,129,179,567	37,730,885,797	794,860,065,364
당기순이익	-	26,876,870,248	26,876,870,246
현금분배금	(4,030,316,787)	(34,128,069,300)	(38,158,386,087)
(총발행주식수: 113,760,231주)			

과목	자본금	이익잉여금	총계
(기준가격: 6,887.98원)			
2024.06.30(당반기 말)	753,098,862,780	30,479,686,745	783,578,549,525

주) 감사 전 자료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단위: 원)

제35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34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과목	자본금	이익잉여금	총계
2022.07.01(전기 초)	774,755,732,200		774,755,732,200
당기순이익		41,891,173,725	41,891,173,725
현금분배금	(9,070,060,700)	(41,891,173,725)	(50,961,234,425)
(총발행주식수: 113,760,231주)			
(기준가격: 6,730.70원)			
2022.12.31(전기 말)	765,685,671,500		765,685,671,500
2023.01.01(당기 초)	765,685,671,500		765,685,671,500
당기순이익		118,208,383,548	118,208,383,548
현금분배금	(8,556,491,933)	(80,477,497,751)	(89,033,989,684)
(총발행주식수: 113,760,231주)			
(기준가격: 6,987.15원)			
2023.12.31(당기 말)	757,129,179,567	37,730,885,797	794,860,065,364

마. 현금흐름표

과목	제36기 반기 추 (2024.01.01~ 2024.06.30)	제35기 (2023.01.01~ 2023.12.31)	제34기 (2022.07.01~ 2022.12.31)	제33기 (2022.01.01~ 2022.06.30)	제32기 (2021.07.01~ 2021.12.31)
I. 자산운용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3,304,231,230	88,946,524,156	46,887,895,533	55,251,576,367	51,966,210,394
1. 자산운용활동 현금유입액	48,087,395,389	98,047,969,432	51,395,332,725	58,885,473,151	55,656,122,208
가. 이자수입 유입액	30,709,377,321	63,291,933,292	34,017,314,655	41,507,455,082	38,278,104,138
나. 장기대여금의 회수	17,378,018,068	34,756,036,140	17,378,018,070	17,378,018,069	17,378,018,070
2. 자산운용활동 현금유출액	(4,783,164,159)	(9,101,445,276)	(4,507,437,192)	(3,633,896,784)	(3,689,911,814)
가. 자산운용보수 유출액	2,600,917,694	5,102,779,528	2,598,408,941	2,716,709,702	2,814,333,860
나. 자산보관보수 유출액	80,028,151	157,008,426	79,950,957	83,590,973	86,594,801
다. 일반사무보수 유출액	80,028,151	157,008,426	79,950,957	83,590,973	86,594,801

과 목	제36기 반기 추 (2024.01.01~ 2024.06.30)	제35기 (2023.01.01~ 2023.12.31)	제34기 (2022.07.01~ 2022.12.31)	제33기 (2022.01.01~ 2022.06.30)	제32기 (2021.07.01~ 2021.12.31)
라. 이자비용 유출액	1,984,294,793	3,516,120,546	1,312,553,424	717,398,356	620,495,342
마. 기타비용 유출액	37,895,370	168,528,350	436,572,913	32,606,780	81,893,010
Ⅱ.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0,379,745,238)	(84,575,734,958)	(93,798,465,541)	(112,896,045,215)	13,484,169,841
1. 재무활동 현금유입액	40,800,000,000	-	60,800,000,000	40,800,000,000	60,800,000,000
가. 사채의 발행	-	-	20,000,000,000	-	20,000,000,000
나. 차입금 유입액	40,800,000,000	-	40,800,000,000	40,800,000,000	40,800,000,000
2. 재무활동 현금유출액	(91,179,745,238)	(84,575,734,958)	(154,598,465,541)	(153,696,045,215)	(47,315,830,159)
가. 분배금 유출액	46,349,428,451	76,019,243,025	84,728,404,841	47,329,125,637	43,643,062,443
나. 초과이익분배금 지급	4,030,316,787	8,556,491,933	9,070,060,700	65,566,919,578	3,672,767,716
다. 사채의 상환액	-	-	20,000,000,000	-	-
라. 차입금 상환액	40,800,000,000	-	40,800,000,000	40,800,000,000	3,672,767,716
Ⅲ. 현금의 증가 (I+Ⅱ)	(7,075,514,008)	4,370,789,198	(46,910,570,008)	(57,644,468,848)	65,450,380,235
Ⅳ. 기초의 현금	15,039,850,721	10,669,061,523	57,579,631,531	115,224,100,379	49,773,720,144
Ⅴ. 기말의 현금	7,964,336,713	15,039,850,721	10,669,061,523	57,579,631,531	115,224,100,379

주) 감사 전 자료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주, 원)

기 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예상)		비 고
			설정(발행)		환매				
	주수 (출자 지분수)	금액	주수 (출자 지분수)	금액	주수 (출자 지분수)	금액	주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06년	1,000,000	10,000,000,000	34,591,375	348,000,000,000	-	-	35,591,375	358,000,000,000	
2007년	35,591,375	358,000,000,000	31,247,249	322,000,000,000	-	-	66,838,624	680,000,000,000	
2008년	66,838,624	680,000,000,000	14,961,010	155,300,000,000	-	-	81,799,634	835,300,000,000	
2009년	81,799,634	835,300,000,000	4,305,729	45,000,000,000	-	-	86,105,363	880,300,000,000	
2010년	86,105,363	880,300,000,000	4,225,163	44,200,000,000	-	-	90,330,526	924,500,000,000	
2011년	90,330,526	924,500,000,000	6,852,977	71,900,000,000	-	-	97,183,503	996,400,000,000	
2012년	97,183,503	996,400,000,000	2,119,520	21,100,000,000	-	-	99,303,023	1,017,500,000,000	
2013년	99,303,023	1,017,500,000,000	-	-	-	-	99,303,023	1,017,500,000,000	
2014년	99,303,023	1,017,500,000,000	656,930	6,400,000,000	-	-	99,959,953	1,023,900,000,000	
2015년	99,959,953	1,023,900,000,000	2,312,306	22,523,000,000	-	-	102,272,259	1,046,423,000,000	
2016년	102,272,259	1,046,423,000,000	3,849,349	37,500,000,000	-	-	106,121,608	1,083,923,000,000	
2017년	106,121,608	1,083,923,000,000	846,188	6,400,000,000	-	-	106,967,796	1,090,323,000,000	
2018년	106,967,796	1,090,323,000,000	4,910,603	36,853,000,000	-	-	111,878,399	1,127,176,000,000	
2019년	111,878,399	1,127,176,000,000	632,196	4,699,571,910	-	-	112,510,595	1,131,875,571,910	
2020년	112,510,595	1,131,875,571,910	953,564	7,089,022,804	-	-	113,464,159	1,138,964,594,714	
2021년	113,464,159	1,138,964,594,714	296,072	2,211,405,286	-	-	113,760,231	1,141,176,000,000	
2022년	113,760,231	1,141,176,000,000	-	-	-	-	113,760,231	1,141,176,000,000	
2023년	113,760,231	1,141,176,000,000	-	-	-	-	113,760,231	1,141,176,000,000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가. 출자지분의 총수

발행할 출자지분의 총수	발행한 출자지분의 총수	미발행출자지분의 총수
4,000,000,000주	113,760,231주	3,886,239,769주

나. 발행한 출자지분의 내용

(단위: 주, 원)

구분	종류	발행주식수	발행가액 총액	비고
회사 주식	무액면, 기명식	113,760,231	1,141,176,000,000	2024년 6월말 기준

주) 설립자본금을 포함한 증가 누적금액입니다.

2024년 6월말 기준 출자자별 주식 수 및 납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주주	주식의 종류	주식수	주당 발행가격 주)	납입금액
(주)국민은행	보통주	14,339,503	10,031	143,845,714,282
국민연금관리공단	보통주	14,339,503	10,031	143,845,714,28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통주	9,559,672	10,031	95,897,142,858
한화생명보험(주)	보통주	9,559,672	10,031	95,897,142,858
DB손해보험(주)	보통주	9,559,672	10,031	95,897,142,85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보통주	9,559,672	10,031	95,897,142,858
삼성생명보험(주)	보통주	9,559,672	10,031	95,897,142,858
ABL생명보험(주)	보통주	9,559,672	10,031	95,897,142,858
교보생명보험(주)	보통주	4,779,847	10,031	47,948,571,426
농협은행(주)	보통주	4,779,847	10,031	47,948,571,426
흥국생명보험(주)	보통주	4,779,847	10,031	47,948,571,426
DB생명보험(주)	보통주	3,823,885	10,031	38,358,857,143
푸본현대생명보험(주)	보통주	2,867,920	10,031	28,769,142,856
(주)경남은행	보통주	1,911,953	10,031	19,179,428,571

대한소방공제회	보통주	1,911,953	10,031	19,179,428,571
(주)부산은행	보통주	1,911,953	10,031	19,179,428,571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보통주	955,988	10,031	9,589,714,298
합계	-	113,760,231	-	1,141,176,000,000

주) 주당 발행가액은 출자자별 총 납입금액을 주식수로 나누어 기재하였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차입에 관한 사항

2024년 6월 30일 재무제표 기준 회사의 차입금은 총 608억원(원금 기준)이며 이는 고정금리 회사채 200억원 및 차입금 40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채 현황(2024.06.30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이자율	발행일	상환일	신용등급
제3-1회 무보증 사모사채	10,000,000,000	연 5.30%	2023-04-06	2024-10-06	AA-
제3-2회 무보증 사모사채	10,000,000,000	연 5.30%	2023-04-06	2024-11-06	AA-

회사는 2023년 04월 06일 제3-1회 무보증사채 100억원 및 제3-2회 무보증사채 100억원을 사모 방식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모든 사채의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됩니다.

(2) 차입금 현황(2024.06.30 기준)

(단위: 원)

구분	금액	이자율	약정일	만기일	비고
슈퍼문레드(주)	20,000,000,000	연 4.50%	2024-04-26	2024-11-04	-
뉴라이징제삼차(주)	20,800,000,000	연 4.80%	2024-04-03	2025-04-04	-

회사는 차입금 만기도래에 따라 2024년 04월 03일, 04월 26일 각각 새로운 차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차입금을 차환하였습니다. 회사는 신규 차입금에 대해 기한 전 상환할 수 없으며 만기에 일시상환됩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기간	최근 6개월 (2024.01.01~2024.06.30)	최근 1년 (2023.07.01~2024.06.30)	최근 2년 (2022.07.01~2024.06.30)	최근 5년 (2019.07.01~2024.06.30)	설정일 이후 (2006.01.24~2024.06.30)
집합투자기구	9.02%	10.60%	10.23%	9.45%	6.99%

주1) 2024년 상반기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이익배당금을 기초 자본금으로 나눈 후 연환산한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주2) 그 외 기간의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이익배당금을 평균 자본금(각 반기별 기초 자본금의 평균)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중평균수익률입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과세 전 수익률이며, 명시된 각 기간별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투자시점의 수익률과는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간	제36기 반기 (2024.01.01~2024.06.30)	제35기 (2023.01.01~2023.12.31)	제33~34기 (2022.01.01~2022.12.31)	제31~32기 (2021.01.01~2021.12.31)	제29~30기 (2020.01.01~2020.12.31)
집합투자기구	9.02%	10.54%	11.44%	10.79%	6.74%

주1) 2024년 상반기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이익배당금을 기초 자본금으로 나눈 후 연환산한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주2) 그 외 기간의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이익배당금을 평균 자본금(각 반기별 기초 자본금의 평균)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중평균수익률입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과세 전 수익률이며, 명시된 각 기간별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투자시점의 수익률과는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4년 6월 30일 기준 회사의 투자자산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지분투자과 대출채권, 현금 및 현금성자산, 그리고 기타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통화별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예금	대출채권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국내	231,187 (26.6%)	-	-	-	-	-	-	-	-	15,040 (1.7%)	621,965 (71.5%)	1,333 (0.2%)	869,526 (100.0%)
국외	-	-	-	-	-	-	-	-	-	-	-	-	-
합계	231,187 (26.6%)	-	-	-	-	-	-	-	-	15,040 (1.7%)	621,965 (71.5%)	1,333 (0.2%)	869,526 (100.0%)

주)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구분	내용
회사명	KB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02-2167-8200)
주요 연혁	1988.04.28 국민투자자문 설립(모회사 국민투자신탁 지분 100%) 1992.12.07 대주주 변경(국민투자신탁 → (주)주택은행) 1992.12.09 '국민투자자문'에서 '주은투자자문(주)'로 사명변경 1997.05.20 납입자본금 300억원으로 증자, 투자일임매매업 인가 취득 1997.07.29 투자신탁운용업 허가 취득 1997.08.28 '주은투자자문(주)'에서 '주은투자신탁운용(주)'로 사명변경 1997.08.28 투자신탁운용업 개시 2000.01.11 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 지분참여(20%) 2000.06.30 자본금 83억 증자 2002.06.10 '주은투자신탁운용(주)'에서 '국민투자신탁운용(주)'로 사명변경 2004.04.29 '국민투자신탁운용(주)'에서 'KB자산운용(주)'로 사명변경 2008.09.29 대주주 변경((주)국민은행 → (주)KB금융지주)
자본금	38,337,750,000원 (2023년 12월말 기준)
주요 주주	(주)KB금융지주 100%
투자신탁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주)KB펀드파트너스 (계열회사) 판매회사: KB증권(주) (계열회사)

나. 주요 업무

구분	주요 내용
업무범위	1. 회사의 투자기회 및 회수기회를 발굴, 평가하고 실행하는 업무 (“회사”를 대리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 투자자산으로부터의 수입의 회수, 자산의 가치보존, 자산의 평가 등 투자자산의 제반 사후관리 업무 3. 투자사업체에 임직원을 추천하고 동 임직원이 임명되도록 하는 업무 4. 투자사업체에 보유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업무 5. 투자사업체의 경영계획 및 자본조달계획의 실행, 사업개발 및 유지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업무 6. 회사가 법률 등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 회계 및 보고사항에 참여하는 업무(다만, 관계법령 및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상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는 제외) 7.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투자를 비롯한 자산의 평가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8. 회사의 자산운용 및 투자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주주들에게 결산보고서 및 기타 법령상 필요한 보고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주들과의 관계 및 의사소통을 관리하

구분	주요 내용
	<p>는 업무</p> <p>9. 투자사업체에 필요한 기술자문, 경영자문 및 기타 전문가의 발굴을 추천하거나 제공하는 업무</p> <p>10. 회사의 배당정책에 대한 조언</p> <p>11. 회사의 수탁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판매회사, 자산보관회사)의 수탁업무수행에 협조하는 업무</p> <p>12. 기타 회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업무</p>

다. 위탁보수

구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고
운영보수	보수계산기간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관계법령에 의한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시 산정 기준일의 시가총액)을 누적하여 합산한 후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연 0.65%	보수계산기간(매 분기 초일부터 말일까지) 종료일 이후 익영업일	보수 지급 관련 부가가치세 등 제반 조세공과금은 회사가 부담
약정보수	신규 투자약정액의 0.50% 해당 투자약정액이 일백억(10,000,000,000)원을 넘는 경우 지급 가능	발생한 영업연도의 당기 및 차기 영업연도 동안 청구 가능, 청구 시 10영업일 혹은 합의된 기간 내 일시지급	

라.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아래 표는 집합투자업자의 최근 2년간의 요약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로, 집합투자업자의 결산일은 매년 12월 31일입니다.

(1) 연결재무상태표

제36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35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KB자산운용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주, 원)

과 목	제36기	제35기
자 산		
I. 현금및예치금	38,933,936,184	43,372,720,581
II.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260,215,813,656	255,556,797,410
III.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545,347,032	10,601,648,518

과 목	제36기	제35기
IV. 관계기업투자주식	4,149,585,989	943,408,507
V. 파생상품자산	332,043,870	2,052,743,582
VI. 대출채권	3,920,500,000	5,042,700,000
VII. 유형자산	18,406,120,618	4,429,895,732
VIII. 기타금융자산	37,515,303,438	32,171,219,879
IX. 이연법인세자산	4,582,662,827	7,642,010,726
X. 기타자산	9,318,136,104	7,674,598,715
자 산 총 계	377,919,449,718	369,487,743,650
부 채		
I. 예수부채	11,573,142,857	1,421,034,503
II. 파생상품부채	15,440,502	81,221,694
III. 기타금융부채	69,580,135,760	63,797,811,320
IV. 총당부채	1,239,500,102	742,612,802
V. 순확정급여부채	248,473,081	343,862,083
VI. 기타부채	26,989,165,775	36,583,887,622
부 채 총 계	109,645,858,077	102,970,430,024
자 본		
I. 지배기업주주지분	268,273,591,641	266,517,313,626
1. 자본금	38,337,750,000	38,337,750,000
2. 자본잉여금	245,566,038	245,566,038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50,647,173)	(582,039,856)
4. 이익잉여금	230,040,922,776	228,516,037,444
II. 비지배지분	-	-
자 본 총 계	268,273,591,641	266,517,313,62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77,919,449,718	369,487,743,650

(2) 연결손익계산서

제36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35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KB자산운용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주, 원)

과 목	제36기	제35기
I. 영업수익	204,201,520,573	233,292,677,241
1. 수수료수익	167,644,683,292	177,041,847,668
2. 이자수익	1,307,089,619	2,901,756,698
1)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및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 이자수익	874,226,553	922,995,255
2)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이자수익	432,863,066	1,978,761,443
3. 금융상품평가 및 처분이익	20,203,769,659	15,690,844,687
4. 외환거래이익	5,239,467,519	9,596,401,147
5. 배당금수익	1,280,542,934	1,171,122,193
6. 기타영업수익	8,525,967,550	26,890,704,848
II. 영업비용	119,997,408,077	149,539,550,953
1. 수수료비용	14,163,856,901	13,031,908,798
2. 이자비용	558,042,765	225,498,901
3. 금융상품평가 및 처분손실	12,070,487,587	39,316,448,262
4. 외환거래손실	3,561,898,674	6,845,700,686
5. 판매비와관리비	83,810,948,681	78,318,718,037
6. 기타영업비용	5,832,173,469	11,801,276,269
III. 영업이익	84,204,112,496	83,753,126,288
IV. 영업외수익	428,606,617	401,340,216
V. 영업외비용	2,483,620,515	1,870,655,241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2,149,098,598	82,283,811,263
VII. 법인세비용	20,624,213,266	22,939,146,245
VIII. 당기순이익	61,524,885,332	59,344,665,018
IX. 기타포괄손익	231,392,683	22,310,48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1.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 요소	(6,243,000)	6,476,809
2.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지분상품 평가손익	(70,274,311)	(291,975,13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1.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채무상품 평가손익	4,179,801	(192,091,443)
2. 외환차이	303,730,193	499,900,252
X. 총포괄이익	61,756,278,015	59,366,975,503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주주지분순손익	61,524,885,332	59,344,665,018
비지배지분순손익	-	-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주주지분총포괄손익	61,756,278,015	59,366,975,503
비지배지분총포괄손익	-	-

마. 운용자산 규모

(1) KB자산운용 전체 운용자산 규모

(단위: 억원)

회사명	증권						단기 금융	파생형	부동산	실물	특별 자산	혼합 자산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일임 기타	합계
	주식	혼합 주식	혼합 채권	채권	투자 계약	재간접									
KB자산운용(주)	223,594	9,107	32,181	596,181	-	61,810	174,489	39,922	81,617	-	237,487	25,298	4,030	-	1,485,717

주) 2024년 06월 30일 기준입니다. (출처: 금융투자협회)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자산보관회사

(1) 자산보관회사 개요

구분	내용
회사명	농협은행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연락처	1661-3000
설립일	2012년 3월 2일
홈페이지	https://www.nhbank.com

(2) 자산보관위탁계약 개요

1) 업무범위 및 계약기간

위탁회사명		업무범위	계약기간
자산보관기관	농협은행 주식회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자산 취득 및 보관 2. 권리증서 보관 및 관리 3. 현금의 보관 및 관리 4. 자산운용회사 운용행위 감독 및 감시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지 않는 한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씩 갱신함

2) 위탁보수

구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고
자산보관보수	보수계산기간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관계법령에 의한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누적하여 합산한 후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연 0.02%	보수계산기간(매 분기 초일부터 말일까지) 종료일 이후 익영업일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통신비용 기타 제세공과금 등 모든 실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주) 보수율의 경우 부가가치세 별도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일반사무관리회사 개요

구분	내용
회사명	(주)KB펀드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연락처	02-2073-0595
설립일	2001년 11월 1일
홈페이지	https://www.kbfps.com

(2)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 개요

1) 업무범위 및 계약기간

위탁회사명	업무범위	계약기간
일반사무위탁 (주)KB펀드 파트너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 2. 주식발행에 관한 사무 3. 운영에 관한 사무 4. 계산에 관한 사무 5. 법령 및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업무 6. 해산 및 청산업무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지 않는 한 별도의 종료일을 지정하지 않음.

2) 위탁보수

구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고
일반사무수탁 보수	보수계산기간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관계법령에 의한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누적하여 합산한 후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연 0.02%	보수계산기간(매 분기 초일부터 말일까지)종료일 이후 익영업일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통신 비용 기타 제세공과금 등 모든 실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다. 판매회사

(1) 판매회사 개요

구분	내용
회사명	KB증권(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50 (여의도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연락처	1588-6611
설립일	1962년 07월 14일
홈페이지	https://www.kbsec.com

구분	내용
회사명	키움증권(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사학연금 서울회관)
연락처	1544-9000
설립일	2000년 04월 01일
홈페이지	https://www1.kiwoom.com

구분	내용
회사명	대신증권(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연락처	1588-4488
설립일	1962년 07월 27일
홈페이지	https://www.daishin.com

(2) 판매위탁계약 개요

1) 업무범위 및 계약기간

위탁회사명	업무범위	계약기간
KB증권(주), 키움증권(주),	1. 위탁자 발행 주식의 판매 2. 위탁자 발행 주식의 모집 및 매출	계약체결일로부터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위탁자가 해산 및 청산하는 경우 그 완료일 또는 이 계약

위탁회사명	업무범위	계약기간
대신증권(주)	3. 본 조 각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	의 해지일 중 이른 시점까지로 한다.

2) 판매위탁보수

구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위탁수수료	위탁자(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가 수탁자(판매회사)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등

(1) 주주총회의 구성

회사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 주주총회를 개최하며, 회사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합니다.

(2)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주주총회의 소집: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통지기간은 총 주주의 동의를 얻어 단축 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총 주주의 동의가 없는 한, 주주총회는 통지된 목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써 본점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행사방법

[정관]

제26조(주주의 의결권)

주주는 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7조(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① 주주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간주 의결권행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8조 제6호 내지 제9호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의 경우 간주의결권행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주에게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에 따라 본 정관에 따른 간주의결권행사방법을 포함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 하였을 것
2.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의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3. 간주의결권행사요건의 충족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주주에게 통지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이 회사에서 송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한다.
- ④ 제2항의 제출서면은 주주총회일로부터 6개월간 본정에 비치·공시한다.

제29조 (의결권의 불동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동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3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동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① 법령 및 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제2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 보통결의")가 있어야 한다.
- ② 제28조 제6호 내지 제8호의 사항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 ③ 제28조 제9호 사항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 ④ 제28조 제10호의 주주총회 결의는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에 의한다.

(3) 주주총회 의결사항

[정관]

제28조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주주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이사, 감독이사의 선임
2. 제49조 제1항에서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 또는 사채발행
3. 이사회에서 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에 부의한 사항
4. 신탁업자의 선정 및 변경(변경이라 함은 새로운 신탁업자의 선임 또는 기존 신탁업자의 해임을 의미하며, 동일한 신탁업자의 재선임은 제외한다.)
5.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받는 보수의 인상
6.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정관의 변경
7. 이사의 해임
8. 회사의 해산, 합병
9. 집합투자업자의 선정 및 변경(변경이라 함은 새로운 집합투자업자의 선임 또는 기존 집합투자업자의 해임을 의미하며,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재선임은 제외한다.)
10. 기타 자본시장법,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4) 주식매수청구권

『자본시장법』 제201조 제4항에 의하여 투자회사에 준용되는 『자본시장법』 제191조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95조 제 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자본

시장법』 제 20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회사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집니다. 관련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주주총회 전 반대의사 서면통지가 필요하며, 해당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p>[자본시장법] 제201조(주주총회) (중략) ④ 제191조는 투자회사가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회사재산”으로 본다.</p> <p>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p> <p>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① 투자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3.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생략)</p> <p>제204조(합병) (중략) ② 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생략)</p>

나. 잔여재산분배

회사가 관련 법규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청산하는 경우 회사 자산을 구성하는 투자는 금전으로 환금한 후 회사의 자산(직전 사업연도의 이익금과 자

본금을 포함한다)으로 모든 비용 등을 지급하고 회사가 청산감독인과 상의를 거쳐서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불확정 채무 및 책임에 대한 적립을 마친 후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되, 그렇게 분배되지 않는 부분은 현물로 주주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재산은 수차에 걸쳐 나누어 분배될 수 있습니다(정관 제59조).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1) 주주는 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주주에 관련된 회사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 및 투자매매·중개업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① 회사 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우려되는 경우
- ② 회사 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③ 회사의 청산에 따라 법이 정한 보존기한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주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1)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집합투자재산명세서
- ②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④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3) 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1)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주주의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그 뜻과 사유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업자(이하 “ 관련수탁회사”)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를 위탁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수탁회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사 및 회계감사인, 또는 다른 관련 수탁회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64조).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업자 및 채권평가회사가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자본시장법 제185조)

마. 재판관할

(1)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업자가 회사와의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주주의 선택에 따라 주주의 주소지 또는 주주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나, 주주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주주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주주의 대표소송

「상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회사의 주식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러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소의 제기를 청구한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30일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는 위 30일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주권의 발행 및 예탁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위 주식 등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합니다.

(3)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수행하며, 일반사무관리회사인 (주)KB펀드파트너스는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 및 지원합니다.

②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회사의 주식에 관한 사무를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합니다.

③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④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상기 ③, ④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제출해야 합니다.

(4) 회사의 정관 등 회사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회사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회사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회사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서 자료를 참고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 자료

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회사의 존속기간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산일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정관 제57조 제1항).

1. 주주총회의 의결
2.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금융위원회로부터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6. 회사의 모든 투자자산의 매각· 회수 또는 처분
7. 기타 관계법령에서 이 회사의 해산사유로 정한 사유

위의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다만,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는 경우 동 개정규정에 따른다)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사의 존립기간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저축만기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자본시장법 제90조, 제186조 제2항)

① 회사는 매 분기 영업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금융

위, 금융투자협회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위, 금융투자협회는 제출 받은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감사보고서(자본시장법 제240조, 동법 시행령 제265조)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회사 해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② 회계감사인은 회사 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준가격계산서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보고서를 금융위, 금융투자협회, 투자매매·중개업자 및 신탁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매 3월마다 또는 펀드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88조, 제18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자산운용위탁계약서 제6조).

② 다만,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상장투자회사로서 3개월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금융투자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공시하는 경우,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공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자산운용보고서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bi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 신탁업자는 회사의 회계기간 말일,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회사 해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서면으로 우송합니다. 이 경우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상장투자회사에 대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는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공시하는 경우 우편으로 제공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8

조, 동법 시행령 제270조).

② 신탁업자는 회사의 회계기간 말일,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회사 해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금융위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60조, 제91조, 제113조, 자산운용위탁계약 제15조, 자산보관위탁계약 제12조).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정관변경에 관한 공시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회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공시하는 외에 모든 주주에게 통지합니다(정관 제60조 제2항).

1.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3. 회사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의 변경
4. 그 밖의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회사 종류의 변경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9조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

2) 위 1) 외의 주주총회 결의 없는 회사 정관 변경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1) 수시공시 사항(자본시장법 제89조, 제18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3조)

회사는 (1)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하

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공시기준가격을 잘못 산정·공시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회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1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12. 지상권,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변경
13.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4. 그 밖에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수시공시의 방법(자본시장법 제89조, 제186조 제2항)

1.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2. 투자매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4.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

금융투자협회 및 회사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협회 https://www.kofia.or.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Tel : 02-2003-9000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https://www.kbif.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0층, 41층(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Tel : 02-2167-8200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1) 회사는 민간투자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87조(의결권등)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바 별도의 공시 없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의결권 행사 방향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회사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1.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2.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3.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3) 의결권 행사 방법(자본시장법 제184조)

1. 집합투자업자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1.의 방법 외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내지 제85조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정에 따라 일정한 내용에 한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p>[자본시장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절에서 “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제189조의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자본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취득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7. 1., 2020. 3. 10.> 1.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2.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3.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관에서 “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라 한다) 5.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p>

· 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한다.

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나. 「주택도시보증법」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및 제97조에 따라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6.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9. 7. 1., 2011. 9. 30., 2012. 6. 29., 2013. 8. 27., 2015. 10. 23., 2018. 9. 28.>

1. 이해관계인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2.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를 말한다)를 통하여 그 이해관계인과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가. 채무증권

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다.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3.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집합투자자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예치.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 중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은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와의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의 매매(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로서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그 기초자산이 외국통화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전차입의 거래. 이 경우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로 한정한다.

5의2. 이해관계인(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제8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전담중개업무로서 하는 거래

5의3. 환매기간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하여 이해관계인(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의 수요·공급을 구성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환매조건부매매를 하거나 그 이해관계인이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거래

6. 그 밖에 거래의 형태, 조건,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염려가

없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거래

자본시장법은 상기 조항에서 이해관계인 사이의 거래 중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간 이해상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시 거래상대방 선정 절차의 합리성 및 공정성, 거래 조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이 발생하는 즉시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집합투자업자인 KB자산운용과 이해관계인과의 최근 1개년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1개년간 집합투자업자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거래상대방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사유
KB펀드파트너스	2024.08.14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 체결	주1)	사무관리위탁
KB증권	2024.10.02	공동주관계약 체결	주2)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계약 체결
	2024.10.08	판매위탁계약 체결	주3)	
	2024.10.16	총액인수계약 체결	주4)	

(주1) 회사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분기별 지급

(주2) 총액인수계약에서 정함

(주3) 판매위탁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음

(주4) 총 공모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 절사)을 대표주관회사에게 사무주관 수수료로 지급, 신주 공모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비율에 따라 인수수수료로 지급, 신주 공모금액의 0.8%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로 지급 가능

회사는 본건 상장 추진과 관련하여 RFP(입찰제안요청서) 발송, 제안서 수령 등의 입찰 과정을 거쳐 2022년 5월 19일 KB증권(주)와 판매위탁계약 및 공동주관약정을 최초 체결하였으며, 공모시장 환경 급변에 따른 상장 추진 일정 연기 후 금년도 상장 재추진을 위하여 KB증권(주)와 2024년 10월 2일 공동주관계약, 2024년 10월 8일 판매위탁계약을 재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 진행을 위한 총액인수계약을 2024년 10월 16일 신규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주)국민은행과 2006년 1월 24일에 판매위탁계약 및 일반사무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 및 일반사무관리 업무 등을 위탁한 바 있으며, 2024년 8월 14일에는 (주)국민은행의 물적분할 법인인 (주)KB펀드파트너스와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을 신규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주)국민은행과 회사 간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 및 판매위탁계약에 따른 사무관리보수, 판매보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일반사무보수 및 판매보수 지급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상반기	2023년	2022년	2021년
일반사무보수(주1)	80,403	156,946	159,804	177,908
판매보수(주2)	-	-	-	221

주1) 회사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02%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분기별 지급

주2)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매 신주발행금액의 0.01%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한 바 있으며, 2022년 이후 신주 미발행에 따라 별도의 판매보수 발생하지 않음

(출처: 회사 감사보고서)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 해당사항 없음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회사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순자산가치 총액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배당소득	펀드가 투자자에게 분배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주주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 및 일정요건을 갖춘 공모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상 정의된 사회기반시설로,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등으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사업시행법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인프라펀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설립 또는 설정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인프라)투융자회사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동 법률에서 허용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법상 민간제안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기본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의미합니다.
사업시행자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실시협약	민간투자법상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의미합니다.
불변가격	기준연도를 설정하고 물가지수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을 조정하여 구매력을 비교하기 위해 미래의 가격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상승, 하락분을 제외하고 현재 수준으로 조정한 가격

(회사의)투자법인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법인
(회사의)투자자산	회사가 취득한 사업시행법인의 주식, 채권, 대출채권 등
(회사의)투자시설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법인이 운영하는 사회기반시설
(회사의)투자사업	회사가 투자한 사업시행법인이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회사의)투자금액	회사가 취득한 투자자산의 잔존금액 및 투자자산을 추가적으로 취득하기로 약정한 금액